지방자치단체의

재의·제소 조례 모음집(Ⅷ)

(2014.6.~2018.6.)

2019. 1.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 중심

행정안전부

발 간 사

'95년 민선자치 이후 지방분권의 확산, 권한 이양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는 연평균 5% 이상, 조례의 경우는 2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사회구조의 변화, 높은 교육 수준 등 주민의 의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민의 정책 참여를 위해 주민직접발안제 도입, 지방 행·재정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입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법질서와 조화되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제소 조례 모음집』은 1991년부터 일곱 차례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 제8권은 민선6기('14.6월~'18.6월) 기간 동안 재의·제소 조례, 조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질의회신 사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조례를 함께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음집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자치입법을 직접 다루는 현장의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법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어, 자치법규의 품질향상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서 승 우

목 차

제1장 재의요구 및 제소 조례 현황 ····· 1

1. 재의요구 조례 현황 ····· 3

2. 재의요구 조례 조치결과 ····· 5

3. 대법원 제소 조례 현황 ····· 7

제2장 위법 유형별 재의·제소 사례 ····· 9

1.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내용 위배 ····· 11

판결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13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20
▶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 27

재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36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1
▶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 50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 53
▶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 ····· 5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 5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 64
▶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67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70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77
▶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79
▶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 ····· 83
▶ 경기도 주거 복지 조례 ····· 86
▶ 김포도시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 조례 ····· 89
▶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 98
▶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 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 ····· 100
▶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 102
▶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 104
▶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107
▶ 서천군 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119
▶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125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132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규정 ····· 141

재의

▶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14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 ····· 14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 152
▶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 ····· 157
▶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 162
▶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178
▶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조례 ····· 182

3.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규정 ····· 187

판결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189

재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207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 210
▶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 조례 ····· 215
▶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225
▶ 철원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230
▶ 양구군 도시계획 조례 ····· 233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위배 ····· 239

판결

▶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 241

재의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 255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69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조례 ····· 278
▶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80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 284
▶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 286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290
▶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 292
▶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295
▶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307

▶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316
▶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322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 324

5. 상급기관 승인 등 선행절차 미이행, 현저한 공익 저해, 기타 이의가 있는 경우 ····· 329

재의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331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 334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33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 345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 348
▶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351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354
▶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 357
▶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 359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 361
▶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 367
▶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371
▶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 374
▶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 377
▶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380
▶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391
▶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393
▶ 홍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395
▶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398
▶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 403
▶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414
▶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 429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 451
▶ 사천시 건축 조례 ····· 454
▶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464
▶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471
▶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473
▶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475

제3장 질의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검토의견 사례 ····· 483

1. 구의회 의원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 485
2. 공유촉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489
3.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주체로 의회의장 또는 지방의회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 492
4. ‘청년’의 정의를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 494
5.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공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 징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498
6. 법률에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501
7. 개별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조례에서 서면심의가 가능한지 ····· 505
8. 주차시설이 없는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이용요금 경감 조례안 마련이 가능한지 ····· 508
9.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의무 부과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510
10.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하천 구역 주변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514
11.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증·개축이 허용되는 경우에 악취 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을 밀폐된 구조가 아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설치하는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517

12. 실질적 의미의 '난민'은 ····· 520
13. 경과규정 불미 이유로 재의요구 가능한지 등 ····· 522
14.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 단체명을 명시,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여부 ····· 525
15.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위원회 위원에 지자체 소속 4급이상 임명직 공무원이 위촉직 위원에 해당되는지 ····· 527
16. 의용소방대의 기술경연대회 행사비용이 업무수행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 ····· 528
17. 시설 부지 내 주차장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 538
1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 539
19.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에 대하여 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543
20.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 지원을 받지 않는 주민들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546
21.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위치를 구체적인 주소에서 '진주시 관내'로 개정이 가능한지 ····· 547
22. 각각 다른 위원회 기능을 한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수 있는지 ····· 551
23.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다른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554
2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기능 대행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558
25.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562
26. 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 566

27. 통합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 시 통합 전 통장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와 연임 가능 여부 ····· 573
28. 조례 개정 시행일 이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설치·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 경과조치 적용대상인지 ····· 580
29.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583
30. 일·숙직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 585
31. 시민안전보험 가입 조례 제정 시 시민의 동의 절차 규정 여부 등 ····· 588
32. 이전기관의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여부 ····· 593
33. 3년 기간 이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내용과 위임에 따른 감면사항을 같은 조례에 규정하면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596
34. 무화학비료 농산물 인증표시를 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597
35.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관련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등 ··· 598
36.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 지원 조례’ 제정할 수 있는지 ····· 600
37.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가 단체장의 권한 침해 여부 ····· 601
38. 물놀이 관리지역에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조례로 제정 가능 여부 ····· 606

(부록) 지방자치단체 특색조례 모음 ····· 611

제1장

재의요구 및 제소 조례 현황

1. 재의요구 조례 현황

연도별	구분	계	발 의		유형			사 유		
			단체장	의원	자체	상급기관 지시		이의	법령 위반	공익 위반
						시·도지사	장관			
합 계	계	1039	370	669	506	423	110	151	816	69
	시·도	201	29	172	91	0	110	20	164	17
	시·군·구	838	341	497	415	423	0	131	652	52
2017	계	20	2	18	13	6	1	6	12	2
	시·도	5		5	4		1	1	4	
	시·군·구	15	2	13	9	6		5	8	2
2016	계	21	3	18	14	2	5	5	16	
	시·도	6		6	1		5		6	
	시·군·구	15	3	12	13	2		5	10	
2015	계	23	2	21	19	3	1	8	14	1
	시·도	6		6	5		1	3	2	1
	시·군·구	17	2	15	14	3		5	12	
2014	계	27	5	22	21	3	3	7	11	6
	시·도	17	1	16	14		3	4	9	4
	시·군·구	10	4	6	7	3		3	2	2
2013	계	42	8	34	29	12	1	9	28	5
	시·도	7		7	6		1		5	2
	시·군·구	35	8	27	23	12		9	23	3
2012	계	27	8	19	16	9	2	5	22	
	시·도	6		6	4		2		6	
	시·군·구	21	8	13	12	9		5	16	
2011	계	50	5	45	36	9	5	4	46	
	시·도	10		10	5		5		10	
	시·군·구	40	5	35	31	9		4	36	
2010	계	36	11	25	19	15	2	5	31	
	시·도	6	2	4	4		2		6	
	시·군·구	30	9	21	15	15		5	25	
2009	계	53	10	43	43	9	1	7	46	
	시·도	8	1	7	7		1	1	7	
	시·군·구	45	9	36	36	9		6	39	
2008	계	48	22	26	30	16	2	11	35	2
	시·도	5		5	3		2	2	3	
	시·군·구	43	22	21	27	16		9	32	2

연도별	구분	계	발 의		유형			사 유		
			단체장	의원	자체	상급기관 지시		이의	법령 위반	공익 위반
						시·도지사	장관			
2007	계	43	18	25	24	16	3	11	30	2
	시·도	10	1	9	7		3	1	9	
	시·군·구	33	17	16	17	16		10	21	2
2006	계	35	17	18	16	16	3	8	22	5
	시·도	7	2	5	4		3	1	5	1
	시·군·구	28	15	13	12	16		7	17	4
2005	계	81	20	61	12	59	10	4	74	3
	시·도	11	3	8	1		10		10	1
	시·군·구	70	17	53	11	59		4	64	2
2004	계	60	30	30	16	30	14	9	49	2
	시·도	14	5	9			14		14	
	시·군·구	46	25	21	16	30		9	35	2
2003	계	40	22	18	17	18	5	5	32	3
	시·도	8	3	5	3		5		7	1
	시·군·구	32	19	13	14	18		5	25	2
2002	계	22	10	12	9	11	2	3	16	3
	시·도	3		3	1		2		2	1
	시·군·구	19	10	9	8	11		3	14	2
2001	계	44	27	17	17	24	3	10	30	4
	시·도	4	2	2	1		3		4	
	시·군·구	40	25	15	16	24		10	26	4
2000	계	46	26	20	19	24	3	6	38	2
	시·도	4	1	3	1		3	1	3	
	시·군·구	42	25	17	18	24		5	35	2
1999	계	44	16	28	24	16	4	5	32	7
	시·도	5	1	4	1		4		5	
	시·군·구	39	15	24	23	16		5	27	7
1998 이전	계	277	108	169	112	125	40	23	232	22
	시·도	59	7	52	19	0	40	6	47	6
	시·군·구	218	101	117	93	125	0	17	185	16

2. 재의요구 조례 조치결과

구 분		재의요구 건수	단체장 제출 조례						의원 발의 조례					
			소계	재의결	수정의결	부결	폐기	계류	소계	재의결	수정의결	부결	폐기	계류
합 계	계	1039	370	71	22	230	44	3	669	232	24	250	129	34
	시·도	201	29	15	4	6	4	0	172	72	10	36	39	15
	시·군·구	838	341	56	18	224	40	3	497	160	14	214	90	19
2017	계	20	2	1				1	18	9		4		5
	시·도	5							5	3				2
	시·군·구	15	2	1				1	13	6		4		3
2016	계	21	3	1		1		1	18	4		3		11
	시·도	6							6	2		1		3
	시·군·구	15	3	1		1		1	12	2		2		8
2015	계	23	2			2			21	5		7	1	8
	시·도	6							6	3		1		2
	시·군·구	17	2			2			15	2		6	1	6
2014	계	27	5	1		2	1	1	22	8		3	1	10
	시·도	17	1	1					16	6		2		8
	시·군·구	10	4			2	1	1	6	2		1	1	2
2013	계	42	8	2	0	5	1	0	34	16	0	13	5	0
	시·도	7							7	1		2	4	
	시·군·구	35	8	2		5	1		27	15		11	1	
2012	계	27	8	3	1	4	0	0	19	9	0	5	5	0
	시·도	6							6	3		1	2	
	시·군·구	21	8	3	1	4			13	6		4	3	
2011	계	50	5	1	0	4	0	0	45	17	0	18	10	0
	시·도	10							10	7		1	2	
	시·군·구	40	5	1		4			35	10		17	8	
2010	계	36	11	0	1	6	4	0	25	9	0	10	6	0
	시·도	6	2		1		1		4	2			2	
	시·군·구	30	9			6	3		21	7		10	4	
2009	계	53	10	2	0	7	1	0	43	27	2	9	5	0
	시·도	8	1	1					7	3	1	1	2	
	시·군·구	45	9	1		7	1		36	24	1	8	3	
2008	계	48	22	3	0	19	0	0	26	9	3	11	3	0
	시·도	5							5	2	2	1		
	시·군·구	43	22	3		19			21	7	1	10	3	

구 분		재의요구 건수	단체장 제출 조례						의원 발의 조례					
			소계	재의결	수정의결	부결	폐기	계류	소계	재의결	수정의결	부결	폐기	계류
2007	계	43	18	2	0	16	0	0	25	14	0	11	0	0
	시·도	10	1			1			9	6		3		
	시·군·구	33	17	2		15			16	8		8		
2006	계	35	17	3	0	9	5	0	18	9	1	3	5	0
	시·도	7	2	1			1		5	3			2	
	시·군·구	28	15	2		9	4		13	6	1	3	3	
2005	계	81	20	4	3	9	4	0	61	5	6	41	9	0
	시·도	11	3	2			1		8		1	5	2	
	시·군·구	70	17	2	3	9	3		53	5	5	36	7	
2004	계	60	30	14	5	9	2	0	30	15	3	3	9	0
	시·도	14	5	4	1				9	3	1		5	
	시·군·구	46	25	10	4	9	2		21	12	2	3	4	
2003	계	40	22	2	4	13	3	0	18	6	0	5	7	0
	시·도	8	3		2	1			5	2		1	2	
	시·군·구	32	19	2	2	12	3		13	4		4	5	
2002	계	22	10	1	1	3	5	0	12	3	1	1	7	0
	시·도	3	0						3	2			1	
	시·군·구	19	10	1	1	3	5		9	1	1	1	6	
2001	계	44	27	7	1	16	3	0	17	6	1	5	5	0
	시·도	4	2			2			2	1			1	
	시·군·구	40	25	7	1	14	3		15	5	1	5	4	
2000	계	46	26	2	3	19	2	0	20	5	2	7	6	0
	시·도	4	1			1			3	1	2			
	시·군·구	42	25	2	3	18	2		17	4		7	6	
1999	계	44	16	2	0	12	2	0	28	13	0	13	2	0
	시·도	5	1			1			4			4		
	시·군·구	39	15	2		11	2		24	13		9	2	
1998 이전	계	277	108	20	3	74	11	0	169	43	5	78	43	0
	시·도	59	7	6	0	0	1	0	52	22	3	13	14	0
	시·군·구	218	101	14	3	74	10	0	117	21	2	65	29	0

3. 대법원 제소 조례 현황

연도별	구 분	계	제 소 자			제 소 결 과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무효	유효	취하	각하	계류
합 계	계	163	11	65	87	86	39	22	3	13
	시·도	66	10	56	0	48	3	10	1	4
	시·군·구	97	1	9	87	38	36	12	2	9
2017	계	2		1	1					2
	시·도	1		1						1
	시·군·구	1			1					1
2016	계	2			2					2
	시·도									
	시·군·구	2			2					2
2015	계	1		1						1
	시·도	1		1						1
	시·군·구									
2014	계	10	1	6	3	0	0	5	0	5
	시·도	6		6				4		2
	시·군·구	4	1		3			1		3
2013	계	10		1	9	1	4	2	0	3
	시·도	1		1			1			
	시·군·구	9			9	1	3	2		3
2012	계	8	2	2	4	6	1	1	0	0
	시·도	4	2	2		4				
	시·군·구	4			4	2	1	1		
2011	계	9	2	4	3	6	2	1	0	0
	시·도	5	2	3		4		1		
	시·군·구	4		1	3	2	2			
2010	계	6	0	2	4	0	3	3	0	0
	시·도	1		1				1		
	시·군·구	5		1	4		3	2		
2009	계	22	0	3	19	2	20	0	0	0
	시·도	3		3		2	1			
	시·군·구	19			19		19			
2008	계	5	0	0	5	3	0	2	0	0
	시·도									
	시·군·구	5			5	3		2		

연도별	구 분	계	제 소 자			제 소 결 과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무효	유효	취하	각하	계류
2007	계	8	0	6	2	7	1	0	0	0
	시·도	6		6		5	1			
	시·군·구	2			2	2				
2006	계	3	1	1	1	2	1	0	0	0
	시·도	2	1	1		2				
	시·군·구	1			1		1			
2005	계	4	2	1	1	2	0	2	0	0
	시·도	2	2					2		
	시·군·구	2		1	1	2				
2004	계	6	1	4	1	5	0	1	0	0
	시·도	5	1	4		4		1		
	시·군·구	1			1	1				
2003	계	3	0	2	1	3	0	0	0	0
	시·도	2		2		2				
	시·군·구	1			1	1				
2002	계	2	0	1	1	2	0	0	0	0
	시·도	0								
	시·군·구	2		1	1	2				
2001	계	6	0	2	4	5	1	0	0	0
	시·도	1		1		1				
	시·군·구	5		1	4	4	1			
2000	계	7	0	2	5	3	3	1	0	0
	시·도	1		1		1				
	시·군·구	6		1	5	2	3	1		
1999	계	8	0	4	4	5	0	0	3	0
	시·도	3		3		2			1	
	시·군·구	5		1	4	3			2	
1998 이전	계	41	2	22	17	34	3	4	0	0
	시·도	22	2	20	0	21	0	1	0	0
	시·군·구	19	0	2	17	13	3	3	0	0

제2장

위법 유형별 재의·제소 사례

1.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내용 위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개별 상위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전체의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 요	○ 발 의 : '16. 06. 27. (의원) ○ 의 회 의 결 : '16. 10. 18. ○ 재의요구지시 : '16. 11. 02. (행정안전부장관) ○ 재 의 요 구 : '16. 11. 08. (경기도지사) ○ 의 결 결 과 : '16. 11. 14. (위원회 안으로 수정의결) ---------- ○ 대법원 제소 : '17. 03. 14 (경기도지사) ○ 제 소 결 과 : 무효('18. 7. 11, 대법원 판결)
조례내용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은 교섭단체 및 정책위원회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
재의요구 이 유	○ 「헌법」 제7조제2항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정치운동의 금지에 위반되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판결요지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선고 2011추49 등 참조)이나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령 어디에도 정책위원회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위반됨.

대법원 판결문

사 건 2017추504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 고 경기도지사

피 고 경기도의회

주 문 피고가 2017.3.1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경위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내지 6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10.18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이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2016.10.20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11.2 원고에게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을 그 직원으로 두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11.8 피고에게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3.14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재의결하여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제3조제1항) 그 직원은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조례안은 종전 조례 제1조와 제3조의 '교섭단체'를 '교섭단체 및 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교섭단체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제1항) 정책위원회 조직은 교섭단체 대표가 구성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게 하고(제2항) 정책위원회 활동은 도민 복리증진 등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한정하며(제3항) 정책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에세 지원하되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제4항)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추49 판경 등 참조).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는 의정활동비, 공무여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34조는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

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에 따라 사무처(국·과)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은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59조는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고 한다)을 두되(제1항)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중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에서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임기제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대법원 2017.3.30 선고 2016추5087 판결 등 참조).

나. 1) 이 사건 조례안은 제2조의2에서 교섭단체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정책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조제2항에서 이 사건 정책위원회의 직원을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제4조제2항은 그 직원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의회 내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섭단체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경기도 의회 내 정책위원회에 관한 이 사건 조례안 제2조의2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책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해당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정책위원회의 업무인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평가 등 활동은 의정활동비를 통하여 비용이 보전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인 의정 자료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정책위원회의 실질적 역할과 기능 그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에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직원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로 다른 법령에서도 이 사건 정책위원회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 제3조제2항은 법령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 중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 한다. 그러므로 그 재의결의 효력 배재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용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또는 개정안)	개 정 안(또는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교섭단체 및 정책위원회----------.
제3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섭단체 및 정책위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 및 정책위----------. ② 교섭단체 및 정책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2. 11. 07.(의원) ○ 의 회 의 결 : '12. 11. 08. ○ 재의요구지시 : '12. 11. 22.(연제구청장) ○ 재 의 요 구 : '12. 11. 26.(연제구청장) ○ 의 결 결 과 : '14. 06. 27.(재의결) ---------- ○ 대법원 제소 : '14. 07. 15 (연제구청장) ○ 제 소 결 과 : 무효('16. 11. 10)
조례내용	○ 제5조제2항 :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제5조제3항 : 구청장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재의요구 이 유	○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반하는 사항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됨.
판결요지	○ 이 사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위반됨.

대법원 판결문

사 건 2014추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피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주 문

1. 피고가 2014.6.2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11.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송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규정한 제5조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규정의 법령 위반 여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추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고,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고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제90조제2항, 제3항). 또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하 '사무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91조제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는 위 법률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2조제2항은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

원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 등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나.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제2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다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임용권, 즉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무직원에 때한 임용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은 그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되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 및 동법 제90조, 제91조, 제9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할"을 "처리"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국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원발의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동법 제90조, 제91조, 제9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생략)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현행과 같음)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연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과 임명)** ①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국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6. 9. 5.(의원) ○ 의 회 의 결 : ‘16. 9. 7. ○ 재의요구지시 : ‘16. 9. 27.(경기도지사) ○ 재 의 요 구 : ‘16. 9. 27.(안성시장) ○ 의 결 결 과 : ‘16. 12. 14.(재의결) ○ 대법원 제소 : ‘16. 12. 30.(안성시장) ○ 제 소 결 과 : 유효(‘17. 09. 21.) 대법원 2016추5186 판결
조례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미등록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 및 범위 규정 ○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 간 한시적 지원
재의요구 이 유	○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신고주의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서 벌칙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시설운영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법이 정한 신고주의에 저촉되며, ○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 미등록 경로당은 대부분 건축법령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법령을 위법하게 집행하게 됨.
판결요지	○ 미등록 경로당은 그 시설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 온 마을회관 등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시설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미신고 경로당’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이 조례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증진 사업은 자치사무의 범위에 속하여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대법원 판결문

사 건 대법원 2016추518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원 고 안성시장

피 고 안성시의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9. 7.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2016. 9. 8.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원고는 2016. 9. 27. 이 사건 조례안이 규정한 미등록 경로당은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복지법'이라고만 한다) 제37조제2항의 미신고 경로당에 해당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반하고, 미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57조제1호에도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12. 14.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②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 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비품 구입비,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조례안이 노인복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

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참조).

(2)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이 있고(제31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다(제36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7조제1항, 제2항).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7조제1호).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이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은 그 시설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주로 그러한 활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 온 마을회관 등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의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제57조제1호에서 정한 '미신고 경로당'과는 별개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조례안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2호 (나)목 및 (라)목에서 정한 자치사무의 범위에 속한다.

(3) 결국, 이 사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여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②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에 의한 경우(제3호),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노인 복지를 위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의 사유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조례 제정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성시 관내 '미등록 경로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제5조제1항), 그 지원 범위도 시설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등과 같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제5조제2항),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5조제3항), 지원기간도 최초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을(제5조제5항)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보조금 지원에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의 기타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마을회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미등록 경로당만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미등록 경로당이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성시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4. 미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6. 기타 시장이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⑤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09.25.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개 요	○ 발 의 : '17. 11. 03. (의원발의) ○ 의 회 의 결 : '18. 02. 13. ○ 재의요구지시 : '18. 02. 28. (서울특별시장) ○ 재 의 요 구 : '18. 03. 02. (강남구청장) ○ 의 결 결 과 : '18. 03. 13. (재의결)
조례내용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주민대표위원 대상자 모집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재의요구 이 유	○ 협의체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 주민대표의 추천권을 구청장이 아닌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부여한 폐촉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선 절차를 정한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강남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강남구가 구의회 권한을 넘어 주민대표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구의회에 의뢰하여 구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 따라서 구의회 의결안대로 재의를 요구함.
재의결과	재의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이하 "주민대표위원"이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복지문화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강남구의회 의원 : 3명 이내
2. 변호사 : 1명
3. 민간전문가 : 2명 이내
4. 해당지역 주민 등 해당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명

③ 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촉하며 강남구 의회의 주민대표위원 추천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의 제시) ① 구청장은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재기간 및 실제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람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3.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운반, 처리하는 사람
4.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반입, 시설의 청소 등의 업무를 수주한 사람
5.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구로부터 종량제 봉투제작 및 폐기물 관련 사업을 수주 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대상자의 범위는 개인·단체·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법인의 경우 지분 10%이상인 사람과 등기 임원 및 비등기 임원 전부를 포함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대표위원 정원 또는 결원의 2배 범위에서 위원회에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의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선정된 대상자를 3일 이내에 강남구 의회에 추천 의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5. 10. 12.(의원) ○ 의 회 의 결 : '15. 10. 27. ○ 재 의 요 구 : '15. 11. 16.(중랑구청장) ○ 의 결 결 과 : '16. 2. 3.(부결)
조례내용	○ 제16조제2항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
재의요구 이 유	○ 「지방공기업법」의 위임 하에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5항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6조의3제10항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지 아니함. 따라서, 본 조례안 제16조제2항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5항 및 제10항에 위배됨.
재의결과	부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추천된 자”를 “추천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추천된 자”를 “추천된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보선되는 경우의”를 “인하여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자의”를 “전임임원 임기의”로 한다.

제10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퇴직한 자”를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재한다”를 “주관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를 “대해서는”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의 임면 등) (생 략) ② 이사장과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하며,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업무수행 관련 국장 2명 이하를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등) (현행과 같음) ② ----------. ---------- 추천된 사람 ----------. ③ (현행과 같음) ④ ---------- 추천된 사람 ----------. ----------.
제8조(임기 및 직무) ① ~ ③ (생 략) ④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되는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⑥ (생 략)	제8조(임기 및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인하여 새로 위촉된 --------- 전임 임원 임기의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	제10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

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공단을 대표할 임원이 없을 때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대해서는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 사람은 ----------.
제12조(이사회) ①·② (생 략)	제12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 ---------- 대해서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공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 대해서는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제15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1. ---------- 추천하는 사람 ---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2. ---------- 추천하는 사람 ---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3. ---------- 추천하는 사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 사람이어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3. ---------- 퇴직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 인정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 주관한다.
제16조(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공단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와 구의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 새로 ---------- 경우에는 ----------.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3분의 2 이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④ ---------- 사람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이	제17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

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 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 사람을 ----------.
④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 경우에는 ---------- 없으면 ----------.
⑤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 ----------.
1.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 해당하는 사람

2.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 인정되는 사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9조(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제22조(회계원칙 등)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한다.	제22조(회계원칙 등) ① ---------- 회계처리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② ---------- 회계처리----------.
③ 공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대해서는----------.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생략)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 경우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감독) ① (생 략)	제27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대해서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① ---------- 사람은 ----------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4. 11. 22. (의원) ○ 의 회 의 결 : '14. 12. 24. ○ 재의요구지시 : '15. 1. 8. (미래창조과학부) ○ 재 의 요 구 : '15. 1. 14. (경기도지사) ○ 의 결 결 과 : '15. 3. 19. (재의결)
조례내용	○ 전자파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기지국 설치 등을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도지사가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한 곳에는 누구든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재의요구 이 유	○ 무선국(기지국)의 설치 및 금지에 관한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 도지사의 권한으로 설치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전파법」 법령의 취지에 위반됨.
재의결과	재의결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5.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소재한 어린이집 등에 적용한다.

제4조(건강보호 의무 준수 등)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명시한 아동의 건강에 대해 최우선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의무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안심지대 지정) ① 도지사는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안심지대 관리 등)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안심지대에는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심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연구 등에 참여하고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경기도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하여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하여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6. 5. 16.(의원) ○ 의 회 의 결 : '16. 9. 9. ○ 재 의 요 구 : '16. 9. 27.(서울특별시장) ○ 의 결 결 과 : '17. 3. 3.(재의결) ---------- ○ 대법원 제소 : '17. 3. 23.(서울특별시장)
조례내용	○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대부요율을 인하한 제16조('15. 7. 30. 개정) 관련 부칙을 신설하여 '15. 7. 30. 개정 전에도 소급적용되도록 함.
재의요구 이 유	○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류 후 미 매각된 체비지는 체비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공유재산에 불과하므로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57, '12. 6. 19.). ○ 유사 개정조례안 ('집단이주용 체비지에 대하여 변상금 매각시 부과 가능')에 대해 공유재산법 위반 이유로 제소하여 조례안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음.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추152판결)
제소결과	계류중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979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대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단서는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중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대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단서는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중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제정)

개 요	○ 발 의 : ’14. 10. 14.(의원) ○ 의 회 의 결 : ’14. 12. 22. ○ 재 의 요 구 : ’15. 1. 9.(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의 결 결 과 : ’15. 1. 28.(부결)
조례내용	○ 대마도가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여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목적하며, 구청장은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함. ○ 대마도의 날 지정 : 4월 13일
재의요구 이 유	○ 법률적 부적정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위배 ○ 절차적 부적정 : 주민 공감대 형성의 기본절차 위배 ○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상의 문제점 등 ○ 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재의결과	부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마도가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여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증거도 있으므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대마도의 날) 임진왜란 첫 승전으로 입증된 다대첨사 윤흥신 장군의 다대성 전투 승전일이 1592년 음력 4월 13일이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 또한 1919년 4월 13일이므로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담아 대마도의 날을 4월 13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는 필요시 의결을 통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5. 07. 10.(영도구청장) ○ 의 회 의 결 : '15. 07. 22. ○ 재의요구지시 : '15. 07. 30.(부산광역시장) ○ 재 의 요 구 : '15. 08. 13.(영도구청장) ○ 의 결 결 과 : '15. 09. 22.(부결)
조례내용	○ 관직 명칭변경(경리관→재무관) ○ 상위법 불일치정비(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재의요구 이 유	○ 조례 개정안 제4조제1항제5호의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제2항에 따라 광역시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임
재의결과	부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3. (생략) 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6. (생략) ③ (생략)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무관----------. 1.~3. (현행과 같음) 4. -건설기술진흥법---------- 5.~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① (생략) 1.~4. (생략)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주민대표자"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서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격증을 소지한 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삭 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구청장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삭 제>
제14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생략) 1.~8. (생략)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4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생략) 1.~8. (현행과 같음)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개 요	○ 발 의 : '17. 11. 14. (의원) ○ 의 회 의 결 : '17. 11. 14. ○ 재의요구지시 : '17. 12. 21. (남동구청장) ○ 재 의 요 구 : '17. 12. 21. (남동구청장) ○ 의 결 결 과 : '17. 12. 27. (재의결)
조례내용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 추천 요청 및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제출, 추천대상자 선정·통보, 서면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재의요구 이 유	○ 조례(안) 제2조부터 제6조의 전보 임용 직원에 대한 의견개진 및 인사발령 사항의 사전 서면 제출, 직원 추천 자료 요구 및 제출에 관한 조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탁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소지가 있음.
재의결과	재의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의장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중 의회사무국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조(추천요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배수 이상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서면제출)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

개 요	○ 발 의 : '15. 01. 15.(의원) ○ 의 회 의 결 : '15. 02. 11. ○ 재의요구지시 : '15. 03. 02.(남동구청장) ○ 재 의 요 구 : '15. 03. 02.(남동구청장) ○ 의 결 결 과 : '15. 03. 13.(부결)
조례내용	○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사업(안 제2조) -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구민 의견수렴 및 구정홍보 등 ○ 보조금 지원(안 제3조, 제6조) ○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실적보고(안 제4조~제5조)
재의요구 이 유	○ 조례안 제3조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함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 14의 지방재정 건전운용 원칙에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하도록 명문화 되고,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시행하고 있음.
재의결과	부결

【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남구분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4. 지역사회 봉사활동
5. 기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실적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

개 요	○ 발 의 : '14. 12. 17.(심우창 구의원) ○ 의 회 의 결 : '15. 2. 27. ○ 재의요구지시 : '15. 1. 5.(인천광역시장) ○ 재 의 요 구 : '15. 1. 6.(서구청장) ○ 의 결 결 과 : '15. 2. 27.(부결)
조례내용	○ 구보호수의 정의 등 용어 정의 ○ 구청장 스스로 또는 신청에 의한 구보호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구보호수 유지·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구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형질변경 행위, 각종 개발 행위 제한 등 보호수 보호에 관한 사항 ○ 구보호수의 피해 시 원상회복명령 등에 관한 사항 ○ 구보호수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재의요구 이 유	○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권자는 인천광역시장임. ○ 보호수 지정 대상 수목이 동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 외 서구청장이 정하는 수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보호수 지정대상 수목이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의 지정 대상 수목이 시장 권한 사항과 중복되어 있어 지정대상 수목의 구분이 필요함. ○ 조례(안) 제7조 규정에 "①구보호수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와 "②구보호수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항과 제8조 "①구보호수가----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에 대하여는 상위법(산림보호법)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2조(경과조치) 규정은 이미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기 지정되어 있는 사항임.
재의결과	부결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구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 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구청장이 지정한 구보호수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구보호수의 지정) ① 구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구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보호수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구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구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목적에 따라 구보호수를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구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구보호수의 해제) ①구청장은 구보호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보호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구보호수의 표지) 구청장은 지정된 구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구보호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구보호수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①구청장은 구보호수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 등 및 관리부서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구보호수 소유자 등의 의무) ①구보호수의 소유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된 사람은 변경사항을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해당 구보호수 등이 멸실 또는 고사했을 때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구보호수의 보호) ① 구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채취, 절·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수목 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계획 등을 구청장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구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④ 구청장은 구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9조(원상회복명령 등) 구청장은 구보호수 또는 보호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가한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구보호수의 점검) ①구청장은 구보호수의 유지,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구보호수의 보호·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비치) 구청장은 구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구보호수 관리대장과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확인점검 및 보호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구 보 호 수 관 리 대 장

<table>
<tr><td colspan="2">지정번호</td><td colspan="2">2000-00</td><td>지 정
년 월일</td><td colspan="2"></td><td>수목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본 수</td><td colspan="2"></td><td>과 명</td><td colspan="2"></td><td>학 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소재지및위치</td><td colspan="2"></td><td>지 목</td><td colspan="2"></td><td>면 적</td><td colspan="2">m^2</td></tr>
<tr><td colspan="2">수 령</td><td></td><td>수고</td><td>m</td><td>흉 고
나무둘레</td><td></td><td>수관
직경</td><td colspan="2">m</td></tr>
<tr><td rowspan="2">소유자</td><td>주소</td><td colspan="3"></td><td rowspan="2">관리자</td><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성명</td><td colspan="3"></td><td>성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10">지정사유</td></tr>
<tr><td colspan="10">나무의 특징</td></tr>
<tr><td colspan="10">연혁 및 전설</td></tr>
<tr><td colspan="10">기타(해제사유)</td></tr>
</table>

※ 현황사진은 별도첨부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점 검 및 보 호 관 리 대 장

년 월 일	구 분	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상황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6. 09. 29.(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 의 회 의 결 : '16. 10. 11. ○ 재의요구지시 : '16. 10. 27.(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재 의 요 구 : '16. 10. 31.(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의 결 결 과 : '17. 02. 16.(재의결)
조례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 확대** - **당 초 :**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5천원 미만인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개정안 :**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전체 세대와 월 1만 5천원 미만인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재의요구 이 유	○ **상위법령 위반**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협의절차가 없었음. -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할 경우,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지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음 < 결과 > - 2016. 12. 20. 보건복지부 조례안 시행에 대한 **"동의"** 회신 - 2017. 2. 16.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조례안 재의결 - 2017. 2. 21. 조례 공포
재의결과	재의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5천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제3조(지원대상) ---------- 월 1만원 미만 전체 세대와 1만 5천원 미만인 ----------. 1. ~ 4. (현행과 같음)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2017. 02. 01.(의원) ○ 의 회 의 결 : '2017. 02. 16. ○ 재의요구지시 : '2017. 03. 13.(행정안전부장관) ○ 재 의 요 구 : '2017. 03. 14.(경기도지사) ○ 의 결 결 과 : '2017. 05. 25.(위원회 안으로 수정의결)
조례내용	○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 일당·여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
재의요구 이 유	○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54조, 「행정심판법 시행령」의 비용 부담 취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바, 이와 같은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기에 같은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결과	수정의결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의 행정처분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청문 또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문"이란 「행정절차법」 및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총괄부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심판담당관을 말한다.
4.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실·과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청문결과에 따라 처분부서의 장이 예정된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의 청문대상자. 다만, 청문절차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기관위임사무와 관련한 청문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 한도) ① 도지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
2. 제3조제2호 본문의 경우 :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상한 금액
3.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변호사의 보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법인에 대한 지급방법) 청문 또는 행정심판에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소속직원 등이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참석한 소속직원이 아닌 해당 법인에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문의 경우 :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 청문조서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2. 행정심판의 경우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집행정지 결정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

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절차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통지된 예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부 인용재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신청 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청문 관련 공문 또는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제10조(시·군 업무협의) 도지사는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청문 또는 행정심판에서도 시·군민들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청문 및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

개 요	○ 발 의 : ‘16. 6. 7. (의원) ○ 의 회 의 결 : ‘16. 6. 16. ○ 재의요구지시 : ‘16. 7. 20. (미래부, 법무부) ○ 재 의 요 구 : ‘16. 7. 20. (경기도지사) ○ 의 결 결 과 : ‘16. 11. 25. (재의결)
조례내용	○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에 관한 도민의 권리를 증진 시키고자 함.
재의요구 이 유	○ 2016. 6. 30. 경기도의회가 공포를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2016. 7.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를 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함.
재의결과	재의결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17조, 제18조, 제1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등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및 통신 비밀에 관한 도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영장 없이 임의로 통신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되는 통신정보 오·남용 억제 시책을 적극 마련 실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절차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제공 또는 사용된 개인정보 및 통신자료 내역을 정보주체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법원의 영장 청구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제공, 사용되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현황을 분석하여 그 개선사항

을 년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 관련사업자가 수행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여부 등을 해당 정부기관에 확인을 구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통신사업자의 가입약관을 검토 분석하여 도민의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기관 등에 시정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제5조(침해 신고제 운영)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침해 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항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내용을 파악하여 처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6조(자료공개) ① 도지사는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사항을 년 2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내용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주거 복지 조례안(개정)

개 요	○ 발 의 : '15. 8.18.(의원) ○ 의 회 의 결 : '15. 9.23. ○ 재 의 요 구 : '15.10.14.(경기도지사) ○ 의 결 결 과 : '16. 2. 4.(부결)
조례내용	○ 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최소비율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조성 의무화
재의요구 이 유	○ 기금의 용도 및 목적의 한전성에 따른 자금운용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 건전재정운용원칙, 예산편성 자율권 등에 저촉됨.
재의결과	부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거복지기금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주거복지기금 조성 등)** ① ---------- 설치하고 매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로 적립한다.
② (생략) 1. 도의 출연금 2. (생략) 3.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도의 출연금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2.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3. 주거복지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 1. 공공임대주택 공급 2.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지원 3.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4.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자금 융자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주거복지기금 조성 등) ① ---------- 설치하고 매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로 적립한다.	**제9조(주거복지기금 조성 등)** ① ----------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도의 출연금	1. 도 보통세의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2 이내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③ ----------	③ ----------
1. 공공임대주택 공급	1. (개정안과 같음)
2.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지원	2. (개정안과 같음)
3.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3.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4.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자금 융자지원	4. (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개정안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김포도시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개 요	○ 발 의 : '17. 3.10. (의원) ○ 의 회 의 결 : '17. 3.28. ○ 재의요구지시 : '17. 4.11. (경기도지사) ○ 재 의 요 구 : '17. 4.17. (김포시장) ○ 의 결 결 과 : 안건폐기
조례내용	○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직원의 파견 및 겸직,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
재의요구 이 유	○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고, 「상법」에서 정하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조례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제107조제1항, 제172조제1항 및 경기도 법무담당관-6462(2017.4.11.)호에 따라 재의를 요구함.
재의결과	폐기

【김포시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출자한 회사의 관리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촉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 등)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이 각 호와 같다.

1. "출자회사"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따라 김포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가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2. "총괄부서"라 함은 출자회사에 관한 중요방침의 입안, 조정, 경영계약체결, 출자금 지급 등 출자회사의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라 함은 출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출자계획의 입안, 조정, 위탁계약체결, 출자금 지급요구 및 출자회사에 대한 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회적 책임경영"이라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단순한 이윤원칙만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경영원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김포도시공사가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중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도시공사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도시공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동의한 출자회사 등

제4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① 도시공사는 출자회사가 책임경영체제 아래에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시공사와 출자회사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협약서를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출자회사 관리

제5조(관리업무) ① 총괄부서는 출자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결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경영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사업부서는 출자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

1. 출자회사의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위·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필요시에 총괄부서와 사업부서 간 상호 협의하여 관리한다.

제6조(출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사업부서는 다른 사업에 신규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자계획안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출자금액 및 출자재원 확보방안
3. 출자할 회사의 사업개요 및 사업전망
4. 출자할 회사의 정관(안)
5. 기타 출자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의한 출자계획안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출자가 불가피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김포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출자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출자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출자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사업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출자심의위원회) ①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른 출자계획안 검토 시 출자금 회수시기 등 관련 계획의 적정성과 위험감수방안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출자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출자위원회는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공사 사장으로 하며 출자계획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 타당성 및 출자근거의 적격성
2. 투자비율・규모・투자회수방법의 적정성
3. 투자시기의 적시성
4. 투자리스크 최소화 방안

5. 사후관리 및 기타 투자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는 출자위원회가 심의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보완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및 이사회 의결) ①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른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김포시의회에 제출할 출자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자계획서
2.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

제9조(출자지분 관리) ① 총괄부서에서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증자 등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출자금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은 도시공사 명의로 보유하여야 하며, 다만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해 출자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출자회사 관리대장을 비치 ·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및 보고사항) ① 도시공사는 출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도시공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1. 출자회사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사항
2. 조직·예산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4.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출연
5. 자금의 차입 및 우발채무
6.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7. 주요 경영방침에 관한 사항

② 도시공사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사에 보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반기별 업무계획 및 실적(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2. 반기 결산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4. 형사 책임에 관련된 사고 등 중요사고의 발생

제 3 장 사회적 책임경영

제11조(임원선정위원회) ① 도시공사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회사에 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협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비상임위원과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선정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3인에서 7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 및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출자회사의 상임임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직원과 공무원(당연

직 이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선정 기준 등) ① 도시공사는 선정위원회가 기업 경영과 출자회사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공사는 선정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면 등) ① 도시공사는 출자회사의 사장을 제11조에 따른 임원선정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도시공사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협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시공사는 출자회사의 비상임이사를 제11조에 따른 임원선정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시공사 심의·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사장이 임명하도록 협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1. 김포시 도시공사사업 담당과장
2. 김포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

③ 도시공사는 출자회사의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비리 의혹이 있을 경우 도시공사는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비위혐의로 조사·수사 중인 출자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제한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의 수립) ① 총괄부서는 출자회사 사장에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출자회사가 제1항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계약 체결) ① 도시공사의 사장은 출자회사의 사장과 매년 경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출자회사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① 제15조에 따라 총괄부서는 출자회사 사장으로부터 당해연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받아 5월 31일까지 경영실적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출자회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도시공사는 출자회사의 회계연도가 도시공사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의 원칙) 도시공사는 출자회사의 경영 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다만, 출자회사가 도시공사의 연결재무제표작성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도시공사의 회계사무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① 도시공사의 감사부서는 필요할 경우 출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② 도시공사의 감사부서는 제1항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출자회사에게 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 등은 도시공사의 내부지침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20조(직원의 파견 또는 겸직) 도시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사의 임·직원을 출자회사의 임·직원으로 선임하여 파견하거나 겸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출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도시공사에 파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도시공사 임직원의 출자회사 이사 임기) 도시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출자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감사 (비상임)로 선임된 자가 도시공사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그 직을 면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

개 요	○ 발 의 : '17. 06. 30.(시의원) ○ 의 회 의 결 : '17. 07. 18. ○ 재의요구지시 : '17. 07. 28.(광명시장) ○ 재 의 요 구 : '17. 08. 07.(광명시장) ○ 의 결 결 과 : '17. 09. 20.(부결)
조례내용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② 심의회는 위원장 7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광명시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2명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등 1 명 4. 공개모집에 의한 시민 1명 5.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
재의요구 이 유	○ 이 사건 조례안 제6조제2항은 위촉대상 잡단별로 위원수를 제한하고 있어 시장에게 부여된 심의회의 설치 및 위원 위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며, 공개 모집에 의해 추천한 사람등을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도 보기 어려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위배됨.
재의결과	부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또는 개정안)	개 정 안(또는 수정안)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7명---------- 다음 각 호의 사람 ----------.
<신 설>	1. 광명시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2명
<신 설>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신 설>	3.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등 1명
<신 설>	4. 공개모집에 의한 시민 1명
<신 설>	5.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 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제정)

개 요	○ 발 의 : '17. 06. 12.(시의원) ○ 의 회 의 결 : '17. 07. 13. ○ 재의요구지시 : '17. 07. 24.(광명시장) ○ 재 의 요 구 : '17. 08. 07.(광명시장) ○ 의 결 결 과 : '17. 09. 20.(부결)
조례내용	○ 미제정 및 찬성 의결되지 않은 동의안 등에 대해서 동일 회기에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 시장은 조례안·동의안 등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미제정 및 미의결 상태에서 언론사 등을 통해서 시민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홍보를 제한하고 있음.
재의요구 이 유	○ 이 조례안에서 사전홍보를 금지하는 제2조는 법령에 근거 없이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며, 예산안 자료 제출에 관한 제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은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음.
재의결과	부결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 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제정 및 찬성 의결되지 않은 동의안 등에 대해서 동일 회기에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제정 및 찬성 의결되지 않은 동의안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안을 동일 회기에 동시에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조례안·동의안 등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미제정 및 미의결 상태에서 언론사 등을 통해서 시민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전에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 중 신규예산 및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심의 5일 전에 사업세부 계획서 및 사업세부 내역서를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물품의 교체(1천만 원 이상), 리모델링공사(1천만 원 이상)등의 예산이 편성된 경우, 관련 기존 물품 및 리모델링공사 전 현장 등의 칼라사진을 예산심의 5일 전에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동시제출 금지) ① 시장은 광명시의회에 다음 각 호의 조례안·동의안 등에 대해서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미제정 및 미의결된" 조례안·동의안에 대해서 동일 회기에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경우
2. "미제정 및 미의결된" 조례안·동의안·예산안 등에 대해서 사전에 시정소식지(광명소식) 및 언론사 등을 통해 홍보된 경우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개 요	○ 발 의 : '17. 07. 31. (시의원) ○ 의 회 의 결 : '17. 08. 01. ○ 재의요구지시 : '17. 08. 23. (광명시장) ○ 재 의 요 구 : '17. 08. 24. (광명시장) ○ 의 결 결 과 : '17. 09. 20. (부결) ---------- ○ 대법원 제소 : 해당없음 ○ 제 소 결 과 : 해당없음
조례내용	○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광명동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사업과 동굴운영 시 직영으로 하고 특별관리지역내에 취락지구개발사업을 광명도시공사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안님.
재의요구 이 유	○ 이 사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없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되어 위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뿐 아니라,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아 광명동굴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직원은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등 극심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조례안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종전 조례에 대한 직원의 신뢰이익 파괴를 정당화 할 만큼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
재의결과	부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또는 개정안)	개 정 안(또는 수정안)
제21조(사업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사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1. (현행과 같음)
2.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2.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개발사업
3.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3.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장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 운영하며, 수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내지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 · 운영	<삭 제>
10. 내지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제정)

개 요	○ 발 의 : '16. 08. 29.(의원) ○ 의 회 의 결 : '16. 09. 09. ○ 재의요구지시 : '16. 09. 21.(성남시장) ○ 재 의 요 구 : '16. 09. 26.(성남시장) ○ 의 결 결 과 : '16. 10. 20.(재의결) ○ 대법원 제소 : '16. 11. 07.(성남시장) ○ 제 소 결 과 : '18. 10. 31. 제소 실효성이 없어 취하
조례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업양도 및 상속금지규정이 신설된 구 여객자동차법(2009. 5. 27. 법률 제9722호)이 시행된 2009. 11. 28.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재의요구 이 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이용 수요와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재량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판단·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우리시는 택시 자율감차 사업구역으로 556대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며, 의견 수렴 결과,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택시노조의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재의요구 이 유	○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면허의 자연감소가 없어지게 되어,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110여명의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짐. ○ 현재 양도·상속의 허용을 고려할 만한 사업면허의 수요 및 공급 등의 변동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 이후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와 상속을 계속 허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택시 감차는 유명무실해지고 ○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신규 면허 대기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 법 제정(2009.5.27.)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례(2012.3.29.선고 2010헌마443)에도 반하여 장기근속자의 개인택시 면허 취득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임.
재의결과	재의결, 대법원 제소 후 실익없어 취하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양도, 상속) ① 2009년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 요	○ 발 의 : '18. 01. 23.(공주시장) ○ 의 회 의 결 : '18. 02. 08.(수정의결) ○ 재의요구지시 : '18. 02. 21.(공주시장) ○ 재 의 요 구 : '18. 02. 26.(공주시장) ○ 의 결 결 과 : '18. 07. 01.(안건 폐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단서에 따라 의원의 임기 종료에 따른 폐기
조례내용	○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시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중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중 장애인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재의요구 이 유	○ 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서는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하여 위법
재의결과	폐기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을 “(위탁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⑧ 위촉위원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종전의 제7조)제3항 중 "시장"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운영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⑧ 위촉위원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①·② (생 략) ③ 그 밖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프로그램 종류, 이용료 등은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시장	----------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신 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8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수정의결안 신·구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 위하여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둔다. ② 시장은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시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중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중 장애인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삭 제>
<신 설>	⑥ 선정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삭 제>
⑧ 위촉위원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법 제36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공주시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서천군 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개 요	○ 발 의 : '14. 9. 30. (의원) ○ 의 회 의 결 : '14. 10. 28. ○ 재의요구지시 : '14. 12. 2. (충청남도지사) ○ 재 의 요 구 : '14. 12. 3. (서천군수) ○ 의 결 결 과 : '18. 7. 1. (폐기) (의원의 임기 종료에 따른 폐기)
조례내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재의요구 이 유	○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천군 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서 '서천문화원'을 정의하면서 "서천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하고 있음
재의결과	폐기

【서천군 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천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4.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과 답사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특별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시작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4.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세부사업 시행계획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 적합 여부
2. 군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
4. 사업비의 적정성

② 군수는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 군수는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문화원장에게 알려야한다.

③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기장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5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군유재산의 대여)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군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행사, 향토자료 조사·연구, 군민문화 교육 및 문화재 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나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개 요	○ 발 의 : '15. 05. 29.(의원) ○ 의 회 의 결 : '15. 12. 17. ○ 재 의 요 구 : '15. 12. 28.(양산시장) ○ 의 결 결 과 : '16. 06. 28.(부결)
조례내용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급식경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식품비 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함.
재의요구 이 유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3항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원칙으로 한다." 제4항 "도지사, 시장은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원한다.",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등의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은 상위법령 위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의 권한과 재량권을 침해함. ○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지원계획의 내용과 개정 조례안의 지원계획 내용이 다르며 학교급식은 교육청의 고유업무로서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장은 이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권장토록 하는 것 등에 한정되며, 급식지원대상을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학교급식계획 수립주체와 내용이 다르게 조례를 개정함은 상위법령 위반함.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의 우선적 지원 학생은 저소득층 및 도서벽지, 농어촌학교(읍면지역 등) 등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의 급식지원 대상자 중 의무교육기관의 우선적 지원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서 명시한 우선적 지원 대상과 상충되므로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인 강행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 및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함.
재의결과	부결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 급식비를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5.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 음식의 원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1조의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식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식품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경비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식품비 지원 대상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서 양산시 관내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양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식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부의 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임무) 식품비를 지원 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지원 목적에 따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요구) 시장은 학교급식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에 관련한 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도· 감독)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요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2. 교육지원청 급식업무관련과장
3.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4. 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7.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8.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9. 그 밖에 관련 전문가 2인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
2.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품비 필요경비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사망·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학교급식 식품비 필요경비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

개 요	○ 발 의 : '15. 11. 05. (의원) ○ 의 회 의 결 : '15. 12. 14 ○ 재 의 요 구 : '15. 12.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의 결 결 과 : '16. 02. 26. (부결)
조례내용	○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및 전문 강사 양성 ○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 ○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 ○ 동행지원 등 협조요청 ○ 피해자 긴급 지원
재의요구 이 유	○ 조례에 각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시설인 장애인 가정폭력 · 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장애인 가정폭력 · 성폭력 통합보호시설 등을 창설하고 있는 바, 각 법률 및 그 조항이 의도하는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각각의 시설(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설치 · 운영 등에 저해되는 것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법률의 조항에 위배 ○ 또한, 각 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재위임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
재의결과	부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또는 남성 장애인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폭력" 이란 장애인에게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생활영역에 대한 차별
3. "폭력 예방 통합교육"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성

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폭력 방지, 장애인 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지원 및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폭력 예방

제4조(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하여 통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장애인에 대한 폭력 예방 통합교육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채용 사업장, 장애인 교육기관, 장애인 지원 단체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피해자 수사 및 조사 기관, 법률 지원 기관 및 피해자 행정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과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양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치료와 자립 등에 관한 홍보 등 장애인 폭력 예방 캠페인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 ①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 피해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 폭력 예방과 차별금지를 위하여 매년 4월 두 번째 주간을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 폭력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지원

제8조(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임상심리사, 진술분석가, 변호사, 활동보조인, 수화통역사, 전문상담사, 심리치료사 등 장애유형별 필요한 서비스 제공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휠체어, 점자, 돋보기, 보청기, 빨대, 인형, 큰 글자 등 장애유형별 적절한 보조 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서비스 제공과 제2항의 보조 도구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인권 보호) ①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는 피해자 또는 가족 조사, 재판 과정 등에서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0조(동행지원 등 협조요청) ① 장애인 폭력 피해 상황을 인지한 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자치경찰단 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 동행
2. 피해자 가정 방문
3. 이동 시 보호를 위한 목적
4. 그 밖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

제4장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제11조(피해자 지원 및 보호) 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되,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심리 지원
2. 의료 및 치유 지원
3. 수사 및 법률 지원
4. 사례 및 가족 지원
5. 자립 및 자활 지원

제12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 개입과 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체 및 심리 치유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2. 피해자 가족 중 부모가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

3. 가족 구성원 중 다수가 피해자로서 가족 전체에 대한 안전 확보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피해자 긴급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우선순위, 긴급 예산 편성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의 설치 및 종류) ①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0조, 제341조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 법률적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보호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0조, 제341조의 위임에 따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 상담 및 치료,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가족 그룹홈 : 피해자가 가족일 경우 보호, 숙식, 상담 및 치료, 자립, 취업,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기관 : 장애인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강사 파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 폭력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행정시 국장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장애인 인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장애인 폭력 피해 지원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장애인 가족 대표
6.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폭력 신고·상담·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장애인 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장애인 생애주기별 폭력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4. 장애인 폭력 사전 예방 교육 및 유해환경 개선
5. 피해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지원시설 설치·운영
6. 피해자의 교육,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등 사회복귀지원
7.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해임·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사무나 소위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도의 조례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정하거나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시·도의 조례·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법 제24조)

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법 질서 상호간의 모순·저촉을 방지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시·도의 조례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4. 03. 31. (의원) ○ 의 회 의 결 : ‘14. 05. 02. ○ 재의요구지시 : ‘14. 05. 23. (안전행정부) ○ 재 의 요 구 : ‘14. 05. 27. (인천광역시장) ○ 의 결 결 과 : ‘14. 06. 30. (폐기 : 지방자치법 제67조에 따른 임기만료 자동폐기)
조례내용	○ 지원대상 주민들의 거주사실 확인과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하거나 이주한 주민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잘못 지급된 경우에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함(안 제9조).
재의요구 이 유	○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주민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는 그 지급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향후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의 지출까지를 포함할 수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배됨.
재의결과	폐기

【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천재지변 등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하거나 이주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
2. 기타 위와 유사한 사정으로서 이 조례 제4조의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3조(법령과의 관계) 주민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지 상실주민 등 지원대상자의 심사·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거지 상실주민 또는 지원대상자의 심사·결정
2. 제6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3. 지원금 등 지급액 및 지급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의원
3. 시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인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금) 시장은 주거지 상실주민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급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에 따른다.

제8조(지급청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 등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출국자, 재소자 등 부득이 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되돌려 받고, 되돌려 주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그 밖의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개 요	○ 발 의 : ‘15. 09. 18. (의원) ○ 의 회 의 결 : ‘15. 09. 18. ○ 재의요구지시 : ‘15. 10. 02. (남동구청장) ○ 재 의 요 구 : ‘15. 10. 02. (남동구청장) ○ 의 결 결 과 : ‘15. 10. 21. (재의결)
조례내용	○ 지역사회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 도모하고자 제정
재의요구 이 유	○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법령의 근거가 없으며, ○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지원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
재의결과	재의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 ① 방범대는 대장, 수석부대장, 부대장, 총무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조직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천남동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자율방범대관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관할 지구대 또는 치안센터(파출소)를 경유,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신청 사항이 적합한지를 검토·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방범대 및 인천남동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신청 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제4조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방범대 및 인천남동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 ① 방범대는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남동구청과 협력하여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주관하고, 각 동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
2.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야식비, 실소요 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 및 장비 등은 방범대원이 제3조의 임무 수행 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는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의 사용 및 활동실적을 연간 2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남동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7. 01. 20. (의원) ○ 의 회 의 결 : '17. 02. 10. ○ 재의요구지시 : '17. 02. 23. (인천광역시장) ○ 재 의 요 구 : '17. 02. 28. (연수구청장) ○ 의 결 결 과 : '17. 04. 27. (재의결)
조례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생활임금의 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1조)
재의요구 이 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 해당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의 생활임금 조례 적용대상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연수구의 자치사무라 할 수 없고, 상위법령에서 그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대상이 될 수 없고, ○ 또한 조례안 제6조의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될 수 없음.
재의결과	재의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③ "근로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임금을 말한다.

④ "위탁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연수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⑤ "소속 근로자"란 고용주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

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 장려)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

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안(제정)

개 요	○ 발 의 : ‘15. 6. 24. (의원) ○ 의 회 의 결 : ‘15. 7. 10. ○ 재의요구지시 : ‘15. 7. 30. (김포시장) ○ 재 의 요 구 : ‘15. 7. 30. (김포시장) ○ 의 결 결 과 : ‘15. 9. 18. (부결)
조례내용	○ 난민의 지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 조례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 ○ 난민 지원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난민 지원센터의 설치·기능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재의요구 이 유	○ 「난민법」 제18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사무 처리를 제한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
재의결과	부결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난민의 지위) 난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난민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난민으로 한다.

제6조(난민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난민에 대한 지원 정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난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 난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난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교수 등 난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난민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난민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난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난민의 생활안정 방안에 관한 사항
3. 난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난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난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능이 수행 가능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2. 난민인정 신청 지원 및 절차·법적 정보 제공
3. 난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4.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난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지원
7. 난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난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기능과 부합되도록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4. 7. 24. (의원) ○ 의 회 의 결 : ‘14. 7. 24. ○ 재의요구지시 : ‘14. 8. 14. (여주시장) ○ 재 의 요 구 : ‘14. 8. 14. (여주시장) ○ 의 결 결 과 : ‘14. 9. 05. (부결)
조례내용	○ 문화공연관람료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 문화공연관람료 납부방법 등 신설(안 제5조) ○ 관람료의 감면 범위 확대(안 제6조) ○ 관람료의 면제 범위 확대(안 제7조제13호) ○ 문예관, 감고당의 사용료 면제 범위 확대(안 제12조제3호) ○ 관람객 입장 제한 범위 확대(안 제17조제5호) ○ 체험프로그램 범위 확대(안 별표 3)
재의요구 이 유	○ 공공시설의 사용자가 징수하는 공연관람료는 시장과 공공시설 사용자와의 관계가 아닌 사용자와 공연 관람객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이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위임없이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법제처 자문결과에 따른 재의요구
재의결과	부결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공연관람료"란 문예관 또는 감고당에서 시행하는 문화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말일까지)"를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유적지"를 "시장은 유적지"로, "자는"을 "자에게"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유적지 관람시간 이후에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문화공연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공연관람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문화공연관람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며, 문화공연관람료는 각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문예관 또는 감고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공연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문화공연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발매가 완료되면 발매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공연관람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람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감면한다.

1. 여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등록이 되어있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개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본인의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3. 그 밖에 관람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한다.

제6조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관람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미"를 "시장은 이미"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공연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 기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관람권의 발매가 완료된 후 다음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시장은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중 "유적지"를 "시장은 유적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소"를 "시장은 관리소"로, "정원은 시장이"를 "정원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서 아니"를 "해서는 아니"로 한다.

제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유적지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중 "생가 및"을 "시장은 생가 및"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시물은"을 "시장은 전시물을"로 한다.

제22조 중 "전시물"을 "시장은 전시물"로, "물품은"을 "물품의"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 하"를 "수탁자의 책임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에 대"를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체 험 료

(단위 : 원)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비고
전통예절 및 다도체험 등 각종체험	시간당 2,900원	
전통의상 체험	30분당 3,000원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연락처	
	성 명 (대 표 자)			
신청내용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출 연 인 원	명		
	관람예정인원	명(대상범위:)		
	관 람 료 징 수	1인당 원(대상별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 ) 회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첨 부 서 류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허가서

(앞면)

<table>
<tr><td rowspan="2">사용자</td><td>주 소
(단 체 명)</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성 명
(대 표 자)</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8">허가내용</td><td>사 용 시 설</td><td colspan="4"></td></tr>
<tr><td>사 용 목 적</td><td colspan="4"></td></tr>
<tr><td>사 용 인 원</td><td colspan="4"></td></tr>
<tr><td>출 연 인 원</td><td colspan="4">명</td></tr>
<tr><td>관람예정인원</td><td colspan="4">명(대상범위 :)</td></tr>
<tr><td>관 람 료 징 수</td><td colspan="4">1인당 원(대상별 :)</td></tr>
<tr><td rowspan="2">사 용 기 간</td><td colspan="3">년 월 일 시부터</td><td rowspan="2">( ) 회
( )시간</td></tr>
<tr><td colspan="3">년 월 일 시까지</td></tr>
<tr><td>사 용 조 건</td><td colspan="4">이 면 참 조</td></tr>
<tr><td colspan="2">사 용 료</td><td colspan="4">일금 원(₩)</td></tr>
</table>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210㎜×297㎜[백상지 80g/㎡]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문화공연관람료"란 문예관 또는 감고당에서 시행하는 문화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 10. (생 략)	5. ~ 11. (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유적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
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09:00부터 18:00까지	1. ---------- 31일까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관람료 등) 유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와 주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와 주차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등) ① 시장은 유적지---------- 자에게 ---------- 징수한다.

현 행	개 정 안
<단서 신설>	다만, 제4조제1항의 유적지 관람시간 이후에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문화공연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면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문화공연관람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며, 문화공연관람료는 각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④ 문예관 또는 감고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공연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 문화공연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발매가 완료되면 발매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공연관람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람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제6조(관람료의 감면) 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단,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감면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등록이 되어 있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개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본인의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3. 그 밖에 관람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단체인 경우라도 개인관람료를 적용하여 감면한다.	<삭 제>
③ 본인소유 그린카드 소유자에 한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삭 제>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명 추가	6. ---------- 발급 ----------. ----------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그 밖에 관람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과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이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9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감고당의 사용을 허가 한다.	② ---------- 해당하는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예관과 감고당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문화공연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 기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관람권의 발매가 완료된 후 다음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11조----------.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명성황후 유적관리소) ①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명성황후 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 라 한다)를 둔다.	제14조(명성황후 유적관리소) ① 시장은 유적지----------.

현 행	개 정 안
② 관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관리소---------- 정원은 ----------.
제16조(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유적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 아니 된다.	제16조(준수사항) ① ---------- 해서는 아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관람객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적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관람객 입장의 제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유적지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소장품 구입) 생가 및 기념관 등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구입할 수 있다.	제19조(소장품 구입) 시장은 생가 및 ---------- 인정하는 ----------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
제21조(전시물관리)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제21조(전시물관리) 시장은 전시물을 ----------.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1. ~ 2. (생 략)

제22조(전시물 안전대책) 전시물 중 귀중한 물품은 도난, 훼손, 파손, 화재 등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 ② (생 략)

③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26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별표 3 〕
체 험 료
<table><tr><th>체험프로그램</th><th>체험료</th><th>비고</th></tr><tr><td>전통예절 및 다도체험</td><td>시간당 2,900원</td><td></td></tr><tr><td>전통의상 체험</td><td>30분당 3,000원</td><td></td></tr></table>※ 본인소유 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체험료의 100분의 30 감면</td><td>1. ~ 2. (현행과 같음)

제22조(전시물 안전대책) 시장은 전시물 ---- 물품의 ----------.

제2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재산---------- 수탁자의 책임하----------.

제26조(지휘·감독) ① ----------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

② -----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

〔 별표 3 〕
체 험 료
<table><tr><th>체험프로그램</th><th>체험료</th><th>비고</th></tr><tr><td>전통예절 및 다도체험 등 각종 체험</td><td>시간당 2,900원</td><td></td></tr><tr><td>전통의상 체험</td><td>30분당 3,000원</td><td></td></tr></table><삭 제></td></tr>
</table>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6. 02. 26.(의원) ○ 의 회 의 결 : '16. 03. 17. ○ 재 의 요 구 : '16. 04. 05.(화천군수) ○ 의 결 결 과 : 의회 계류중 임기만료로 폐기
조례내용	○ 화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화천군 의용소방대로 함(안 제2조).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3조). ○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의 보고 의무 및 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지방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재의요구 이 유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자치사무 내지 단체위임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에 위반됨.
재의결과	폐기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화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조례안(제정)

개 요	○ 발 의 : ‘16. 03. 09. (의원) ○ 의 회 의 결 : ‘16. 03. 17. ○ 재의요구지시 : ‘16. 04. 01. (국민안전처장관) ○ 재 의 요 구 : ‘16. 04. 06. (도지사) ○ 의 결 결 과 : ‘16. 06. 21. (부결)
조례내용	○ 전라남도 소방기관 상시근무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 근무시간, 근무방법,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 초과근무수당 및 휴무일 근무에 따른 규정
재의요구 이 유	○ 주무부서의 장인 국민안전처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른 재의 요구 ○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 따라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함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근무조별 교대시간, 교대방법 및 교대근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기관장의 고유권한으로 조례 제정은 해당 규정에 위반됨 .
재의결과	부결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소속 소방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상시근무"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소방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3. "당번"이란 교대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날 또는 일정한 시간을 말하며,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포함한다.
4. "휴무"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5.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6. "휴게시간"이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7. "대기"란 비상출동 등 소방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

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제3조(근무시간) ① 소방기관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관서의 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방법) ① 교대제 근무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른 3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소방력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는 2교대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무제에 따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휴게시간) ① 각급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이상을 일괄하여 주거나 30분씩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지휘·감독 아래 자유롭지 않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각급 소방기관의 장은 지정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 또는 대기근무를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초과근무 및 보상) ① 각급 소방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각급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③ 각급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전부 더하여 그 만큼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휴무 실시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무를 부여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시간을 전부 더할 때는 근무시간별로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에 상응한 시간만큼 가산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칙) 각급 소방기관의 장은 상시근무를 하는 지방소방공무원의 범위, 상시근무 방법 등 이 조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근무방법) ① 교대제 근무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른 3교대제(3개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소방력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는 2교대제(2개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근무방법) ① (조례안과 같음)
② 24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당번, 비번, 휴무의 순서 또는 당번, 휴무, 비번의 순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2항의 근무제에 따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3.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그러나 조례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이면 된다.
(헌재 1995.4.20.결정, 92헌마264병합결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6. 11. 07. (의원) ○ 의 회 의 결 : ‘16. 12. 14. ○ 재 의 요 구 : ‘17. 01. 0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의 결 결 과 : ‘17. 03. 15. (재의결) ---------- ○ 대법원 제소 : ‘17. 04. 0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소 결 과 : ‘18. 07. 12. (유효) 대법원 2017추10 판결
조례내용	○ 도민문화시장의 목적, 정의 ○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 신고, 관리 ○ 육성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구성 ○ 운영규약 등
재의요구 이 유	○ 도민문화시장에서 신고수리 없이 농수축산물을 가공·조리 판매토록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시설기준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 ○ 또한, 자치조례라 할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
판결요지	○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공·조리 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식품위생법령과 모순·충돌되는 규정이 없으며, 시장개설자에게 도민문화시장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조례안에서는 도민문화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임시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과한 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음.

대법원 판결문

사 건	2017추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2. 14.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2016. 12. 15.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위 조례안 제2조제3호(나)목은 가공·조리한 식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도민문화시장의 개설기준 및 신고의무를 규정한 제5조 및 제6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7. 3. 15. 최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일부 문구만을 수정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도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제2조제1호).

(3) 이 사건 조례안에서 말하는 "상품"이란 직접 창작한 개인 창작품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 공정무역상품 등 중에서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제2조제3호).

(4) 도민문화시장은 도지사가 직접 개설하거나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고(제5조제1항), 도민문화시장의 시설기준은 ①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백 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 ③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 ④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이며(제5조제2항), 그 밖의 구체적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조제3항).

(5) 도민문화시장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장 개설 7일 전까지 도민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6조제1항), 도지사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관계 법령, 도민

문화시장 개설목적 및 시설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수리하고 도민문화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6조제2항).

2. 이 사건 조례안의 근거 법령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의 근거 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인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는 "임시시장"을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은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법 제14조는 제1항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 임시시장의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 제2조제1호는 이 사건 조례안이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인 도민문화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위 도민문화시장이 전통시장법에서 정하는 임시시장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조례안과는 별도로 전통시장법의 위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 이 사건 조례안 및 「제

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례안 제2조제3호(나)목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 제2조제3호(나)목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가공·조리한 식품(이하 '가공·조리 식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및 설치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도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규율목적에 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이 사건 조례안에 따라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공·조리 식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조례

안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가공·조리 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식품위생법령과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시장개설자에게 도민문화시장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조례안 제6조제2항은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관계 법령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가공·조리 식품의 신고 및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령 등과 같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조례안 제5조에서 정한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과 이 사건 조례안 제6조에서 정한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절차는,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도민문화시장의 개설방법과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는 조항들일뿐,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공·조리 식품에 관하여 규율하는 조항들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례안의 문언과 체계, 조례 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례안 제2조제3호(나)목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여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6조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6조가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도민문화시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내용은 관계 법령,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목적과 시설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은 도민문화시장과 같은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임시시장 개설 절차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6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가. 직접 창작한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예품)

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

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라. 공정무역상품

마. 중고품

바. 그 밖에 시장개설자가 도민문화시장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품목

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도민문화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민문화시장 개설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문화시장 개설 장소 확보와 홍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개설자는 도민문화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도민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문화시장의 개설·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 ① 도민문화시장은 도지사가 직접 개설하거나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도민문화시장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백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
3.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
4.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그 밖의 도민문화시장의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도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① 제5조에 따라 도민문화시장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민문화시장 개설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민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도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계획(운영규약 포함)
2. 도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도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관계 법령, 도민문화시장 개설 목적 및 시설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도민문화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도민문화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개설한 도민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4.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5.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8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문화시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민문화시장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3. 도민문화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4.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5. 그 밖에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문화시장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개설장소의 확보 등 도민문화시장 개설·운영 및 판로 지원
3.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홍보
4. 도민문화시장 육성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도민문화시장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민문화시장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8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도민문화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영규약 수립
4. 그 밖에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련 부서 과장, 사회적경제관련 담당 사무관, 행정시 관련부서 과장 2명, 제주문화예술재단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임시시장 개설 또는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다. 사회적경제관련 종사자 또는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라.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마. 그 밖에 도민문화시장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규약) ① 시장개설자는 도민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

여자 현황, 개설일 등)

2.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3.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도민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개 요	○ 발 의 : ‘14. 11. 19. (이의상 구의원) ○ 의 회 의 결 : ‘14. 12. 17. ○ 재의요구지시 : ‘15. 1. 2. (인천광역시장) ○ 재 의 요 구 : ‘15. 1. 6. (서구청장) ○ 의 결 결 과 : ‘15. 2. 27. (재의결)
조례내용	○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에 한하여 우선 사용허가 ○ 수영장·헬스장 사용료, 아카데미 수강료 및 체육관 대관료 인상 ○ 미수강 사용료 반환 시 10% 공제 후 환불
재의요구 이 유	○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 신설 조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모든 주민들이 평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검단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에 한하여 우선 사용허가’를 할 경우, 서구생활체육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와 일반주민들의 검단복지회관 체육시설 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할 우려가 있고, 평등의 원칙에 반함. ○ 지방자치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특정단체에게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사례(조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현재 검단복지회관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많아 신청 경합에 따른 공개추첨으로 대관 허가를 하는 실정으로, 개정조례안은 서구생활체육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와 일반주민들을 차별하는 내용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됨.
재의결과	재의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종목별 단체에 한하여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의 사용료 별표를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사용료 전액을"을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검단복지회관 사용료(제6조와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공연(영화)	행사	
가. 대강당	오전	30,000	45,000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 공연 및 행사당일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토요일 오후 및 야간, 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1시간미만은 20%, 2시간미만은 50%, 2시간이상은 다음회의 100%를 추가징수 ○ 익일의 공연이나 행사준비를 위하여 22: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오후	45,000	65,000	
	야간	70,000	90,000	
나. 세미나실	1회	30,000		
다. 체육관	1시간	**2층**	**9,000**	
		3층	**6,000**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부속설비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1대/1회	2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공연 및 행사당일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사용료의 50%로 함.
음향	마이크 (설비포함)	기본 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W/L (설비포함)	1일 1개	20,000	
	PIN (설비포함)	1일 1개	30,000	
	MR (AR, BGM)	1회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조명		1 시간	20,000	
공바톤		1일 1개	10,000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냉·난방 사용료	대강당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 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매시간 초과시 기준 요액의 20%를 가산한 금액
	세미나실	1시간		
	체육관	1시간		

4. 교육수강료

○ 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내(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5.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중 · 고생	초등생이하	
수영	강습 (월이용)	개인	**52,000**	**44,000**	**38,000**	○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 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월을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1일에 1회만 출입하는 기준 금액임.
	자유이용 (월이용)	개인	42,000	33,000	28,000	
	1일이용	개인	**5,000**	**3,000**	**2,000**	
		단체	**4,000**	**2,500**	**1,500**	
헬스	월이용	개인	30,000	20,000		
	1일이용	개인	**4,000**	**2,000**		

【 비 고 】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추가비용을 실비로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특화 프로그램은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사용료 별표 제5호의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따라 강습료를 별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또는 개정안)	개 정 안(또는 수정안)
제5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신 설>	제5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종목별 단체에 한하여 우선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 (생 략) ② (생 략)	제6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생 략) 1. (생 략) 2. 교육수강료 및 수영장입장료는 사용예정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생 략) 4. (생 략)	제10조(사용료의 반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교육수강료 및 수영장입장료는 사용예정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

개 요	○ 발 의 : ‘16. 05. 30. (의원) ○ 의 회 의 결 : ‘16. 06. 22. ○ 재의요구지시 : ‘16. 07. 08. (인천광역시장) ○ 재 의 요 구 : ‘16. 07. 12. (연수구청장) ○ 의 결 결 과 : ‘16. 08. 19. (부결)
조례내용	○ 안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③항을 신설 - ③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법 제42조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재의요구 이 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배출권 거래’ 또는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설치’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하고 있고, ○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조례로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국가 사무에 해당함.
재의결과	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3항과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는 감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각시설 및 연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감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또는 개정안)	개 정 안(또는 수정안)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는 감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각시설 및 연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감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8. 3. (시의원) ○ 의 회 의 결 : '18. 3. 12. ○ 재의요구지시 : '18. 3. 29. (광주광역시장) ○ 재 의 요 구 : '18. 3. 29. (광주광역시장) ○ 의 결 결 과 : '18. 4. 16. (부결)
조례내용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제도화
재의요구 이 유	❍ 감사부서에 특정 분야 감사를 위한 사무를 부여하는 조례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지휘·감독권 침해 ❍ 의회와 집행부간의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 - 사무분장과 관련한 시장의 고유 권한을 제약·변경 ❍ 사회복지사업법 규정보다 사회복지시설의 감사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시설 장비 종사자에게 의무 부과는 위법 -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함.
재의결과	부결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감사"란 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 안전, 노무 등에 관한 모든 사항
   나.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
   다. 보조금, 후원금, 수익 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
   라. 공사 및 구매 등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
   마. 부동산, 장비 등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및 별도 전산 시스템의 회계, 후원 등의 보고 사항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감사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감사 대상은 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제4조(감사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간
2. 감사 대상
3. 감사 범위
4. 감사반 구성 및 사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수립 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제6조(감사반 구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로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반장을 선정하며, 감사 담당자는 감사 부서 및 시와 자치구 소관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편성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감사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③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권옴부즈맨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계획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최근 3년 이내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감사 또는 인권 조사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등도 포함하여 선정한다.

⑤ 시장은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 편성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 방향 결정
2. 감사 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 현황의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 개요를 감사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 시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사 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감사 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 총평
4. 중점 감사 사항
5. 지적 사항 또는 처분이 필요한 사항
6. 현지 조치 사항
7. 그 밖에 특이 사항

제10조(감사 결과 처리) ①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시장은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행정처분 외 지적 사항 및 현지 조치 사항, 그 밖의 특이 사항 등 감사결과 보고 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 조례

개 요	○ 발 의 : 2016. 10. 10. (의원) ○ 의 회 의 결 : 2016. 10. 14. ○ 재의요구지시 : 2016. 11. 08. (행정안전부장관) ○ 재 의 요 구 : 2016. 11. 08. (경기도지사) ○ 의 결 결 과 : 2016. 11. 25. (위원회 안으로 수정의결)
조례내용	○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 추천 및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장 추천 및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
재의요구 이 유	○ 조례안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는 법령에 근거없이 도지사의 전속적인 임명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법하고, 이러한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기에 법 제26조제3항 및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결과	수정의결

【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민생연합정치"(이하 "경기연정"이라 한다)란 경기도의 연정정당과 집행기관이 연합하여 대결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이루는 지방자치의 정치혁신을 말한다.
2. "연정정당"이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서 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정당을 말한다.
3. "연정부지사"란 연정정당이 추천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 부지사를 말한다.
4. "연정위원장"이란 연정정책과제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연정정당이 선임한 의원을 말한다.
5. "연정합의문"이란 도지사와 연정정당이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합의하고 서명한 문서를 말한다.
6. "연정정책과제"란 연정합의문에 규정된 정책과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경기연정은 지방자치의 협치와 분권을 지향한다.

② 경기연정은 연정정당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③ 경기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약화시켜서는 아니

되고,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심의·의결권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경기연정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의정 및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연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연정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도지사와 연정정당은 연정정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

제5조(설치) 연정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연정부지사와 연정정당의 대표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연정위원장과 연정정당의 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수석대변인의 각 1명 및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의 기획조정실장 및 연정협력국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연정정책과제 이행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경기연정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연정정책과제 관련 조례·예산안 검토에 관한 사항

4. 연정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연정합의문에 없는 사안으로 갈등 발생 시 중재에 관한 사항
6. 도 산하 공공기관장 추천 및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6호의 도 산하 공공기관장 추천 및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연정위원장) ① 연정정책과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4명의 연정위원장을 둔다.

② 연정위원장이 연정정책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전담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연정위원장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2. 제2연정위원장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3. 제3연정위원장 :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4. 제4연정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③ 연정위원장은 연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상임위원회와 도의 실·국장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소관 연정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④ 연정위원장은 연정정책과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공동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의 합의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공동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모든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연정합의문 이외의 사안에 대한 갈등과 대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도의회가 파행될 경우 자동으로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청에 관하여 제2항을 준용한다.

⑤ 회의는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 회의 참석, 자료 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전문가 등 관계인에게 자문이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및 도민은 누구든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전략회의) ① 위원회는 연정정책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재정전략회의(이하 "재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연정정책과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재정회의는 연정부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의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재정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재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① 위원회는 도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재정회의 및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연정부지사 소관의 연정업무 담당과장이, 재정회의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추진협의회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 재정회의, 추진협의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재정회의, 추진협의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참석자의 발언내용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재정회의 및 추진협의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 및 자문에 응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과 공무원은 여비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장 연정중재위원회

제16조(설치) 연정합의문에서 정하지 않은 갈등과 대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의회가 파행될 경우 토론을 통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연정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구성) ① 중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의사진행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를 위원으로 포함한다.

② 중재위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 의장이 된다.

③ 부의장, 연정정당 대표,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각 교섭단체에서 전 의장단과 전 교섭단체 대표의원 중 각 1명씩 위원으로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제18조(기능) 중재위는 중재기구로 하고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가 파행되었을 경우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중재위를 대표하고 중재위의 기능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회의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중재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도의회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3조(회의록) 중재위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재위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참석자의 발언내용

제24조(결과의 이행) 연정정당 대표는 중재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연정정당 소속의원에게 공지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연정합의절차

제25조(연정협상단) ① 도지사와 연정정당 대표는 효율적인 협상을 위하여 연정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연정협상단의 구성인원, 합의절차, 합의문 작성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 및 연정정당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연정합의문) ① 연정협상의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정합의문은 도지사와 연정정당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확정한다.

제27조(합의문 공개) 도지사는 연정합의문을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도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연정의 협력과 주민참여

제28조(연정의 협력) 도지사는 연정정당과 협의하여 도교육청, 도내 시·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와 연정정당은 연정합의 단계에서 실행단계까지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연정상의 수행과정에서 도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연정의 평가 및 제도화

제30조(연정의 평가) 도지사 및 연정정당 대표는 연정의 실행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31조(연정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 및 연정정당 대표는 연정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소관의 연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연정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평가전문기관에 경기연정의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제도 개선) 도지사와 도의회는 경기연정이 대한민국의 새 정치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령의 제·개정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백서발간) 도지사는 연정의 평가결과를 백서로 발간하여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경기연정의 합리적 운영과 제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토론회 개최 등) 도지사는 연정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도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6조(자문회의)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연정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설치 목적과 구성방법,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의 연정부지사 및 연정위원장은 각각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연정부지사 및 연정위원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제정)

개 요	○ 발 의 : '16. 11. 28.(의원) ○ 의 회 의 결 : '16. 11. 29. ○ 재의요구지시 : '16. 12. 12.(성남시장) ○ 재 의 요 구 : '16. 12. 21.(성남시장) ○ 의 결 결 과 : '17. 1. 25.(부결)
조례내용	**○제6조(시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의요구 이 유	○ 본 조례는 업무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어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나 본 계약 이전에 체결하는 "사전계약적","업무협조 차원"의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고, 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치단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대립형 행정 구조에서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범위를 넓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재의요구 이 유	○ 재정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의 경우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 구체적인 재정적 부담이 있는 시점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또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중복 의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또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업무 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서도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재의결과	부결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성남시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철원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6. 05. 25.(의원) ○ 의 회 의 결 : '16. 06. 22. ○ 재 의 요 구 : '16. 07. 12.(철원군수) ○ 의 결 결 과 : 폐기 ※ 지방자치법 제67조에 따라 의안 폐기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내용	○ 철원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철원군 의용소방대로 함(안 제2조).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3조). ○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의 보고 의무 및 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지방보조금의 지원중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재의요구 이 유	○ 「철원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는 "운영비"에 해당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지방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등)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령의 구체적 위임 근거 없음.
재의결과	폐기

【 철원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철원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3.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전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4.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경비
5. 지역주민대상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
6. 그 밖에 소방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도시계획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8. 05. 09.(군수) ○ 의 회 의 결 : '18. 06. 18. ○ 재의요구지시 : '18. 06. 21.(강원도지사) ○ 재 의 요 구 : '18. 06. 25.(양구군수) ○ 의 결 결 과 : '18. 06. 29.(부결)
조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위임된 조문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따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재의요구 이 유	○ 「국토계획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재의결과	부결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해당마을 전체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가구의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경계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
   나.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200미터
   다.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100미터
3. 농지에 입지한 발전시설이 100kw 이상일 경우, 발전시설 하부 토지에 대한 생산성 증대 활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4.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지목에 관계없이 수목이 우거져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7. 인접토지의 일조권(그림자 등) 침해방지를 위해 정북방향 기준 시설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단, 그 외의 방향은 지적선에서 2미터의 이격거리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공공청사,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창고, 공장, 축사 등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의 보전,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주요 관광지,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해당마을 전체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50미터 이내로 연

	결되는 가구의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경계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 나.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200미터 다.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100미터 3. 농지에 입지한 발전시설이 100kw 이상일 경우, 발전시설 하부 토지에 대한 생산성 증대 활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4.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지목에 관계없이 수목이 우거져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7. 인접토지의 일조권(그림자 등) 침해방지를 위해 정북방향 기준 시설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단, 그 외의 방향은 지적

	선에서 2미터의 이격거리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공공청사,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창고, 공장, 축사 등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의 보전,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주요관광지,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위배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두고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배분원칙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의회와 단체장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의회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제 원리에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아니된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4. 9. 05. (의원) ○ 의 회 의 결 : '14. 9. 30. ○ 재의요구지시 : '14. 10. 20. (안전행정부장관(공기업과)) ○ 재 의 요 구 : '14. 10. 22. (전라북도지사) ○ 의 결 결 과 : '14. 11. 25. (재의결) ---------- ○ 대법원 제소 : '14. 12. 23 (전라북도지사) ○ 제 소 결 과 : 무효('17. 12. 13) 대법원 조례무효판결
조례내용	○ **(검증대상자)** 도지사가 임명·추천하는 기관장, 도지사·부지사가 출연기관 등의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장(제4조) ○ **(검증방법)** 인사검증 대상자가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 및 답변(제7조) ○ **(인사검증사항)** 자질·태도 및 능력, 병역사항, 범죄 및 납세사항, 도덕적 흠결유무, 업무 수행 시 공정성 가능 여부 등 검증 및 자료제출(제8, 9조) ○ **(인사검증보고서 송부 및 공개)** 위원회는 인사검증 후, 3일 이내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 보고 후 도지사에게 송부 및 회의공개(제11조, 12조)
재의요구 이 유	○ **(조례제정의 한계)**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권의 한계' 위반 -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인사검증 실시** 및 과거 형사처벌, 도덕적 흠결 유무를 **인사검증사항**으로 규정 및 **자료제출 요구를 부과** ○ **(단체장 인사권 침해)**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에서 정한 단체장의 임명·추천권에 대해 하위법규인 조례가 제약 불가 ○ **(타 법인격 권한침해)**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진 법인인 출연기관의 이사회 의결 또는 이사장이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는 민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위반

판결요지	○ 판결주문 : 피고가 2014.11.25.에 한 인사검증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 판결이유요약 :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 - **(상위법령위반)**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자치단체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지방자치법 위반)**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 됨 -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 위반)** 조례안 제8조제1항, 제3항(자료제출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 이상,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임

대법원 판결문

사 건 2014추64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 고 전라북도지사

피 고 전라북도의회

주 문 피고가 2014.11.25.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조례안의 요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9. 30.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2014. 10. 2.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의 요구 지시에 따라, 2014. 10. 22. '원고 임명 출연기관 장 등에 대한 피고의 인사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반하여 원고의 인사권한의 행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 25.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이 조례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인사검증의 대상자는 '도지사가 임명 또는 추천하는 출연기관 등의 장'과 '도지사나 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출연기관 등의 장'이다(제4조). 소관 위원회는 인사검증의 대상자가 임명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제7조제1항), 인사검증은 인사검증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며(제7조제3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제7조제4항).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검증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검증에 필요한 도정현안 등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외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제1항, 제3항).

4)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①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병역에 관한 사항, ③ 과거의 형사처벌·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④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및 도덕성에 관한 사항, ⑤ 공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제9조 제1호부터 제5호). 위원회는 인사검증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검증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인사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1조).

5) 인사검증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다(제12조).

2.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 제12조(이하 '이 사건 인사검증 조례규정'이라 한다)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1호는 인사검증 대상자로 '원고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출연기관 등의 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출연기관들의 경우 해당 정관에서 기관장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련 상위 법령에서 해당 기관장의 임명절차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법령에서도 피고에 의한 인사검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2호는 인사검증의 대상자로 '도지사나 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출연기관 등의 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출연기관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3항,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피고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민법상 비영리재단법

인이다(다만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2호에 따른 출연기관들의 경우 모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민법 제40조 및 제43조, 해당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들에 따라 기관장의 임명절차와 방법만을 그 기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에 의한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관하여는 상위 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장치로 서류제출요구권(제40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제41조 및 제41조의2),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출석 및 답변 요구권(제42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3)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위 법령에서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하여 피고에 의한 별도의 인사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취지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그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전속적 책임 아래 출연기관 등의 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나아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의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닌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사전(事前)에 임명권자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고하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그 임명을 저지할 수 있게 하는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은 비록 사후적 인사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원고가 임명하는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효과 측면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허용되지 않는 사전(事前)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연기관 등의 장의 임명 이후 권한행사에서 드러난 비리나 부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피고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행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으므로, 굳이 사후적 인사검증 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중 이 사건 인사검증 조례규정에 따른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피고의 인사검증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써 원고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조례안 제8조제1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 조례규정'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자료제출 조례규정은 비록 도지사가 인사검증 대상자의 인사검증과 관련한 자료 등을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인사검증 대상자인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

가 이 사건 조례안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법률의 위임 없이 인사검증 대상자로 하여금 소관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7조제3항),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도 소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증언·진술을 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제7조제4항).

3) 그렇다면 이 사건 자료제출 조례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조례안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9조제3호, 제4호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령 등'은 적법한 법령 등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안 제8조제1항, 제3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검증 대상자의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개인정보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이 사건 조례안 제9조제3호, 제4호(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제출 조례규정'이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2)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제4항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피고의 인사검증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검증을 위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제출 조례규정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인사검증 대상자의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개인정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안건심의나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에 한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4항의 허용범위를 벗어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중 이 사건 인사검증 조례규정, 자료제출 조례규정, 개인정보제출 조례규정은 위법하고, 위 각 규정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부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무효판결, 대법원2014추644. 2017.12.13]

소관부서 : 의회사무처 [시행일 : 2017-12-13]

(제정) 2014-12-05 조례 제 3915-12호

(일부개정) 2017-12-13 조례 제 3915-12호 [무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기관 등"이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제2조제2호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기관·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민간에 위탁하는 기관·법인은 제외한다.
2. "출연기관 등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의 장을 말한다.
3. "인사검증"이란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인사검증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등에서 정한 도지사의 인사권과 출연기관 등의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 절차 및 권한에 대한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통하여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한다.
3. 출연기관 등의 기관운용 효율성 증대와 책임성 확보에 주안을 두고 실시한다.

제4조(인사검증 대상자) 인사검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기관 등의 장으로 한다.

1. 도지사가 임명 또는 추천하는 경우
2. 도지사나 부지사가 출연기관 등의 이사장인 경우

제5조(인사검증의 소관)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 정수의 과반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이 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전의 인사검증) ①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지방의원 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 후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검증은 소관 위원회의 인사검증으로 본다.

제7조(인사검증 실시 등) ① 소관위원회는 인사검증 대상자가 임명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인사검증을 위한 위원회 회의는 인사검증 당일 6시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사검증은 인사검증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검증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검증에 필요한 도정현안

등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늦어도 검증회의 개최 7일전까지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인사검증 사항)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자질·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병역에 관한 사항
3. 과거 형사처벌·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및 도덕성에 관한 사항
5. 업무 수행상 본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검증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안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③ 위원별 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의 본 질의 종료 후에 실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보충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위원장은 질의시간 초과 안내 후에 다른 위원에게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질의할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검증 개회 72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48시간 전까지 질의요지서를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위원은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검증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인사검증 대상자는 인사검증 개회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인사검증보고서의 제출 및 송부) ① 위원회는 인사검증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검증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인사검증보고서에는 검증경과, 종합의견, 검증결과, 주요 증거서류, 그 밖의 사항 등을 기술 또는 첨부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회의공개) 인사검증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인사검증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검증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3. 위원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기관의 장

② 위원회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검증 참여를 배제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검증 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검증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5조(주의의무) ① 위원장은 인사검증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허가해서는 안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언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② 위원은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검증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개 요	○ 발 의 : ‘16. 6. 9. (의원) ○ 의 회 의 결 : ‘16. 7. 6. ○ 재의요구지시 : ‘16. 7. 25. (마포구청장) ○ 재 의 요 구 : ‘16. 7. 25. (마포구청장) ○ 의 결 결 과 : ‘18. 6. 30. (폐기)
조례내용	○ 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신설 ○ 대행업체의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신설
재의요구 이 유	○ 개정 조례안 제9조의5를 보면 심사위원회 9명 이내 위원 중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과반수가 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에서 합의제 집행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집행부의 의사를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준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의회와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수준을 넘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를 위반하는 것임.
재의결과	폐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대행사업(업무) : 법률, 조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사업(업무)을 말한다.
4. 대행업체(업자) : 마포구와 대행사업을 계약 체결하는 사업체(사업자)를 말한다.
5. 대행계약 : 마포구와 대행사업(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 : 마포구와 대행계약 기간 만료 후 기존 대행업체(업자)와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제4조로하며, 제4조를 제4조의2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차고"를 "차고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제3항 중 "대행기간"을 "구청장은 대행기간"으로, "2년"을 "3년"으로, "없는 경우에는"을 "없으며, 제9조의4항의 평가결과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 운반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대행기간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규칙 제46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예정구역
2. 분뇨수집·운반 예정량
3. 차고지 및 사무실 소재지
4. 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5. 재정적인 부담능력(자본금 등) 등

③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공개경쟁 및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업체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해약 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3(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분뇨처리 수집·운반 서비스와 후생복지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및

행정자치부 예규를 준용한다.

제9조의4(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행업체 선정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5(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대표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결과 선정 또는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명
2. 해당분야 전문가 : 2명(1명은 마포구의회에서 추천)
3.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 2명
4.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5.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6(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5년 이상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검사)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 접수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 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거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일지 등 보존 연한) 청소업자는 청소 대행업무에 필요한 일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청소 실적 및 수수료 영수증 : 3년
2. 민원 접수 대장, 차량 관리 일지 : 3년
3. 종사원 친절 및 안전 교육 일지 : 1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존 대행업체가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2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대행사업(업무) : 법률, 조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사업(업무)을 말한다. 4. 대행업체(업자) : 마포구와 대행사업을 계약 체결하는 사업체(사업자)를 말한다. 5. 대행계약 : 마포구와 대행사업(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 : 마포구와 대행계약 기간

	만료 후 기존 대행업체(업자)와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3조 ~ 제4조 (현행 제2조 및 제3조와 같음)
제4조 (생 략)	제4조의2 (현행 제4조와 같음)
제9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생 략) <신 설>	제9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차고지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대행기간-------- 3년 ------ 구청장은 대행기간 -------- 없으며, 제9조의4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 ④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 운반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대행기간 6개월 전까

	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규칙 제46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예정구역 2. 분뇨수집·운반 예정량 3. 차고지 및 사무실 소재지 4. 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5. 재정적인 부담능력(자본금 등) 등 ③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공개경쟁 및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

	업체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해약 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분뇨처리 수집·운반 서비스와 후생복지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및 행정자치부 예규를 준용한다.
<신 설>	제9조의4(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행업체 선정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의5(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결과 선정 또는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명 2. 해당분야 전문가 : 2명(1명은 마포구의회에서 추천) 3.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 2명 4.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5. 관계 공무원 (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9조의6(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2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5년 이상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보고·검사)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 접수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 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거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일지 등 보존 연한) 청소업자는 청소 대행업무에 필요한 일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청소 실적 및 수수료 영수증 : 3년 2. 민원 접수 대장, 차량 관리 일지 : 3년 3. 종사원 친절 및 안전 교육 일지 : 1년
제20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5. 3. 13. (의원) ○ 의 회 의 결 : ‘15. 10. 27. ○ 재 의 요 구 : ‘15. 11. 16. (중랑구청장) ○ 의 결 결 과 : ‘16. 2. 3. (부결)
조례내용	○ 제5조제2항에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재의요구 이 유	○ 조례 제5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103조 위반 -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해당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재위탁·재계약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회가 수탁기관 선정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청장의 집행권한에 대한 과도한 침해임. ○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위배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남 ○ 수탁기관에 과도한 부담 및 수탁업체 종사자의 고용 불안 조장 등 부실운영 초래 ○ 위탁절차 증가로 규제개혁 추진에 역행 ○ 행정기관의 책임행정 원칙에 반함.
재의결과	부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사무 또는 시설의 위탁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 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결정한다.

제8조(민간위탁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위탁기간
5.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6.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계약 위반시의 책임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 심사 시에는 제17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3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 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운영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5. 05. 04.(의원) ○ 의 회 의 결 : '15. 09. 01. ○ 재의요구지시 : '15. 09. 18.(연제구청장) ○ 재 의 요 구 : '15. 09. 24.(연제구청장) ○ 의 결 결 과 : '18. 06. 30. 제7대 의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조례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 구청장의 책무(제4조)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방법 등(제5조 ~ 제8조)
재의요구 이 유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원 발의조례로 제안하는 것은 권한침해 및 상위법령에 위배됨. ○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함.
재의결과	폐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제구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법률과의 관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구청장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3호 "보육교직원"중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한다.

제6조(운영세칙) 그 밖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개 요	○ 발 의 : '15. 05. 04. (의원) ○ 의 회 의 결 : '15. 07. 14. ○ 재 의 요 구 : '15. 08. 03. (인천광역시장) ○ 의 결 결 과 : '15. 09. 14. (재의결) ※ '15.09.30 공포
조례내용	○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요금 중 교통요금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2항제5호). ○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요금을 조정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 11조제1항). ○ 행정조직 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칭 및 자구를 수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4조).
재의요구 이 유	○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침해 및 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유관기관, 단체, 교수, 회계전문가, 언론인, 市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공공요금의 심의,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등의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 또한, 위촉직 위원 중에는 市의회를 대변하는 의원 2명이 소속되어 심의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 침해와 의무적 사전 의견수렴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또한,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독립적 협의·조정기

	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붙임 판례 취지에 비추어 자문기관의 성격과 상충되며 적절하지 않음. ※ 사례(대법원 1994.5.10.선고 93추 144 판결) ○ 시의회 심의절차 중복 - 현행 본 조례의 제3조제2항 중 1호 상수도 요금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2호 하수도 요금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8호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요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조정된 요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市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요금을 조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조례안의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요금조정 관련 市의회를 거치는 절차를 중복하여 시행하게 됨. ○ 공공요금간 형평성 결여 - 개정 조례안에서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서 도시가스 요금만 제외하고 있음.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시의회 의견수렴으로 인한 적시 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음. - 위와 관련하여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재의결과	재의결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물가관련"을 각각 "물가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통요금(시내버스ㆍ택시 및 도시철도 요금)

제3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사망·질병·기타"를 "사망·질병·그 밖"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수도정책관"을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중 “사항이외”를 “사항 이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개정)

개 요	○ 발 의 : '17. 01. 06.(의원) ○ 의 회 의 결 : '17. 01. 25. ○ 재의요구지시 : '17. 01. 25.(대전광역시장) ○ 재 의 요 구 : '17. 01. 31.(대전광역시장) ○ 의 결 결 과 : 임기 만료로 조례개정안 자동 폐기
조례내용	○ 제5조의2(의회 의견 수렴 등) 신설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1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 협약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에 설명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그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수렴일부터 30일 이내 대전광역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12항에 따른 협약 체결 후 협약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의요구 이 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사무를 지방의회에서 구속 및 침해하는 것임. - 법률에 정하여지지 않은 것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견제수단을 조례로써 신설하는 것이고 사실상 협약 체결 여부를 의회에 구속시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 침해
재의결과	폐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의회 의견 수렴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1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 협약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에 설명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그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수렴일부터 30일 이내 대전광역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21조의2제12항에 따른 협약 체결 후 협약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

개 요	○ 발 의 : '17. 10. 26.(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원) ○ 의 회 의 결 : '17. 11. 17. ○ 재의요구지시 : '17. 11. 30.(울산광역시동구청장) ○ 재 의 요 구 : '17. 12. 11.(울산광역시동구청장) ○ 의 결 결 과 : '17. 12. 13.(재의결) ○ 공 포 : '17. 12. 21.(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장) ---------- ○ 대법원 제소 : '17. 12. 28. (울산광역시동구청장) ○ 제 소 결 과 : '18. 01. 29. 소취하(울산광역시동구청장) ※ 2018. 01. 31. 동구의회 공포된 조례의 개정안 의결 (상위법 위반 조항 삭제 또는 변경) ○ 2018. 02. 22. 조례 공포(울산광역시동구청장)
조례내용	○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사무직원 추천대상 및 전출되는 사무직원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사무직원 추천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인사내정 사항 통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행규칙(안 제7조)
재의요구 이 유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조례안에서 인사내정사항 사전 통보, 의장 추천 직원 인사 미반영 사유 서면 제출 등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위반에 해당함.
재의결과	재의결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대상은「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장이 임용권을 가진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 사무직원을 제외한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과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추천요청) 구청장은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인사대상을 통보하고,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승진에 영향 등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5조(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2항의 기준 등과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복수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근무할 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직급에 적합한 구 소속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
3. 구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인사기준에 적합한 공무원

제6조(인사내정사항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내정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들어 다시 추천하여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회사무과에 근무했다는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

제6조(서면통보 등) ① 구청장은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2.> <단서 신설 2018.2.22.>

② 구청장은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단서 삭제 2018.2.22.>

③ 삭제 <2018.2.22.>

[제목개정 2018.2.2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4. 10. 17.(의원) ○ 의 회 의 결 : '15. 2. 11. ○ 재 의 요 구 : '15. 3. 2.(경기도지사) ○ 의 결 결 과 : '15. 3. 19.(부결)
조례내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에서 "1,000분의 2 이상 1000분의 3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적립하도록 함.
재의요구 이 유	○ 필요 이상의 정비기금의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도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위반되고,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여 상위법에 위반됨.
재의결과	부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출연하여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한다.	**제4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상을 출연하여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4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상을 출연하여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4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이상 1,000분의 3이내를 출연하여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7. 3. 30. (의원) ○ 의 회 의 결 : ‘17. 6. 23. ○ 재의요구지시 : ‘17. 7. 12. (강진군수) ○ 재 의 요 구 : ‘17. 7. 14. (강진군수) ○ 의 결 결 과 : ‘18. 3. 22. (재의결)
조례내용	○ **제2조(추천대상 등)**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중 타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의요구 이 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강진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침해하므로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 군수에게 전출부서를 특정하여 요구하는 등 구체적 의견 제시 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의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에 포함될 우려가 있음.
재의결과	재의결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등) ①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과장이 임용권을 가진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을 제외한 강진군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중 타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추천요청) ① 군수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근무경력 등 단순한 자료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승진 등 신상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으로 근무 할 직원을 추천 할 때에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직위·직렬·직급에 일치하는 군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선정하여 통보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직급, 직렬에 대한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추천대상자를 유사 직급, 직렬로 교체요구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 요	○ 발 의 : '16. 10. 12.(진주시장) ○ 의 회 의 결 : '16. 10. 24. ○ 재 의 요 구 : '16. 11. 11.(진주시장) ○ 의 결 결 과 : '17. 3. 15.(부결)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재의요구 이 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를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은 하위 법규인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장 및 제6장 등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권한의 분리와 배분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임.
재의결과	부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생 략)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 7.(생 략)	제2조(정의)----------. 1. ~ 3.(현행과 같음) 4.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5. ~ 7.(현행과 같음)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단서 신설> 1. ~ 4. (생 략)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조사내용에 인적현황이 포함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하여야 --. ③ ----------해당하는 사람----------

임명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해당하는 사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 ------ 풍부한 사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4. --------- 유통업무담당 과장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과 당연직인 시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위촉해제----------.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진주시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①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2. 법 제2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③ ----------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등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의 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등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 4. (생 략)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변경·취소할 ----------. 1. --변경·취소대상이 ---------- 2. ~ 4.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

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에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관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진주시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제13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의견을 청취한 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신 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유통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진주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관내 소비자 단체 대표 4. 관내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에 거주하는 소비자
<신 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과 당연직인 시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

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 대규모점포 등,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및 관련 업체의 종사자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신 설>	제23(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6장 보 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1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 요	○ 발 의 : '15. 6. 25.(의원) ○ 의 회 의 결 : '15. 7. 23. ○ 재 의 요 구 : '15. 7. 24.(통영시장) ○ 의 결 결 과 : '15. 9. 11.(부결)
조례내용	○ 현행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학교급식 사업의 안정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치사무인 주민 복지 증진과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를 계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계획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규정 - 통영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 - 학교급식비 지원금 정산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재의요구 이 유	**가. 「학교급식법」의 범위를 벗어나며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 ○ 개정조례안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함. **나.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강행규정 개정으로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 위배**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제3항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원칙으로 한다." 제4항 "도지사, 시장은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원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등의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의 권한과 재량권을 침해함.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 등 「학교급식법」 제5조 위배**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제3항 "시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재량권을 침해함.

재의요구 이 유	**라. 식품비 부담주체 불분명하며 「학교급식법」, 「지방자치법」 제101조 위배** ❍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식품비부담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집행권한은 시장이므로 개정안 제4조의 "통영시"로 개정함은 부당하며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또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일부개정안 6조의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재정상황"의 애매모호한 표기와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문구로서 적절치 않음. **마.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관련 조항개정으로 문제해결 필요** ❍ 학교무상급식 문제를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와 같이 입법권자가 관련조항 개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할 사항이며 市의 조례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급식의무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의 효과와 목적이나 결과를 달성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바. 따라서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식품비지원), 제6조(지원계획 등)제1항, 2항, 3항 및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제1항이 위법함** **사. 위와 같이 2015년 7월 25일 본회의 의결되어 7월25자로 이송된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 내용의 일부가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므로 통영시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함.**
재의결과	부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식품비 지원) 시장은 제1조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식품비 지원) 통영시는 지원대상자에게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영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매년 9월말까지 시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과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식품비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방안 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결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및 관련 업무담당과장 2. 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3. 통영시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농어민단체 추천인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시민단체 추천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품비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삭 제>
제6조의3 (생 략)	제9조 (현행 제6조의3와 같음)
<신 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및 급식업무 담당부서장 2.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부서장 3. 통영시의회 의원 2명

	4. 초·중·고교 급식위원회 학부모 각 1명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농민·어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영양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식관련 전문가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급식지원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

	을 변경·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2조(공개)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금 정산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르고, 급식지원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예에 따른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5. 02. 05.(김해시장) ○ 의 회 의 결 : '15. 02. 06. ○ 재 의 요 구 : '15. 02. 25.(김해시장) ○ 의 결 결 과 : '15. 03. 26. (부결)
조례내용	○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2조제3항의 시민정책협의회 15명 이내의 위원 중 2명의 김해시의회 추천 위원은 반드시 위촉한다라고 단서를 삽입함.
재의요구 이 유	○ 시민정책협의회는 행정의 자문기구로 그 구성 및 임명은 시장의 고유 권한임. ○ 시의회 추천자 2명을 반드시 위촉하도록한 수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고유권한 침해로 법령에 위배됨.
재의결과	부결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고충과 주요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시민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민, 시민단체 임원, 정책분야 전문가, 김해시의회 추천자 2명 등 각계각층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자문에 응한다.

1. 주요 시정시책 및 현안, 공약 이행에 관한 사항
2.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의견 분석 및 정책방향 제안
3. 시민의 창의적 정책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 및 협의

4.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보호 등 시민고충 해결을 위한 제언
5.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운동 등 정책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단 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의 구성인원 및 활동 시기 등은 협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제출) ① 위원은 협의회에 제3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출받은 협의회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에게 안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 요청을 받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은 검토 결과를 15일 이내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의 정책제안에 대해 업무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 전문가의 조언 등을 종합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의결 사항의 반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시행시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정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06.05 조례 제1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발전추진위원회설치조례」 및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시민정책협의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시민, 시민단체 임원, 정책분야 전문가, 김해시의회 추천자 2명 등 각계각층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 ⑤ (생략)	제2조(시민정책협의회) ① ~ ② (현형과 같음) ③ 위원은 시민, 시민단체 임원, 정책분야 전문가, 김해시의회 추천자 2명 등 각계각층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단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은 반드시 위촉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8. 05. 18.(의원) ○ 의 회 의 결 : '18. 05. 27. ○ 재 의 요 구 : '15. 06. 10.(산청군수) ○ 의 결 결 과 : '15. 06. 24.(부결)
조례내용	○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비를 지원함.
재의요구 이 유	○ 의원발의된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내" 및 "일부"를 삭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함과 동시에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 부여한 자치단체장의 자율권(재량)을 침해함. ○ 또한 조례 제6조제1항은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닌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8조의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조례 제6조제1항을 삭제할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의 절차 규정 부재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제3조의 개정규정과 함께 해석할 경우 위원회에서 식재료비 지원여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음.
재의결과	부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식재료비 지원)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식재료비 지원)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초·중학교는 산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고등학교 및 그 밖의 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삭제> ② 지원금은 초·중학교는 산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고등학교 및 그 밖의 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5. 06. 29.(의원) ○ 의 회 의 결 : ‘15. 09. 15. ○ 재 의 요 구 : ‘15. 10. 05.(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의 결 결 과 : ‘15. 10. 20.(재의결) ---------- ○ 대법원 제소 : ‘15. 11. 05.(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소 취하 : ’17. 8. 2.
조례내용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재의요구 이 유	○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예산 지원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례에 보훈예우수당 등의 예산을 강제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등에서도 그 근거가 없으며, ○ 해당 예산을 어느 시점에 반영할지, 어느 정도 액수를 반영할지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서, 이는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에 위배
재의결과	재의결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과 호국·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예우수당"이란 지급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정자력)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단, 손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중 1명(단, 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가.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나. 제4조제1항제5호(순직군경)
3.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1명
   가.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

나.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

다. 제4조제1항제7호(무공수훈자)

라. 제4조제1항제9호(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마. 제4조제1항제11호 내지 13호(4·19 혁명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바. 제73조 규정에 의한 6·18자유상이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가. 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 제2조제4호(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1명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된 사람, 보상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 이 경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예우수당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에 중복되는 대상자인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매월 보훈예우수당 3만원 지급

2.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② 지급일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달의 15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

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훈예우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보훈예우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④ 타 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5조(지급 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법 제13조 및 국가유공자법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제7조제2호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수령을 거부하여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보훈예우수당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지급 방법) 보훈예우수당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예우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도지사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상급기관의 승인 등 선행절차 미이행, 현저한 공익 저해, 기타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사전에 소관부처의 승인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사전에 상급기관의 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거나(지방자치법 제 107조, 제172조)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6조제3항)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개정)

<table>
<tr><td>개 요</td><td>○ 발 의 : ‘16. 4. 18.(의원)
○ 의 회 의 결 : ‘17. 4. 8.
○ 재 의 요 구 : ‘17. 5. 16.(서울특별시장)
○ 의 결 결 과 : ‘17. 8. 25.(재의결)</td></tr>
<tr><td>조례내용</td><td>○ 도로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횡단보도 쉘터’를 추가함
<table>
<tr><th>종 전 안</th><th>개 정 안</th></tr>
<tr><td>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생 략)
<u>〈신 설〉</u></td><td>제2조(도로점용허가) ----------

----------.
1. ~ 4. (현행과 같음)
<u>5. 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td></tr>
</table></td></tr>
<tr><td>재의요구
이 유</td><td>○ 걷기편한 서울을 위한 보도상 시설물들을 없애고 신규설치를 엄격히 규제하는 「인도 10계명」을 추진하는 서울시 보도정책에 정면 배치됨
○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방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교통약자 보행 장애, 쾌적한 보행환경 저해, 도시미관 저해로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등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td></tr>
<tr><td>재의결과</td><td>재의결</td></tr>
</table>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제2조(도로점용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5. 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개정)

<table>
<tr><td>개 요</td><td>○ 발 의 : ‘16. 2. 5.(의원)
○ 의 회 의 결 : ‘16. 5. 3.
※ 개정안 승인 요청 : ’16. 5. 4.(서울특별시장)
○ 재의요구지시 : ‘16. 5. 16.(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재 의 요 구 : ‘16. 5. 23.(서울시장)
○ 의 결 결 과 : ‘16. 9. 9.(재의결)</td></tr>
<tr><td>조례내용</td><td>○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위탁수수료의 1천분의 150에서 1천분의 200으로 상향조정
<table>
<tr><th>종 전 안</th><th>개 정 안</th></tr>
<tr><td>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td><td>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
----------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td></tr>
</table></td></tr>
<tr><td>재의요구 이 유</td><td>○ 농림축산식품부의 불승인 및 재의요구 지시
- 판매장려금 인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 도매시장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잉여자금의 형성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므로 불승인 조치</td></tr>
<tr><td>재의결과</td><td>재의결</td></tr>
</table>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의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를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 ----------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 ② ~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개 요	○ 발 의 : '15. 07. 02.(의원) ○ 의 회 의 결 : '15. 07. 17. ○ 재의요구지시 : '15. 07. 29.(계양구청장) ○ 재 의 요 구 : '15. 07. 31.(계양구청장) ○ 의 결 결 과 : '15. 09. 10.(부결)
조례내용	○ 보조사업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안 제6조) ○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 목적 외 사용 시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9조) ○ 학교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국장급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구의원과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의 인원을 조례상에 명확화 하는 사항과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안 제12조) ○ 학교발전위원회의 위원중 이해관계인의 심의 제한 사항을 안 제13조의 단서조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17조를 삭제(안 제13조, 안제17조)
재의요구 이 유	○ 안 제6조(보조사업의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구는 학교의 학력신장 사업에 중점지원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교육향상사업이 아닌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인 시설개선비 위주로 신청이 집중 됨.

	○ 안 제12조(구성) 제1항 위원수를 21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발전 방향 토론 및 건의사항 수렴 시 다양한 분야 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음. ○ 안 제12조(구성) 제1항제5호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시 조례17조(보조사업의심의)에 따라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학부모대표 등 이해관계인은 참여하지 않으므로 학부모대표를 삭제한 내용은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해친 조항으로 재의를 요구함.
재의결과	부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을 “각급학교 교육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6조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타당성 여부”를 “타당성”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등)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거나 다른 학교에 비하여 보조금 신청금액이 적은 학교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1명"을 "15명"으로, "위원은"을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장급"을 "5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제1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원회의 위원 중 현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은 제5호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아니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를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 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각급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연도 구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 연도 구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학력신장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6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생 략) 1. ~ 2. (생 략)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 5.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 5. (생 략)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2. (생 략)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 5.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생 략) 1. (생 략) 2. 보조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3. ~ 4. (생 략)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보조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등)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거나 다른 학교에 비하여 보조금 신청금액이 적은 학교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삭 제〉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 국장급 공무원 2. 구 의회 의원 3.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4.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학	제12조(구성) ① ----------15명----------,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 1. 구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4.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 〈삭 제〉

부모 대표 6. (생 략)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단서신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단, 위원회의 위원 중 현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은 제5호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아니 한다.
제1호~제6호 (생 략)	제1호~제6호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사업의 심의)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의 위원 중 현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 학부모 대표 등 이해관계인을 제외한다.	〈삭 제〉
제1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개 요	○ 발 의 : '15. 12. 07. (의원) ○ 의 회 의 결 : '15. 12. 07. ○ 재의요구지시 : '15. 12. 22. (남동구청장) ○ 재 의 요 구 : '15. 12. 22. (남동구청장) ○ 의 결 결 과 : '16. 01. 15. (부결)
조례내용	○ 효율적인 생활체육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생활체육활동 증진과 민간주도의 생활체육활동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
재의요구 이 유	○ 특정 체육단체(생활체육회)를 통해 경비를 지원할 경우 종목별 연합회 등의 자율성과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통합체육회가 설립(2016년 중)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의 조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재의결과	부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생활체육 회원단체인 종목별 연합회 등을 비롯해 관계되는 단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또는 개정안)	개 정 안(또는 수정안)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신 설>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구청장은 생활체육 회원단체인 종목별 연합회 등을 비롯해 관계되는 단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개 요	○ 발 의 : ‘16. 07. 06.(의원) ○ 의 회 의 결 : ‘16. 07. 06. ○ 재의요구지시 : ‘16. 07. 19.(남동구청장) ○ 재 의 요 구 : ‘16. 07. 19.(남동구청장) ○ 의 결 결 과 : ‘16. 09. 07.(부결)
조례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洞 주민센터의 업무가 대폭 확대·강화되었기에 洞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고자 함.
재의요구 이 유	○ 일선 하부행정기관의 장(동장)은 정책결정사무가 아닌 집행사무와 대민행정사무를 하는 하부행정기관으로서, ○ 필요시에는 관련 업무에 대한 서면제출과 동 현장방문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조례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재의결과	부결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기관의"를 "소속행정기관의"로 수정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또는 개정안)	개 정 안(또는 수정안)
제36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① (생 략)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과장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의 장 ② (생 략)	제36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 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② (현행과 같음)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8. 1. (구의원) ○ 의 회 의 결 : '18. 1. 23. ○ 재의요구지시 : '18. 2. 1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재 의 요 구 : '18. 2. 1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의 결 결 과 : '18. 3. 13. (부결)
조례내용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 대상 사업(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등) ○해병전우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재의요구 이 유	○ 타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차원 ○ 현행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련 사업 수행 시 공모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
재의결과	부결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해병대전우회 광주광역시연합회 동구지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해병대전우회 광주광역시연합회 동구지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제4조(포상) 구청장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회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6. 10. 07.(구청장) ❍ 의 회 의 결 : '16. 10. 20. ❍ 재의요구지시 : '16. 10. 25.(광주광역시 남구청장) ❍ 재 의 요 구 : '16. 11. 01.(광주광역시 남구청장) ❍ 의 결 결 과 : '16. 11. 25.(부결)
조례내용	❍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완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시범동으로 백운2동이 선정 ❍ 백운2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재의요구 이 유	❍ 단체장의 발의로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요구했으나, 일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의결하면서 조문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이 의미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재의 요구함. - 원 안 :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수정안 :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재의결과	부결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를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같은 조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제2항에서 의결된 경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구청장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자치회장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0조(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생략) <신설> 3. 법 제29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① ----------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제20조제2항에서 의결된 경우 4. <원안 제3호와 같음> 5. <원안 제4호와 같음>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

개 요	○ 발 의 : '16. 04. 11.(의원) ○ 의 회 의 결 : '16. 04. 29. ○ 재의요구지시 : '16. 05. 11.(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재 의 요 구 : '16. 05. 18.(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의 결 결 과 : '18. 06. 30.(폐기)
조례내용	○ **(기 존)** 임기는 3년, 1회에 한해 연임토록 함 ○ **(개정안)** 임기는 3년,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재의요구 이 유	○ 조례안 예고절차 미 이행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 누락 ○ 주민 반대여론 확산 및 지역갈등 증폭으로 공익 저해
재의결과	폐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② (생 략) ③통장·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이상 공모를 하여도 통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생 략)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임----------.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일부개정)

개 요	○ 발 의 : '17. 09. 11.(의원) ○ 의 회 의 결 : '17. 09. 29. ○ 재의요구지시 : '17. 10. 11.(대전광역시장) ○ 재 의 요 구 : '17. 10. 13.(대전광역시장) ○ 의 결 결 과 : 임기 만료로 조례개정안 자동 폐기
조례내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의요구 이 유	○ 시장의 재량권 축소·제한에 따른 집행권 침해 - 폐기물의 반입 제한에 관하여"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하여 재량권 축소 및 집행권 침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침해 - 개정조례는 자치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용역 시 경쟁입찰을 침해하고 지역제한을 조장하여 공정성 결여 ○ 공익을 현저히 해함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음폐수 처리시설은 자치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처리하고자 건설한 시설로, 관할구역 내 지역업체 일지라도 관외의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우선 처리하는 것은 설치목적에 반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함.
재의결과	폐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폐기물의 반입제한) ①제4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반입제한) ①제4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8. 5. 14. (의원) ○ 의 회 의 결 : '18. 5. 23. ○ 재의요구지시 : '18. 5. 24. (자치단체장) ○ 재 의 요 구 : '18. 6. 12. (자치단체장) ○ 의 결 결 과 : '18. 6. 21. (재의결)
조례내용	○ 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매년 실시 및 시민계획단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시민계획단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안 제58조) :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함.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61조, 안 제71조).
재의요구 이 유	○ 5월23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나 부칙(경과규정)이 없어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재산권 행사 등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의요구함.
재의결과	재의결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안】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이라 한다)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계획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당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5 따라 구성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회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 중 "구역 안에서는"을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제3호 및 제4호 중 "자문"을 "심의 및 자문"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등) ① ~ ③(생 략) <신 설>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계획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당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 ② (생 략) <신 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회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신 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기능) (생 략) 1 ~ 2 (생 략)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심의 및 자문 4. ----------

자문 제71조 (설치 및 기능) ①(생략) ②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심의 및 자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개 요	○ 발 의 : '18. 05. 04. (의원) ○ 의 회 의 결 : '18. 05. 04. ○ 재의요구지시 : '18. 05. 23. (여주시장) ○ 재 의 요 구 : '18. 05. 23. (여주시장) ○ 의 결 결 과 : '18. 06. 30. (자동폐기)
조례내용	○ 기준지반고에 관한 기준 변경(안 별표 2) ○ 지목이 임야인 경우 경사도 산정 방식 및 기준지반고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규정 신설(안 별표 2)
재의요구 이 유	○ 조례개정 타당성 결여 ○ 개정조례 시행시 업무혼선 초래
재의결과	폐기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준지반고[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함]를 기준으로 기준기반고 초과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존 대지, 묘지 및 계획관리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2의 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나목과 다목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 경사도 산정 방식 및 기준지반고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
<td>[별표 2]

개발행위 허가기준

1. (생략)
가. ~ 나. (생략)
다. 아래의 읍·면·동별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존 대지, 묘지 및 계획관리지역은 제외한다), 「도로법」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able>
<tr><th rowspan="2">읍·면.
동별</th><th rowspan="2">소 재
지
평균
표고</th><th colspan="3">해 발 표 고</th><th rowspan="2">기준
지반고
(기준
해발표고)</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최 저</th><th>최 고</th><th>평 균</th></tr>
<tr><td>가남읍</td><td>72</td><td>47.5</td><td>280.5</td><td>95</td><td>100</td><td rowspan="10">단위:미터</td></tr>
<tr><td>점동면</td><td>72</td><td>40.5</td><td>609.4</td><td>122</td><td>120</td></tr>
<tr><td>능서면</td><td>54</td><td>32.1</td><td>255.0</td><td>62</td><td>60</td></tr>
<tr><td>흥천면</td><td>40</td><td>29.3</td><td>403.5</td><td>66</td><td>70</td></tr>
<tr><td>금사면</td><td>52</td><td>25.8</td><td>630.0</td><td>157</td><td>160</td></tr>
<tr><td>산북면</td><td>150</td><td>54.4</td><td>709.5</td><td>253</td><td>250</td></tr>
<tr><td>대신면</td><td>57</td><td>27.4</td><td>462.9</td><td>75</td><td>80</td></tr>
<tr><td>북내면</td><td>54</td><td>35.3</td><td>529.8</td><td>123</td><td>120</td></tr>
<tr><td>강천면</td><td>73</td><td>35.4</td><td>541.1</td><td>149</td><td>150</td></tr>
<tr><td>여흥동
중앙동
오학동</td><td>54</td><td>35.3</td><td>280.0</td><td>85</td><td>90</td></tr>
</table>
</td>
<td>[별표 2]

개발행위 허가기준

2.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기준지반고[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함]를 기준으로 기준기반고 초과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존 대지, 묘지 및 계획관리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d>
</tr>
</table>

라.(생략) <신 설>	라.(현행과 같음) 마. 나목과 다목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 및 기준지반고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8. 1. 2. (의원) ○ 의 회 의 결 : '18. 4. 27. ○ 재의요구지시 : '18. 4. 27. (부천시장) ○ 재 의 요 구 : '18. 5. 16. (부천시장) ○ 의 결 결 과 : '18. 6. 30. (의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조례내용	○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신설함. ○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함.
재의요구 이 유	○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유사한 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도로유지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도로점용료 감면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위임사항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사항임.
재의결과	폐기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일부개정 조례안】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제6조제1항 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 ① (생 략) ② 1. ~ 4. (생략) <신 설>	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1. ~ 8. (생략) <신 설> ② ~ ④ (생략)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1. ~ 8. (현행과 같음) 9.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7. 12. 08 (의원) ○ 의 회 의 결 : ‘17. 12. 22 ○ 재의요구지시 : ‘17. 12. 28 (용인시장) ○ 재 의 요 구 : ‘18. 01. 09 (용인시장) ○ 의 결 결 과 : ‘18. 02. 02 (부결)
조례내용	○ 급수가능 지역에 편입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전액 감면하도록 함.
재의요구 이 유	○ 감면사유의 부적절성 - 개정안의 감면사유(급수가능 지역에 편입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가 공익적 목적 또는 산출된 수돗물 사용량과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감면 기준의 부적절성 - 개정안의 감면기준 중 “20년 이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해마다 감면대상 증가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로 「수도법」에서 정한 수도사업자의 책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재의결과	부결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급수가능 지역에 편입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감면) ① ~ ③ (생 략) <신 설>	제4조의2(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급수가능 지역에 편입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5. 08.(의원) ○ 의 회 의 결 : '15. 09. 10. ○ 재 의 요 구 : '15. 09. 24.(원주시장) ○ 의 결 결 과 : 의회 계류중 임기만료로 폐기
조례내용	○ 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공모사업 또는 민간제안에 의한 사업을 포함)을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2조). ○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제안의 수용이 통보된 민자유치사업 중 이 조례 개정일까지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민자투자사업의 경우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안 부칙 제2조).
재의요구 이 유	○ 조례안 제2조제3호는 원주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개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사항임.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됨. ○ 본 조례안 부칙 제2조는 이미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제안의 수용이 통보된 경우도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은 본 조례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재의결과	폐기

【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공모사업 또는 민간제안에 의한 사업을 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제안의 수용이 통보된 민자유치사업 중 이 조례 개정일까지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민자투자사업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결사항)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제2조(의결사항)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공모사업 또는 민간제안에 의한 사업을 포함)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 요	○ 발 의 : '14. 7. 17. (충청남도지사) ○ 의 회 의 결 : '14. 7. 24. ○ 재의요구지시 : '14. 8.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재 의 요 구 : '14. 8. 12. (충청남도지사) ○ 의 결 결 과 : '14. 12. 15. (재의결)
조례내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도 시행으로 수수료 대상추가 및 용어 정비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가금류 도축장 책임수의사(업체 고용수의사) 제도 폐지에 따른 - 수수료 대상 추가 : 가금류(닭, 오리 등) → 100수 1,000원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업계 장기불황으로 2019.12.31.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 적용(100수 → 500원) - 지자체 소속 검사관(공무원)이 모든 가축 및 축산물 검사
재의요구 이 유	○ 충청남도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닭·오리·기타 가금류의 도축검사 수수료는 100마리당 1,000원(단, '19.12.31.까지는 50% 감액)으로서 입법예고 한 닭의 1마리당 예상수수료액 4원에 비해 2.5배에 해당하는 것임. ○ 과도한 도축검사수수료는 생산비의 상승, 소비물가 상승 및 경우에 따라 생산자 이익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별 높은 편차로 인한 불균형 등 공익을 해칠 우려 또한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재의결과	재의결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축위생연구소 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등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된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수수료중"을 "수수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의 참전 군인등이 수수료와"를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군인 등이"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수수료중"을 "수수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수료중"을 "수수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서식에 의하고,"를 "서식,"으로 하며, "별지제3호"를 "별지 제3호"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뢰시"를 "의뢰 시"로 하고, "서식에 의한"을 "서식의"로

하며, “교부하여야 하고 이는”을 “교부하고 이를”로 하고, “있으며”를 “있으며,”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시험등”을 “검사·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를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5 중 3. 닭·오리·기타 가금류는 2019. 12. 31.까지 50% 감액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징수구분) ① (생략) ② (생략) 1.~4.(생략)	제2조(징수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가축위생연구소 검사시험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서 규정한 수수료 기준액을 적용하고,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5. 가축위생연구소 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된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관련법률 개정내용 반영
제4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공정위 권고사항 수용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생략)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알법적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	2. ---------- 따	알법적용

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라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의 수수료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 수수료 중----------	알법적용
가.~바.(생략)	가.~바.(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의 참전 군인등이 수수료와 본인과 관련되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5호 내지 제6호 신설 2002.12.3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군인 등이 ----------	알법적용
6. 가축위생연구소 검사시험의 수수료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07.1.10〉	6. ----------수수료 중----------	알법적용
가.~다.(생략)	가.~다.(현행과 같음)	
②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 수수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먹는물의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개정 05.12.30〉	② ---------- 수수료 중----------	
1.~2.(생략)	1.~2.(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 ----------따라 ----------	
제6조(보건환경연구원 시험의뢰서식	제6조(보건환경연구원 시험의뢰서식	

등)	등)	
①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음용, 생활, 농업, 어업, 공업용수), 상수도, 간이·전용상수도, 소규모 급수, 먹는 샘물, 욕장수, 수처리제, 농어촌용수, 하천·호소수, 폐기물 등의 검사·시험·분석을 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식품, 식품첨가물, 위생용품, 식품용기,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시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5〉	① ---------- 따른다. ---------- 서식, ---------- 별지 제3호 ------- 따른다. ----------	알법적용
② 시험 의뢰시 민원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검사·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별제 제5호 서식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외국어 번역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단, 외국어 번역문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서식으로도 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 의뢰 시 ---------- 서식의 ---------- 교부하고 이를 ---------- 있으며, ---------- 따라 ---------- 따른다. ----------	알법적용
③ 검사·시험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검체 소요	③ 검사·시험 등 ----------	알법적용

량과 처리기간은 별표 7과 같으며 시험의뢰 사항을 기일내에 실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개정 2002.12.30.〉	----------	
④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구하거나 검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와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 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되 여비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하고 실비부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해당----------「충청남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	알법적용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포괄위임 금지규정 적용

[별표 2]

제증명 수수료(제2조제2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직업에 관한 증명			
가. 재직, 퇴직, 경력	1건	0	
2.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원천징수 공제증명	1건	300	
나. 준공검사, 선금정산, 용역납품, 물품제조 및 구매증명	1건	500	
다. 입찰·계약, 하자보증금 등 보관확인 증명	1건	500	
3. 기타 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건	300	
나. 화재증명	1건	800	
다. 소방시설 완비증명	1건	3,000	
(인허가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	
나. 기타 각종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	1건	500	
2. 농수산관계			
가. 근해어업 허가신청	1건	6,500	
나. 시험어업 승인신청	1건	3,200	
다. 어획물 운반업 등록신청	1건	5,400	
라.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4,600	
마.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600	
바. 어업허가증 재교부	1건	1,000	
사. 어획물 운반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1,900	
아.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3. 복지환경관계			
가. 삭제〈2010. 06. 30〉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40,000	
라. 현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허가 신청	1건	500	
마.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1건	5,000	
바. 삭제〈2007. 01. 10〉			
사. 삭제〈2007. 01. 10〉			
아. 소음·진동배출 시설설치 신고허가	1건	10,000	
자.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	
4. 문화·공보·체육관계			
가. 음악·음악영상물, 비디오, 게임업			
(1) 제작업·배급신고업	1건	20,000	
(2) 제작업·배급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나. 골프장 및 스키장업			
(1) 등록신청	1건	75,000	
(2)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0	
다. 기타 등록 체육시설업			
(1) 등록신청	1건	45,000	
(2) 변경등록 신청	1건	15,000	
라. 체육시설업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	1건	5,000	
5. 경제통상관계			
가. 대규모점포(대형점, 백화점 등) 개설등록	1건	30,000	
나. 대규모점포 매장 증설등록	1건	30,000	
다. 석유판매업(일반 및 용제대리점) 등록	1건	30,000	
라.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1건	20,000	
마.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1건	50,000	
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사.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1건	20,000	
아. 전기공사업			
(1) 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	
(2) 양도, 양수, 합병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신청	1건	30,000	
(3) 상속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신청	1건	5,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1건	30,000	
(5)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재난 부족 등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1건	5,000	
자. 전력기술관리업			
(1) 종합설계업 등록신청	1건	50,000	
(2) 종합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3) 전문(1종)설계업 등록신청	1건	30,000	
(4) 전문(1종)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5) 전문(2종)설계업 등록신청	1건	20,000	
(6) 전문(2종)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15,000	
(7) 종합감리업 등록신청	1건	50,000	
(8) 종합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9) 전문감리업 등록신청	1건	30,000	
(10)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11)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	
(12) 설계·감리업의 대표자, 소재지, 상호, 기술인력 변경등록 등	1건	5,000	
차.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	
카.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 등록	1건	30,000	
타.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1건	50,000	
파.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하.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1건	20,000	
6. 개인정보열람·정정 청구			
가. 열람(단위화일당)	1건	300	
나. 사본(단위화일당)	1건	300	
다. 정정(단위화일당)	1건	300	
7. 기타 제증명,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것" (법령상 의무사항 제외)	1건	300	

[별 표 5]

가축위생연구소 검사 · 시험 등의 수수료(제2조제2항제5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도축검사			
1. 소, 말(당나귀), 사슴, 타조	1 두	2,000	
2. 돼지, 양(산양), 기타 포유류	1 두	700	
3. 닭, 오리, 기타 가금류	100수	1,000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개 요	○ 발 의 : '18. 1. 16. (의원) ○ 의 회 의 결 : '18. 2. 2. ○ 재의요구지시 : '18. 2. 26. (충청남도지사) ○ 재 의 요 구 : '18. 2. 26. (충청남도지사) ○ 의 결 결 과 : '18. 4. 3. (재의결) ---------- ○ 대법원 제소 : '18. 4. 16. (충청남도지사) ○ 제 소 결 과 : 계류 중
조례내용	○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재의요구 이 유	○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지자체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며, 행정기구인 인권증진팀 및 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를 없애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함
재의결과	재의결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 요	○ 발 의 : '16. 10. 31. (의원) ○ 의 회 의 결 : '18. 5. 1. ○ 재의요구지시 : '18. 5. 11. (충청남도지사) ○ 재 의 요 구 : '18. 5. 11. (계룡시장) ○ 의 결 결 과 : '18. 6. 25. (부결)
조례내용	○ 계룡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재의요구 이 유	○ 성적지향을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명시적·적극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폐지 이유로 인권에 대한 모든 법률 제정은 국가 업무이지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인권업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 자치사무이며, 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님. 인권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개정사항은 될 수 있어도 폐지 사유는 될 수 없음. ○ 인권조례 폐지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을 어렵게 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 할 것이므로 인권조례의 존치가 필요함.
재의결과	부 결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개 요	○ 발 의 : '16. 11. (군의원) ○ 의 회 의 결 : '16. 12. 13. ○ 재의요구지시 : '16. 12. 21. (홍성군수) ○ 재 의 요 구 : '16. 12. 21. (홍성군수) ○ 의 결 결 과 : '17. 2. 16. (재의결)
조례내용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재의요구 이 유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자율감차사업 추진 중에 있음. - 2014년 충남 제3차 택시총량 조사 실시, 홍성·예산 110대(홍성55,예산55) 감차 대상(향후 20년간 추진)으로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사업면허의 수요·공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 시 사업구역이 통합된 예산군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택시업계 재원부족으로 감차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시점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2대 증차효과가 발생되며, 향후 홍성군과 택시업계의 감차 재원 부담 발생 및 이해관계에 따른 운수종사자 반발 등 민원이 예상 됨. 2. 본 조례 제정 효과는 향후 20년간 감차 계획으로 있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차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신규 면허 발급이 불가하며, 2012년 9월 14일 신규 발급받은 면허 2대에 국한 될 것으로 보이고, 2명의 신규면허 발급자는 양도·양수 및 상속불가 허가조건으로 발급받은 면허로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급 적용은 향후 양도·양수 및 상속 시 홍성군과의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재의결과	재의결

【홍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성군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

개 요	○ 발 의 : '17. 03. 24. (의원) ○ 의 회 의 결 : '17. 04. 26. ○ 재의요구지시 : '17. 05. 17. (임실군수) ○ 재 의 요 구 : '17. 05. 17. (임실군수) ○ 의 결 결 과 : '17. 05. 22. (부결)
조례내용	○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지역 중 상대제한지역 삭제 (안 제3조제5항제1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된 인접부지에 신축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 예외 (안 제3조제5항제3호 신설) ○ 기존 축사부지에서 주거 밀집지역 밖으로 돼지는 500미터, 닭·오리는 300미터, 기타 200미터 이상 이격 후 동일면적 내 신축할 경우(안 제3조제5항제4호 신설) ○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중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상대제한지역에 "단, 낙농특구지정 공포일 이전부터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젖소사육시설의 이전시는 350미터 이내지역"을 추가
재의요구 이 유	○ 개정조례안 제3조제5항제1호의 내용은 절대 금지지역 내의 축사의 자연 소멸을 염원하는 축사 주변 다수 마을 주민들의 그간에 재산권 피해, 악취 및 가축분뇨 등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절대 금지지역 내에서의 영구적 축사 운영을 행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축산시설로 인해 그동안 축산농가와 인근 마을 주민 간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민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 마을상수도에 따른 절대 금지지역 내 축사 231개소의 영구적 운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마을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 주민들이 가축분뇨로 인한 직접적 피해 우려가 고착화 될 수 있기에, 충분한 여론 청취 및 마을상수도 사용실태 조사 등을 선행함으로써 조례 개정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3조제5항제1호의 절대 금지구역 내에 있는 기 신고 또는 허가된 축사의 개축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은, 제3조제5항제4호의 "주거 밀집지역 내에서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가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돼지는 500미터, 닭·오리는 300미터, 기타 200미터 이상 이격 후 동일 면적 내 신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주는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 완화 조치임. ○ 그리고 제3조제5항제3호의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 일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금 수령 후 3년 이내에 편입부지 경계에 동일면적 만큼 신축 할 수 있도록" 함은, 우리군 축사의 신·증·개축의 점차적 제한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과 증축의 이중적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전부 편입되는 축사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재의결과	부 결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5항제1호 중 "상대제한지역내에서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부지 면적내에서 재·개축할 경우"를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부지 면적내에서 재·개축할 경우"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 일부가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 수령 후 3년 이내에 편입 부지경계에 동일 면적 내 신축할 경우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운용중인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가 주거밀집지역 밖의 가축사육 현대화시설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돼지는 1,000미터, 닭·오리는 300미터, 기타 200미터 이상 이격 후 동일 면적 내 신축할 경우. 사용승인 이전 기존 축사는 철거하여야 한다. 단 공공사업에 의한 보상대상은 제외한다.

제3조제3항 관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3항 관련)

구분	절대 금지지역	상대 제한지역
제한지역	○ 군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중 주거밀집지역, 마을 회관, 모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자연환경보전 지역내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 지역	● 돼지는 2,000미터 이내 지역 ● 닭·오리·개·메추리는 1,000미터 이내 지역 ● 젖소는 500미터 단, 2016. 11. 1 이전부터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젖소사육시설의 이전시는 350미터 이내지역 ● 한우, 육우는 350미터 이내지역 ● 말·양·사슴은 100미터 이내지역
	○ 수도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수도 와 소규모급수 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지역	○ 옥정호 만수위(196.5미터)로부터 1,000미터 이내지역 - 단 섬진강본류 기준점은 선거교 안쪽으로 하며, 옥녀동천 기준점은 운암 순환교 안쪽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 ④ <생 략> 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증·개축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대제한지역내에서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부지 면적내에서 재·개축할 경우 2. <생 략> 3. <신 설> 4. <신 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부지 면적내에서 재·개축할 경우 2. <현행과 같음> 3.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 일부가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 수령 후 3년 이내에 편입 부지경계에 동일 면적 내 신축할 경우 4.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운용중인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가 주거밀집지역 밖의 가축사육 현대화시설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돼지는 1,000미터, 닭·오리는 300미터, 기타 200미터 이상 이격 후 동일 면적 내 신축할 경우. 사용승인 이전 기존 축사는 철거하여야 한다. 단 공공사업에 의한 보상대상은 제외한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개정)

개 요	○ 발 의 : '16. 03. 08. (군수) ○ 의 회 의 결 : '16. 03. 22. ○ 재의요구지시 : '16. 04. 04. (해남군수) ○ 재 의 요 구 : '16. 04. 04. (해남군수) ○ 의 결 결 과 : '16. 05. 13. (재의결)
조례내용	○ 단서 규정(안 부칙 제2조제1호) - 단, 300㎡를 초과할 수 없다. ○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중 "돼지 축종"의 축사면적에 따른 제한거리를 세부화한 규정(안 별표 1)
재의요구 이 유	○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해남군의회에서 소규모 축산 농가를 위해 돼지 축사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은 제한거리 700미터 이내로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액비저장 탱크 등 축사시설에 의한 악취 등으로 군민의 기본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대규모 축사 부지를 매입한 후 소규모로 분할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을 양도·양수할 경우 대규모 돈사 신축과 집단화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 기업형 돈사의 신축을 막고자 했던 우리군 개정 취지에 크게 벗어남.

재의요구 이 유	○ 기업형 돈사의 신축 시 산림 훼손과 친환경농경지의 감소, 돼지 축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우리군의 이미지에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규모로 양돈을 하고자 하는 군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돈사 신축으로 피해를 입을 다수의 군민 의견도 반영해야 할 것임. ○ 부칙 경과조치 중 최초 축사 건축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1회에 한하여 증설 시 3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기존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존 축사 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고자 했던 우리군 개정취지와 어긋남.
재의결과	재의결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안)】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 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살·도살 및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세대"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축사의 관리사
   나. 가축 사육 농가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군 관할 지역의 해당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가축사육시설(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증설"이란 동일 가축사육자의 기존 축사부지와 연접한 토지에 한정하여 축사를 넓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주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 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
6.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
8.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
9.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구역. 다만, 그 축사부지가 저수지 제방 하단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50미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농가부업용으로 사육하는 소·돼지·젖소·말·양·사슴은 5두 미만, 닭·오리(과)는 20수 미만을 사육하는 가축. 다만, 수유중인 가축과 병아리(오리(과), 메추리)는 그 사육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의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③ 「악취방지법」 제3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제한지역 이외 지역이라도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축사에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정 또는 변경·해제의 근거
2. 지정 또는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을 제한받는 지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가능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설할 수 있다.

1. 최초 축사 건축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1회에 한하여 증설할 경우. 단, 3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한지역 내 세대주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최초 축사 건축면적의 30퍼센트 이상으로 증설할 경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경우.

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산지법」 제14조 내지 제15조 및 「건축법」 제11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각 각의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 또는 승인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인가의 경계로부터 축사(예정)부지 경계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단, 닭·오리(과)의 경우 무창형 축사, 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갖춘 돈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1/5 범위에서 각각 줄일 수 있다.

축종	축사면적	제한거리
닭, 오리(과), 개	1,000m^2 미만	500m 이내
닭, 오리(과), 개	1,000m^2 ~ 2,000m^2	700m 이내
닭, 오리(과), 개	2,000m^2 이상	1,000m 이내
돼지	1,000m^2 미만	700m 이내
돼지	1,000m^2 이상 3,000m^2 미만	1,000m 이내
돼지	3,000m^2 이상 5,000m^2 미만	1,500m 이내
돼지	5,000m^2 이상	2,0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m^2 미만	1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m^2 이상	200m 이내

[별표 2]

주거밀집지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가장 가까운 인가의 경계로부터 축사(예정)부지 경계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축종	제한거리
돼지, 개	500m 이내
닭, 오리(과)	3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m 이내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안)】

【신·구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 칙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을 제한받는 지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가능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설할 수 있다. 1. 최초 축사 건축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1회에 한하여 증설할 경우 (단서 규정 신설) 2. ~ 3. (생 략)	부 칙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1. ---------- 단, 300㎡를 초과할 수 없다. 2. ~ 3.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원 안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인가의 경계로부터 축사(예정)부지 경계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단, 닭·오리(과)의 경우 무창형 축사 및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경우 제한거리를 1/3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축 종	축사면적	제한거리
닭, 오리(과), 개	1,000m² 미만	500m 이내
닭, 오리(과), 개	1,000m² ~ 2,000m²	700m 이내
닭, 오리(과), 개	2,000m² 이상	1,000m 이내
돼지	2,000m² 미만	1,000m 이내
돼지	2,000m² 이상	2,0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m² 미만	1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m² 이상	200m 이내

수 정 안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인가의 경계로부터 축사(예정)부지 경계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단, 닭·오리(과)의 경우 무창형 축사, 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갖춘 돈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1/5 범위에서 각각 줄일 수 있다.

축 종	축사면적	제한거리
닭, 오리(과), 개	1,000m² 미만	500m 이내
닭, 오리(과), 개	1,000m² ~ 2,000m²	700m 이내
닭, 오리(과), 개	2,000m² 이상	1,000m 이내
돼지	1,000m² 미만	700m 이내
돼지	1,000m² 이상 3,000m² 미만	1,000m 이내
돼지	3,000m² 이상 5,000m² 미만	1,500m 이내
돼지	5,000m² 이상	2,0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m² 미만	1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m² 이상	200m 이내

【신·구 조문 대비표】

<table>
<tr><th>원 안</th><th>수 정 안</th></tr>
<tr>
<td>
[별표 2]

주거밀집지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가장 가까운 인가의 경계로부터 축사(예정)부지 경계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table>
<tr><th>축종</th><th>제한거리</th></tr>
<tr><td>돼지</td><td>500m 이내</td></tr>
<tr><td>닭, 오리(과), 개</td><td>300m 이내</td></tr>
<tr><td>그 밖의 가축</td><td>100m 이내</td></tr>
</table>
</td>
<td>
[별표 2]

주거밀집지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가장 가까운 인가의 경계로부터 축사(예정)부지 경계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table>
<tr><th>축종</th><th>제한거리</th></tr>
<tr><td>돼지, 개</td><td>500m 이내</td></tr>
<tr><td>닭, 오리(과)</td><td>300m 이내</td></tr>
<tr><td>그 밖의 가축</td><td>100m 이내</td></tr>
</table>
</td>
</tr>
</table>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table>
<tr><td>개 요</td><td>○ 발 의 : ‘17. 03. 21 (의원)
○ 의 회 의 결 : ‘17. 03. 21
○ 재의요구지시 : ‘17. 04. 10 (해남군수)
○ 재 의 요 구 : ‘17. 04. 10 (해남군수)
○ 의 결 결 과 : ‘17. 05. 31 (재의결)</td></tr>
<tr><td>조례내용</td><td>○ 후단 규정(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 “----------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2)
<table>
<tr><th>위반사항</th><th>위반내용 및 횟수</th><th>금 액</th></tr>
<tr><td rowspan="3">불출석</td><td>불응 3회 이상</td><td>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td></tr>
<tr><td>불응 2회</td><td>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td></tr>
<tr><td>불응 1회</td><td>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d></tr>
<tr><td rowspan="3">서류 제출 및 증언 거부</td><td>불응 3회 이상</td><td>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td></tr>
<tr><td>불응 2회</td><td>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td></tr>
<tr><td>불응 1회</td><td>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d></tr>
<tr><td>선서 거부</td><td>불응 시</td><td>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td></tr>
</table></td></tr>
<tr><td>재의요구 이 유</td><td>○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및 증언거부, 선서거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서“부과기준은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이 입법되었으나 개정안 제10조에서는 “사유 발생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행위 규정인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개정안 제10조의2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과금액의 하한선을 2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중 등에 관계없이 횟수에 따라 최소 200만원 이상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과도한 제한이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td></tr>
</table>

재의요구 이 유	○ 본 조례는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어 조례 해석상 위반 횟수 마다 중복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유무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과태료 결정을 위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금액 기준이 강제로 정해져 있어 부과권자의 정황 참작의 여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여력이 상실되므로 행위·횟수별 금액의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법원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의회의 과태료는 사유발생 시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장이 부과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제재 등의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의회운영상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본 조례안은 실효적 측면에서도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의결과	재의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에서부터 제17조까지를 제11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해 출석 및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사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별표 2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과태료 부과절차) ① 제1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서류제출 및 증언·선서거부 사실을 통보하면 군수가 부과·징

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붙여야 한다.

② 군수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을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납부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이의제기) ① 제1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징수·체납처분·압류 등) ①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징수·체납처분·압류에 관하여 이 조례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처리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6(의장의 통보)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군수는 제10조의 3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와 별지 제1호 ~ 제5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생 략)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해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한 사람 2.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사람 4.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 사람

< 신 설 >	제10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41조 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별표 2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 설 >	제10조의3(과태료 부과절차) ① 제1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서류제출 및 증언·선서 거부 사실을 통보하면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붙여야 한다. ② 군수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을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납부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0조의4(이의제기) ① 제1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군수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0조의5(징수·체납처분·압류 등) ①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세부과징수 예에 준하여 처리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0조의6(의장의 통보)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군수는 제10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의 원칙) (생 략)	제12조(공개의 원칙) (현행과 같음)
제12조(제척과 회피) (생 략)	제13조(제척과 회피) (현행과 같음)
제13조(주의 의무) (생 략)	제14조(주의 의무) (현행과 같음)
제14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생 략)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현행과 같음)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생 략) 제16조(징계) (생 략) 제17조(준용규정) (생 략)	제16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따른 처리) (현행과 같음) 제17조(징계) (현행과 같음) 제18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의2 관련)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횟수	금 액
불출석	불응 3회 이상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불응 2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불응 1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서류 제출 및 증언 거부	불응 3회 이상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불응 2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불응 1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선서 거부	불응 시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제10조에 따라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붙임 납부통지서와 같이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남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제10조의4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남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해 남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서)

제 호	회 계 년 도	년도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불출석·증언과태료)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해남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불출석·증언의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해남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

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회 계 년 도	년도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불출석·증언과태료)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	

영수필통지서
(군청통보용)

제 호	회 계 년 도	년도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불출석·증언과태료)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	**해 남 군 수** 귀하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 계 년 도	년도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불출석·증언과태료)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		취급자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③생 년 월 일	
	②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부과기간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 일 자			
	⑦과 태 료 처분사유			
⑧과태료에대한 불 복 사 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제10조의4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해 남 군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10조와 관련입니다.

2. 위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고지일자		⑤과태료 금액	
	⑥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해 남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	①성 명		③생 년 월 일	
	②주 소			
④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⑤위반사항				
⑥과태료금액	원		⑦당초납부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해남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 요	○ 발 의 : '18. 3. 13.(경상남도지사) ○ 의 회 의 결 : '18. 3. 16. ○ 재 의 요 구 : '18. 3. 19.(경상남도지사) ○ 의 결 결 과 : '18. 3. 20.(재의결)
조례내용	○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시·군의원 지역구 명칭·구역을 정함 ▸ 시·군별 의회 의원정수 조정 : 별표 1 - 총 264명(지역구 228명, 비례대표 36명) - 시·군별 증감내역 : 붙임(선거구획정위원회 정수책정 결과) ▸ 시·군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조정 : 별표 2 - 지역구 의원수 : 228명 - 선거구수 : 84개 ○ 공직선거법 시행령의 폐지(2016.3.11.)에 따른 인용조문 삭제와 도민이 알기 쉽게 법령 근거조문 명료화
재의요구 이 유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6항, '시·도의회가 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 선거구획정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11명)되어 제7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획정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간담회와 49개 기관(정당, 시군의 의회 및 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여 이송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재의를 요구함
재의결과	재의결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3조제1항 및 제2호,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별지 별표 1
별표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2조(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 제23조 및 제26조제2항 ----------.

〔별표 1〕(제2조 관련)

시·군의회 의원정수

시·군	의원정수			비고
	계	지역구 의원정수	비례대표 의원정수	
계	**264**	**228**	**36**	
창원시	44	39	5	
진주시	21	18	3	
통영시	13	11	2	
사천시	12	10	2	
김해시	23	20	3	
밀양시	13	11	2	
거제시	16	14	2	
양산시	17	15	2	
의령군	10	9	1	
함안군	10	9	1	
창녕군	11	9	2	
고성군	11	9	2	
남해군	10	9	1	
하동군	11	9	2	
산청군	10	9	1	
함양군	10	9	1	
거창군	11	9	2	
합천군	11	9	2	

[별표 2] (제2조 관련)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지역구명칭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읍 면 동 명
경상남도 시·군의원(지역구 의원수 : 228, 선거구수 : 84)		
창원시	39	15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나 선거구	3	팔룡동, 명곡동
다 선거구	2	봉림동, 용지동
라 선거구	3	반송동, 중앙동(성산구), 웅남동
마 선거구	3	상남동, 사파동
바 선거구	2	가음정동, 성주동
사 선거구	2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아 선거구	2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자 선거구	3	완월동, 자산동, 교방동, 노산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차 선거구	3	내서읍
카 선거구	2	회원1동, 회원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타 선거구	3	양덕1동, 양덕2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봉암동
파 선거구	3	중앙동(진해구),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
하 선거구	2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거 선거구	2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진주시	18	6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충무공동
나 선거구	3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다 선거구	4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라 선거구	2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상평동
마 선거구	3	상대동, 하대동
바 선거구	4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초장동
통영시	11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나 선거구	2	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다 선거구	2	미수동, 봉평동
라 선거구	4	도천동, 명정동, 중앙동,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사천시	10	3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나 선거구	2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다 선거구	4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남양동
김해시	20	7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생림면, 상동면, 북부동
나 선거구	2	대동면, 삼안동, 불암동
다 선거구	3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활천동
라 선거구	3	진영읍, 한림면
마 선거구	3	주촌면, 진례면, 칠산서부동, 장유1동
바 선거구	3	장유2동, 장유3동
사 선거구	3	내외동

밀양시	**11**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나 선거구	4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 교동
다 선거구	3	삼랑진읍, 상남면, 가곡동
라 선거구	2	하남읍,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거제시	**14**	**5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나 선거구	3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다 선거구	2	옥포1동, 옥포2동
라 선거구	2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마 선거구	3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양산시	**15**	**5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상북면, 하북면, 강서동
나 선거구	2	중앙동, 삼성동
다 선거구	4	물금읍, 원동면
라 선거구	3	동면, 양주동
마 선거구	4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의령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의령읍, 용덕면
나 선거구	2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다 선거구	2	정곡면, 지정면, 궁류면, 유곡면
라 선거구	2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함안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가야읍, 함안면, 여항면
나 선거구	2	군북면, 법수면
다 선거구	2	칠원읍, 칠북면
라 선거구	2	대산면, 칠서면, 산인면
창녕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창녕읍, 유어면, 대지면
나 선거구	2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다 선거구	2	남지읍, 길곡면, 부곡면
라 선거구	2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고성군	**9**	**3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고성읍, 대가면
나 선거구	3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다 선거구	3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남해군	**9**	**3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남해읍, 서면, 고현면, 설천면
나 선거구	2	이동면, 상주면, 남면
다 선거구	3	삼동면, 미조면, 창선면

하동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나 선거구	3	하동읍, 횡천면, 고전면
다 선거구	2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라 선거구	2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산청군	**9**	**3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나 선거구	3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다 선거구	2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함양군	**9**	**3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함양읍, 백전면, 병곡면
나 선거구	2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다 선거구	3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거창군	**9**	**3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거창읍(중앙리, 대동리, 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정장리, 장팔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가지리, 상림리 원상동)
나 선거구	3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거창읍(상림리 상동)
다 선거구	2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합천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합천읍, 대병면, 용주면
나 선거구	2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다 선거구	2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라 선거구	2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진주시	18	8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나 선거구	3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성지동, 봉안동, 가호동
다 선거구	2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이현동, 판문동
라 선거구	2	평거동, 신안동
마 선거구	2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상평동
바 선거구	3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사 선거구	2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초장동
아 선거구	2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진해시	11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
나 선거구	3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
다 선거구	3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라 선거구	3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통영시	10	5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나 선거구	2	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다 선거구	2	미수1동, 미수2동, 봉평동, 도남동
라 선거구	2	도천동, 명정동, 중앙동, 인평동
마 선거구	2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사천시	**10**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나 선거구	2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다 선거구	2	동서동, 선구동, 남양동
라 선거구	3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김해시	**18**	**7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생림면, 상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나 선거구	3	대동면, 삼안동, 불암동
다 선거구	2	활천동
라 선거구	2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주촌면
마 선거구	2	장유면(부곡리, 삼문리, 대청리, 유하리)
바 선거구	2	장유면(내덕리, 무계리, 신문리, 관동리, 율하리, 장유리, 응달리, 수가리), 회현동, 칠산서부동
사 선거구	3	내외동
밀양시	**10**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나 선거구	3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다 선거구	3	삼랑진읍, 상남면, 가곡동
라 선거구	2	하남읍,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거제시	13	5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나 선거구	2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다 선거구	2	옥포1동, 옥포2동
라 선거구	3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마 선거구	2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양산시	13	6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물금읍, 원동면, 강서동
나 선거구	2	상북면, 하북면
다 선거구	2	중앙동, 삼성동
라 선거구	2	동면, 양주동
마 선거구	2	서창동, 소주동
바 선거구	2	평산동, 덕계동
의령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의령읍, 용덕면
나 선거구	2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다 선거구	2	정곡면, 지정면, 궁류면, 유곡면
라 선거구	2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함안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가야읍, 함안면, 여항면
나 선거구	2	군북면, 법수면
다 선거구	2	칠북면, 칠원면
라 선거구	2	대산면, 칠서면, 산인면

창녕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창녕읍, 유어면, 대지면
나 선거구	2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다 선거구	2	남지읍, 길곡면, 부곡면
라 선거구	2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고성군	**9**	**3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나 선거구	2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다 선거구	3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남해군	**8**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남해읍, 서면
나 선거구	2	고현면, 설천면
다 선거구	2	이동면, 상주면, 남면
라 선거구	2	삼동면, 미조면, 창선면
하동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나 선거구	3	하동읍, 횡천면, 고전면
다 선거구	2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라 선거구	2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산청군	8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산청읍, 차황면
나 선거구	2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다 선거구	2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라 선거구	2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함양군	8	3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함양읍, 백전면, 병곡면
나 선거구	2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다 선거구	2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거창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거창읍(상림리 원상동, 중앙리, 대동리, 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정장리, 장팔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가지리)
나 선거구	2	거창읍(상림리 상동),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다 선거구	2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가북면
라 선거구	2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합천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합천읍, 대병면, 용주면
나 선거구	2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다 선거구	3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라 선거구	2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3조제1항 및 제2호,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별지 별표 1
별표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2조(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 제23조 및 제26조제2항 ----------

〔별표 1〕(제2조 관련)

시·군의회 의원정수

시·군	의원정수			비고
	계	지역구 의원정수	비례대표 의원정수	
계	**264**	**228**	**36**	
창원시	**44**	**39**	**5**	
진주시	**21**	**18**	**3**	
통영시	**13**	**11**	**2**	
사천시	**12**	**10**	**2**	
김해시	**23**	**20**	**3**	
밀양시	**13**	**11**	**2**	
거제시	**16**	**14**	**2**	
양산시	**17**	**15**	**2**	
의령군	**10**	**9**	**1**	
함안군	**10**	**9**	**1**	
창녕군	**11**	**9**	**2**	
고성군	**11**	**9**	**2**	
남해군	**10**	**9**	**1**	
하동군	**11**	**9**	**2**	
산청군	**10**	**9**	**1**	
함양군	**10**	**9**	**1**	
거창군	**11**	**9**	**2**	
합천군	**11**	**9**	**2**	

[별표 2] (제2조 관련)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지역구명칭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읍·면·동 명
경상남도 시·군의원(지역구 의원수 : 228, 선거구수 : 96)		
창원시	39	17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나 선거구	3	팔룡동, 명곡동
다 선거구	2	봉림동, 용지동
라 선거구	2	반송동, 중앙동(성산구), 웅남동
마 선거구	3	상남동, 사파동
바 선거구	2	가음정동, 성주동
사 선거구	2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아 선거구	2	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자 선거구	2	완월동, 자산동, 오동동
차 선거구	2	교방동, 노산동, 합포동, 산호동
카 선거구	2	내서읍
타 선거구	2	회원1동, 회원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파 선거구	3	양덕1동, 양덕2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봉암동
하 선거구	2	중앙동(진해구),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
거 선거구	2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
너 선거구	2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더 선거구	2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진주시	18	8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충무공동
나 선거구	3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다 선거구	2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이현동, 판문동
라 선거구	2	평거동, 신안동
마 선거구	2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상평동
바 선거구	2	상대동, 하대동
사 선거구	3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초장동
아 선거구	2	중앙동, 상봉동
통영시	11	5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나 선거구	2	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다 선거구	2	미수동, 봉평동
라 선거구	2	도천동, 명정동, 중앙동7
마 선거구	2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사천시	10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나 선거구	2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다 선거구	2	동서동, 선구동, 남양동
라 선거구	3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김해시	20	7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생림면, 상동면, 북부동
나 선거구	2	대동면, 삼안동, 불암동
다 선거구	3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활천동
라 선거구	3	진영읍, 한림면
마 선거구	3	주촌면, 진례면, 칠산서부동, 장유1동
바 선거구	3	장유2동, 장유3동
사 선거구	3	내외동

밀양시	11	5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나 선거구	2	내일동, 삼문동
다 선거구	2	내이동, 교동
라 선거구	3	삼랑진읍, 상남면, 가곡동
마 선거구	2	하남읍,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거제시	14	5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나 선거구	3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다 선거구	2	옥포1동, 옥포2동
라 선거구	3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마 선거구	2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양산시	15	6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상북면, 하북면, 강서동
나 선거구	2	중앙동, 삼성동
다 선거구	4	물금읍, 원동면
라 선거구	3	동면, 양주동
마 선거구	2	서창동, 소주동
바 선거구	2	평산동, 덕계동
의령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의령읍, 용덕면
나 선거구	2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다 선거구	2	정곡면, 지정면, 궁류면, 유곡면
라 선거구	2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함안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가야읍, 함안면, 여항면
나 선거구	2	군북면, 법수면
다 선거구	2	칠원읍, 칠북면
라 선거구	2	대산면, 칠서면, 산인면
창녕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창녕읍, 유어면, 대지면
나 선거구	2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다 선거구	2	남지읍, 길곡면, 부곡면
라 선거구	2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고성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고성읍, 대가면
나 선거구	2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영현면
다 선거구	2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라 선거구	2	동해면, 거류면
남해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남해읍, 서면
나 선거구	2	고현면, 설천면
다 선거구	2	이동면, 상주면, 남면
라 선거구	2	삼동면, 미조면, 창선면

하동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나 선거구	3	하동읍, 횡천면, 고전면
다 선거구	2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라 선거구	2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산청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산청읍, 차황면
나 선거구	2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다 선거구	3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라 선거구	2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함양군	9	3개 선거구
가 선거구	4	함양읍, 백전면, 병곡면
나 선거구	2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다 선거구	3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거창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3	거창읍(중앙리, 대동리, 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정장리, 장팔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가지리, 상림리 원상동)
나 선거구	2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거창읍(상림리 상동)
다 선거구	2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가북면
라 선거구	2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합천군	9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2	합천읍, 대병면, 용주면
나 선거구	2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다 선거구	3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라 선거구	2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개 요	○ 발 의 : '18. 03. 13. (의원) ○ 의 회 의 결 : '18. 03. 30. ○ 재 의 요 구 : '18. 04. 18. (양산시장) ○ 의 결 결 과 : '18. 04. 27. (부결)
조례내용	○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제조업소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
재의요구 이 유	○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서 제조업소의 허용 범위를 주거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에 한정하여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수질·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는 대안도 있음으로 일반주거지역 전체에 제조업소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제조업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재의결과	부결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또는 개정안)	개 정 안(또는 수정안)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를 말한다)에서 반경 200m 이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나.~차. (생 략)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가.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나.~차. (현행과 같음)
[별표 4]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학교(「유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가.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현 행(또는 개정안)	개 정 안(또는 수정안)
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를 말한다)에서 반경 200m 이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나.~하. (생 략)	나.~하.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를 말한다)에서 반경 200m 이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가.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나.~하. (생 략)	나.~하. (현행과 같음)

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개 요	○ 발 의 : '17. 11. 22 (사천시장) ○ 의 회 의 결 : '17. 12. 19. ○ 재 의 요 구 : '17. 12. 29. (사천시장) ○ 의 결 결 과 : '18. 01. 11. (부결)
조례내용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조항 신설(안 제16조의3) ○ 가설건축물 대상 범위 확대(안 제21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범위 조정(안 제22조) ○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25조의2) ○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 (안 제29조 별표 3)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완화 및 특례 신설 (안 제40조, 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3)
재의요구 이 유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화재발생시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면서 최소한의 안전 거리인 0.5m를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최소 안전 거리조차도 제외한 수정안은 통풍·개방감·피난통로가 없어 화재 시 보호할 수 있는 공지가 없는 것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함.
재의결과	부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 ② (생 략)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신 설> 9. <신 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8.「농지법」에 따른 농막 9.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체가 용이한 건축물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박신장 등 이와 유사한 것 나.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일 것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1. 법 제11조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1. 법 제11조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생 략)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횟수를 총3회까지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 설>	제4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인 경우 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로서 양성화 하는 축사 3.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받고자 하는 경우(추인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현 행]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은 제외 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5미터 : 이상 ·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 기 타 : 2미터 이상

※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개정안]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은 제외 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 2미터 이상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제12516호,2014.03.24.일부개정]부칙 제8조 및 9조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	· 0.5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5미터 : 이상 ·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 기 타 : 2미터 이상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제12516호,2014.03.24.일부개정]부칙 제8조 및 9조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	· 0.5미터 이상

※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수정안]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은 제외 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 2미터 이상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기간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5미터 : 이상 ·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 기 타 : 2미터 이상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기간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5. 9. 4. (의원) ○ 의 회 의 결 : '15. 9. 22. ○ 재 의 요 구 : '15. 10. 12. (김천시장) ○ 의 결 결 과 : '15. 10. 20. (재의결)
조례내용	○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제1조~제2조) ○ 기금의 설치, 조성 및 용도(제3조~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과 직무사항(제7조~제9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사항(제13조) ○ 지원대상의 농축산물과 대상농가의 범위(제15조~제16조) ○ 생산비의 최저가격의 심의 및 고시(제18조~제19조) ○ 생산비 차액의 지원 사항(제20조)
재의요구 이 유	○ 기금조성에 따른 시 재정부담(2020년까지 100억원. 매년 20억원) ○ 타업종(자영업, 제조업, 전통시장 등) 형평성에 어긋남 ○ 젖소의 최저가격 산정곤란, FTA 중복지원(피해보전 직접 직불금)
재의결과	재의결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축산물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0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농축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천시의회 의원
2.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장
3.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장
4. 농업 및 축산단체 대표 및 임원
5.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업무담당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생산비 및 최저가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축산과장

2. 기금출납원: 농산물유통계장

제15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김천시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고추, 파, 감,젖소(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 모니터링 품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생산비 차액 지원의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젖소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제16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3년 이상 계통 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젖소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제17조(지원신청)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다.

제18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심의) ① 생산비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시장은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시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생산비 차액의 지원) ①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한다.

②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제21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2021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

개 요	○ 발 의 : '17. 03. 30. (의원) ○ 의 회 의 결 : '17. 04. 14. ○ 재의요구지시 : '17. 04. 28. (울진군 자치단체장) ○ 재 의 요 구 : '17. 04. 28. (울진군 자치단체장) ○ 의 결 결 과 : '17. 05. 30. (재의결)
조례내용	○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으로 요건 완화
재의요구 이 유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득하지 않은 조례안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음.
재의결과	재의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또는 개정안)	개 정 안(또는 수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신생아” 라 함은 모자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2.~ 4. (생략)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둘째아 이상 가정으로 하며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단, 재혼한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 또는 모 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둘째자녀부터 지원한다. ②. (생략) 1.~2. (생략) ③ 입양아의 경우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모자보건법」----------. 2.~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군 관내----------. ----------군 관내----------.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군 관내----------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

개 요	○ 발 의 : ‘17. 03. 30. (의원) ○ 의 회 의 결 : ‘17. 04. 14. ○ 재의요구지시 : ‘17. 04. 28. (울진군 자치단체장) ○ 재 의 요 구 : ‘17. 04. 28. (울진군 자치단체장) ○ 의 결 결 과 : ‘17. 05. 30. (재의결)
조례내용	○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으로 요건 완화
재의요구 이 유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득하지 않은 조례안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른 정비 대상 사업에 해당함.
재의결과	재의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또는 개정안)	개 정 안(또는 수정안)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건강보험료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모든 출생아로 하며,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단, 재혼한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 또는 모 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한다. ②. (생략) 1.~2. (생략) ③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군 관내----------.----------군 관내----------.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③.----------군 관내에 주민등록----------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개 요	○ 발 의 : '18. 03. 20. (의원) ○ 의 회 의 결 : '18. 03. 23. ○ 재의요구지시 : '18. 03. 26. (의성군수) ○ 재 의 요 구 : '18. 04. 10. (의성군수) ○ 의 결 결 과 : '18. 04. 23. (재의결)
조례내용	○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재의요구 이 유	○ 기금의 전액을 군비로 출연금을 조성하는 것은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거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행전안전부 기금운용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 생산비는 농가의 기술이나 재배규모에 따라 차이가 큼 ○ 농산물 중 특정 품목에 편중 지원 될 소지가 있으며 농축산물의 지원대상 품목 선정기준이 불명확하여 품목에서 제외 된 농가의 반발과 마찰 초래 가능 ○ 도매시장가격은 도매시장의 위치, 거래시기, 생산지역, 품질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지원 대상 중 일부 품목의 도매가격 미제공
재의결과	재의결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의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의성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의성군의회 의원, NH농협은행 의성군지부장, 기획실장,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다만 의성군의회 의원은 의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 농축산업인 단체 대표 또는 임원
2. 농축산업 및 경제관련 교수
3.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제15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군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한우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로 한다.

제16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3년 이상) 계통 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제17조(지원신청)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제18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① 생산비는 직접생산비 영수증 등 근거자료와 전년도 기준 물가정보지 노임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군수는 결정된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생산비 차액의 지원) ①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한다.

②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21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기금 총액이 50억원 이상 조성되면 적용한다.

제3장

질의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검토의견 사례

1 구의회 의원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구의회 의원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855, 2014.8.29.)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아동 보호조치 및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되어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시·도 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대문구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대문구 조례안"이라 함)을 제정하려고 하는바, 이 사안은 서대문구 조례안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으로 "구의회 의원이나 그 밖의 사람"도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등 참조),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해당 조례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규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 분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등 아동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대문구 조례안에서 위촉위원의 자격을 규정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해야 할 것인데, 법령에서 정한 자격의 사람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자격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동 관련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직접 규정한 취지는,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서대문구 조례안에서 위원의 자격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 취지에 맞게 정해야 할 것인데, 구의회 의원 등이 아동 관련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구의회 의원이라는 자격만으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 조례안에 구의회 의원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에서는 위촉위원의 자격으로 "시·도 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서대문구 조례안 제2조제3항제1호에서 법령에서 정한 "3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두지 않은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 시 법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유촉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촉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규정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915, 2014.9.16.)

1. 의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촉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규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국장 1명과 과장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제1호),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제2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제3호)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규정하는 것이 위원의 위촉에 관한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조례인 이상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제1호),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제2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제3호)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청장이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례 참조), 조례안 제8조제3항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제3항제1호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위원의 위촉권한은 여전히 구청장이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구의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구청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규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주체로 의회의장 또는 지방의회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질 의 내 용

○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주체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지방의회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378, 2016.3.8.)

1. 의견

지방의회 의장이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지방의회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관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위원 추천을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유

지방의회 의장의 위원 추천에 관하여 판례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의원 개인으로서는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표결권, 원구성선거권등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원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지방자치법」 제49조),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

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등 참고)"고 한 바 있으며, 의회 의장이 5인 이내의 시의원을 민간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조례 규정에 대하여 "해당 규정은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시장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청년'의 정의를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청년'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378, 2016.3.8.)

1. 의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는 자치조례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니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청년의 정의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이하 "서대문구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호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서대문구조례안 제3조제1호에서와 같이 청년의 나이에 대한 규정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나이와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

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법제처 2015. 6. 16. 의견15-0136 참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서대문구조례안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입법 목적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하여, 서대문구조례안은 서대문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그 제정 목적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는 다르고, 또한 서대문구조례안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내용적으로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는 다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서대문구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조례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적으므로 법률과 다른 새로운 용

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법제처 2014. 3. 11. 의견 14-0037 참고), 따라서, 서대문구조례안에서 청년의 나이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공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 서대문구가 중학교로부터 임차하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제공한 중학교의 운동장이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275, 2016.11.3.)

1. 의견

서대문구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확보한 중학교 운동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서대문구 조례'라 한다)」에 따르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하 '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은 자연사 자료의 취득·관리·전시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자연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제2조제3호) 서대문구는 인근 중학교의 운동장을 임차하여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는 근거를 서대문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서대문구가 임차한 중학교의 운동장이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주민의 생활배려 및 복리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이용권이 부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인적·물적 시설의 집합체(서비스 또는 조직을 포괄함)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12. 19. 회신 05-0062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자연사박물관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람객에게 공개된 공공시설의 일종으로, 학교 운동장은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은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박물관 이용에 대한 편의를 높여 박물관의 본래 기능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에서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고, 학교 운동장이 서대문구 소유의 자산은 아니나 학교와 임차계약을 통해 정한 특정 기간과 목적의 범위 내에서 서대문구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획득하였으므로 서대문구에 의해 학교 운동장이 주민의 이용에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어, 학교와 임차계약을 통해 확보한 학교 운동장은 그 계약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대문구가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이 이용하도록 임차계약을 통해 획득한 중학교 운동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법률에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1. 질 의 내 용

○ 법률에서 일정한 의무 부과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관련)

회 신 내 용 (법제처 안건번호 의견15-0031)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하 "부산시조례안"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로 과태료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조례위반 행위의 태양이 법률의 벌칙규정에 있는 행위와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먼저,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로 과태료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로 사업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위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그 과태료 부과원인과 관련된 사항만이고 명시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7조의 취지와 주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헌법재판소 1995. 4. 20. 결정 92헌마264,279(병합)], 자치입법인 조례 역시 자기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 과태료와 같은 실효성 확보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서 별도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도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9. 06. 15. 회신, 의견 09-0135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부산시조례안에서 해당 조례안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률의 벌칙규정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시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법률과 조례의 요건이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라는 점에서 수범자의 행위 태양이 동일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과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의 성질, 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그 의무위반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나 제재의 필요성 또한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 부산시조례안 제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벌칙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의 벌칙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조례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부산시조례안에서는 같은 조례의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7조 등에 따라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으므로, 부산시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개별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조례에서 서면심의가 가능한지

질 의 내 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와 같은 개별 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조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 의견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와 같은 개별 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가 불가능하다거나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 조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고 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서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고 있을 뿐, 일정한 경우에 서면심의가 불가능하다거나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금정구 위원회 조례"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개별 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조례인 금정구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정구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제1호),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제2호),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제3호)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나 개별 조례 등에서 다르게 정함이 없는 이상 금정구 위원회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등 개별 위원회 조례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만 규정이 있고, 반드시 출석회의를 하여야 하는지 혹은 일정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금정구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서는 일정한 경우 서면회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조례인 금정구 위원회 조례의 위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와 같은 개별 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가 불가능하다거나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 조례인 금정구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주차시설이 없는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이용요금 경감 조례안 마련이 가능한지

질 의 내 용

○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요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주차시설이 없는 공공시설(관련법령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받음)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그 주차요금을 구청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는 위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에 대해 특정 공공시설에 대한 경감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 법리상 문제가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678, 2018.6.18.)

○ **법리상 조례 개정 가능함**

▹ 「주차장법」을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감경요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음.

▹ 공공시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주민의 생활배려 및 복리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이용권이 부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인적·물적 시설의 집합체를 의미하므로(법제처 의견제시 16-0256 참조), 공영주차장은 공공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차요금의 감경 혹은 면제 사항은 「주차장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음.

▹ 한편, 본 조례안과는 별개로,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서 센터 이용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주차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없음.

9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의무 부과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6.7.8)

○ 의 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이하 "연수구조례"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연수구조례안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배출권 거래' 또는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설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조례에서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등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목표('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

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1항에서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내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계획 등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서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연수구조례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0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하천구역 주변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2018.4)

○ 이 사안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하천구역 주변지역(이하 "하천구역 주변지역"이라 함)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살피건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제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제4호) 등 중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하천구역 주변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가능 구역으로 규정하려면 이러한 지역 중에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시에서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하천구역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이거나,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수도법」 제7조의 취지 및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가축분뇨법 제8조제2호)이라고 판단하거나, 하천구역 주변지역이 수변구역(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또는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세종시조례안에서

가축사육 제한 가능 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천구역 주변지역의 일부라도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하천구역 주변지역을 일괄적으로 가축사육 제한 가능 구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맞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세종시조례안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증·개축이 허용되는 경우에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을 밀폐된 구조가 아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설치하는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질 의 내 용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사 증·개축 시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을 밀폐된 구조가 아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축사 신축 시 해당 가축사육 제한 범위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2018.4)

○ 이 사안에서는 세종시조례안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사 증·개축 시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을 밀폐된 구조가 아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축사 신축 시 해당 가축사육 제한 범위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조)"고 할 것이고,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 보존 등을 위하여 조례로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기존 축사에 대한 증·개축 등을 허용할지 여부와, 허용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그 요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00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7. 24. 회신 15-0139 의견 참조)

○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종시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로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증·개축이 허용되는 경우에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을 밀폐된 구조가 아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신축 시 해당 가축사육 제한 범위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종시조례안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사 증·개축 시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을 밀폐된 구조가 아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축사 신축 시 해당 가축사육 제한 범위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	실질적 의미의 '난민'은? -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 재정착희망난민 등

질 의 내 용

○ 난민법 제30조제2항의 '난민'은 난민인정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 재정착희망난민 등(이하 '난민인정자 외 난민'이라 함)을 포괄하여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실질적 의미의 난민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회 신 내 용 (법무부 난민과, 2015.7.29)

<법조문의 체계 등에 비추어 법 제30조제2항의 '난민'은 '난민인정자'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해 보임>

○ 난민법 제30조제2항의 조문 위치 및 표제 고려

- 난민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3장 난민위원회 등,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5장 보칙 및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4장은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 처우에 대하여 제1절부터 제3절까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 제30조는 제4장 제1절(난민인정자의 처우)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표제 또한 「난민인정자의 처우」라고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30조제2항의 '난민'은 법체계상'난민인정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 난민인정자 뿐만 아니라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 신청자, 재정착희망난민 등 난민 '일반'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책수립 등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제1장 총칙 부분에 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도 자연스러움

13 경과규정 불미 이유로 재의요구 가능한지 등

질 의 내 용

1. 질의배경

○ 2018.5.24.일 과천시 의회는 상업지역 안에 주거용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편법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발의 및 가결하여 과천시로 이송함.

○ 일반적으로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기 전 건축허가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여부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의원발의 조례안은 경과규정이 없음

○ 경과규정 없이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행정절차 진행 중인 건축허가 신청(2건)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심대한 영향은 물론 법의 안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에 상충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 예정임

2.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이 경과규정의 불비를 이유로 한 재의요구가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규정에(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

나.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71①에 따라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치도록 하고, 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폐기되고 동일한 내용(부칙만 개정)의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날에 조례안 상정이 가능한지 여부

다. 당일 조례안 상정이 가능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부칙만 개정되었으므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2018.6.8)

1.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재의요구안과 새로운 조례안은 별개의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및 의회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3.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제1호),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제2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3호) 등을 제외하고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 등에 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 각 호에서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제도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입법예고의 생략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4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 단체명을 명시,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여부

질 의 내 용

○ 각종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과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면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같이 조례에 특정단체를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5.9.17.)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한 단체를 명시하는 것은 "등"이 있어 앞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단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앞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체와 유사한 치안활동 봉사를 시행하는 단체가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일부 단체를 명시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이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특정단체를 명시하는 것은 조례안의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5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위원회 위원에 지자체 소속 4급 이상 임명직 공무원이 위촉직 위원에 해당되는지

질 의 내 용

○ 시 소속 4급 이상 임명직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위촉직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시의회 의원
>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회 신 내 용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2018.5.15.)

○ 조례 상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조항은 우리부가 자치단체에 송부한 지침*에 따라 실제 위촉된 직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실상 당연직 : 근거법령, 조례상으로는 '위촉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해당 위원에 '3회 이상 연속으로' 특정 '직위(공직 및 공공기관 한정)'가 위촉된 경우 3회 임기 이상의 위원 명단 제출시 인정

○ 오산시 금고 운영을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예: ○○국장)를 연속하여 3기 이상 위촉을 했을 경우는 위촉직이 아닌 '사실상 당연직'에 해당하여 위촉직 모수 인원에서 제외 가능함.

※ 다만, 금고 운영을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외에 시 소속 공무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데, 동일 직위를 3회 이상 위촉하였을지라도 금고 운영 업무와 연관성 정도를 두고 판단하여야 하며 다른 직위로 대체가 가능하면 사실상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해당함.

16 의용소방대의 기술경연대회 행사비용이 업무수행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

질 의 내 용 (1)

○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관련문서 : 양양군 기획감사실-5525(2017.5.30)호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1115(2017.6.15)호)

1. 질의요지

가.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나. 양양군수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다. 양양군수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양양군수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양양군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양양군수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가. 공통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제1호), 구조·구급업무의 보조(제2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제3호), 화재예방업무의 보조(제4호)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5호의 위임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제1호),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제2호),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을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하 "양양군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설립된 양양군

의용소방대(이하 "양양군의용소방대"라 함)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양양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제1호),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제2호), 도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제3호),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제4호),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5호)와 같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양양군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양양군의용소방대의 "기술경연대회"가 의용소방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앞에서 살펴 본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같은 법 제7조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경연대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용소방대의 임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기술경연대회"가 포함될 수 있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제1호), 구조·구급업무의 보조(제2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제3호), 화재예방업무의 보조(제4호)는 그 내용 자체가 「소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실체적인 업무(이하 "지방소방기관수행업무"라 함)와 직접 관련된 업무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7조제5호의 위임 사항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업무, 즉 지방소방기관수행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위임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서도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제1호),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제2호)과 같은 지방소방기관수행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그 내용 자체가 지방소방기관수행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4. 3. 의견제시 17-0082 참조).

그런데, "기술경연대회"를 화재 진압 기술 등을 익히고 소방 활동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기술의 숙련도를 서로 경쟁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이는 지방소방기관수행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라기보다는 소방업무 수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

전에 하는 교육·훈련의 목적이나 그 교육·훈련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를 의용소방대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법 제17조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과 구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양양군조례안 제3조에서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구분하여 기술경연대회 행사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양군조례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은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양양군수가 양양군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이하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양양군수가 양양군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사무가 양양군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가목의 10)에서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대해 시·군·구 사무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양양군수가 양양군의용소방대

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은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다른 법률에서 양양군수가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양양군수가 양양군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양양군수가 양양군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양양군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양군수가 양양군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양양군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양양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

재정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이라고 하여 법령이 조례보다 상위의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는 점(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6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운영비 지원에 대한 다른 법령상의 근거 없이 양양군조례안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4. 12. 의견제시 17-0110 참조).

따라서, 양양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7 시설 부지 내 주차장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질 의 내 용 (불법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질의 요청)
○ ○○휘닉스파크 부지 내 셔틀버스 주차장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과 2015.4.2.)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시설 부지 내 주차장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청에서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편의시설 내부에 있는 '지주형태의 광고물' 등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시설의 이용자만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편의시설 내에 표시·설치한 경우에도 설치 위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설치된 것이라면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안건번호	의견18-0042	요청기관	충청남도	회신일자	2018. 3. 6.
안 건 명	충청남도 공주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함)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는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1호),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제2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제3호),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제4호)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공주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공주시복지관"이라 함)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공주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제1호), 위탁계약기간(제2호),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제3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공주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1호),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제2호),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제3호),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중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제4호), 공익단체 중 장애인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주시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주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공익단체 중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장애인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에 있고(법제처 2014. 11. 14. 회신 14-0556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이외의 다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없습니다. 공주시조례안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그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주시조례안에서 일률적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공주시조례안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를 공익단체 중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학부모 단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4호에 따라 그 외의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이는 같은 규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9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에 대하여 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전라남도 강진군 총무과 - 7169, 2017.4.4.)

○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2017.5.1.)

○ 의견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 집행기관의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강진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진군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중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강진군조례안에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보직 등 인사에 대하여 군수

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명(任命)이란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이며,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사무를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신규임용·전입 등을 통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2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그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간여를 허용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즉 신규임용·전입 등을 통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그 사무직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강진군조례안에서와 같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의회사무과 직원 중 강진군 의회사무과 외에 집행기관의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강진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진군조례안에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 집행기관의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강진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 지원을 받지 않는 주민들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 전라남도 영광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 지원을 받지 않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6.11.9.)

○ 영광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원받지 않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무는 영광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에서와 같이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21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위치를 구체적인 주소에서 '진주시 관내'로 개정이 가능한지

질 의 내 용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내"에서 "진주시 관내"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7.4.6.)

1. 의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조례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이나 지방자치법령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내"에서 "진주시 관내"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 입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위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을 어디에 두어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조례 입안 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

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이하 "진주시조례"라 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진주시센터"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진주시센터의 위치를 진수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진주시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진주시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관내"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진주시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입지기준으로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

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주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이러한 입지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진주시센터의 위치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치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할지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이나 지방자치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종류의 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을 어디에 두어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4. 2. 7. 의견제시 14-0020 참조), 진주시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관내"로만 규정할 경우 집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진주시센터의 구체적 위치가 결정될 수 있는바, 조례 입안 시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조례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이나 지방자치법령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주시조례 제2조에 따른 진주시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내"에서 "진주시 관내"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 입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위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을

어디에 두어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조례 입안 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각각 다른 위원회 기능을 한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1. 질 의 내 용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진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기능을 「진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7.4.6.)

1. 의견

진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이고 같은 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진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유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하 "진주시조례안"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라 함)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진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함)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

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경관위원회에서 통합해 운영하도록 진주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간 통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부과된 것으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인 법령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그 설치·운영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4. 22. 의견제시 15-0096 참조).

살피건대,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디자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

장 소속으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이고,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두는 위원회이므로 각각의 위원회는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근거 법령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디자인법 제9조제3항에서는 조례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거나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디자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자문기관으로서 「경관법」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관인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디자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이고 같은 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진주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23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2. 질 의 내 용

「진주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7.9.6.)

1. 의견

「진주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유

「진주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하 "진주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함)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호),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제2호), 도시림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제3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5호)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도시림위원회"라 함)를 두되, 「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이 사안은 도시림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합해 운영하도록 진주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간 통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부과된 것으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인 법령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그 설치·운영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4. 6. 의견제시 17-0080 참조).

우선,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림위원회는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서, 산림자원법에서는 도시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제1호),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2호),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거나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되는 자문기관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림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조례안에서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도시림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2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두면서,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7.5.19.)

1. 의견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두면서,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유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이하 "진주시조례안"이라 함) 제20조에서는 진주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신청의 적정여부 및 지원대상 사업심의(제1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우선순위 심의(제2호), 지원 비율·금액 및 방법 결정(제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지원심사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사안은 조례로 설치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진주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통합·운영의 경우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은 그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문기관 간 통합·운영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의 역할을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이 그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설치되는 다른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해석이 자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자문기관 간 통합·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3. 3. 16. 의견제시 13-0081 참조).

우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제1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2호),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제3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2항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지원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서 진주시조례안으로 설치하려는 자문기관으로서, 진주시장에 대한 구속력 없는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이고, 지원심사위원회의 자문은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 진주시장은 그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진주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7. 3. 23. 의견제시 17-0051 참조), 분쟁을 조정하고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분쟁조정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진주시조례안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같은 조례안 제21조에 따른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제1호),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제2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제3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와 지원 금액·방법 등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는 다르므로 두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주시조례안에서 지원심사위원회를 두면서,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원심사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5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7.5.24.)

1. 의견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진주시조례안"이라 함)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할 경우 거리 기준으로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진주시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

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진주시조례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례로 이와 같은 사항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분야별 검토사항과 개발행위별 검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6조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개발행위허가지침"이라 함) 1-2-2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지침의 규정들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고), 진주시에서는 위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진주시조례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와 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한 것이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제1호다목(2)],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제1호라목(1)],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제1호라목(2)],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제1호마목(1)]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조례안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다목(2), 제1호라목(1)·(2) 및 제1호마목(1)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해당하는 "도시계획도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의 진주시조례안은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6 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나.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단체"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7.8.25.)

1. 의견

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개정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법령 규정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단체"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개정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 등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법령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유

가. 질의 가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진주시조례"라 함) 제11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대상자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환경관리공단,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

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진주시조례안"이라 함)에서는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례로 정해야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는 진주시조례안 제11조의 개정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진주시가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자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할 자는 당연히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조례 제11조에서 위탁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 그 대신 진주시조례안 제11조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법인·

단체를 위탁 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 대상자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조례 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개정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법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조례"라 함)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조례안"이라 함)에서는 현행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조례 제24조제1항제3호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는 경우,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여 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해야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는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조례안 제35조제3항제3호의 개정 내용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제1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탁 대상자 또한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고(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제3항)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중지, 시설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요구되는 이와 같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도 역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폐기물시설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대상자 요건인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를 삭제하고, 그 대신 진주시폐기물시설조례안 제24조제1항제3호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위탁 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그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 대상자로 규정하려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폐기물시설촉진법의 규정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단체"를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개정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 등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법령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7 통합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 시 통합 전 통장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연임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가.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그 위촉할 통장의 임기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로 한정할 수 있는지?

나.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에서 1회 연임 중이던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한 경우,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통장은 「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임기가 만료된 후 1회 연임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7.9.21.)

1.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그 위촉할 통장의 임기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로 한정하는 것은, 「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하는 경우에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에서 1회 연임 중이던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한 경우,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통장은 「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임기가 만료된 후 1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유

가. 공통사항

「진주시 통·반 설치 조례」(이하 "진주시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에는 통·반을 두고, 이(里)에는 반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통·반장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 이·통·반장 위촉등에 관한 규칙」(이하 "진주시규칙"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

항 및 진주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통·반장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통장은 당해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자로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제1호), 이·통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의 지도능력이 있는 자(제2호)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주시에서 종전의 행정동을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한 경우, 진주시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동장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주시조례 및 진주시규칙 등에 행정동 통합 전에 통장으로 위촉되었으나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동장으로 행정동 통합 전에 통장으로 위촉되었으나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관하여 진주시조례나 진주시규칙의 부칙에서는 규정한 바 없고, 새로운 행정구역인 통합한 행정동 설치와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에서도 통합에 따른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 및 연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안은 진주시에 있던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이 설치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는지(질의 가)와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1회 연임 중이던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한 경우,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통장에 대하여 진주시조례 제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통장 임기를 합산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질의 나)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진주시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통장의 임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동장이 관할 구역의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 임기는 2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는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행정동을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동을 신설한 경우에 통합 전 행정동의 하부 조직은 그 행정동과 함께 통합한 행정동의 설치로 인해 모두 없어지고, 통합한 행정동의 하부 조직은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아직 그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합 전 통장의 지위는 통합한 행정동의 설치와 동시

에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진주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의 임기는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3. 25. 의견제시 15-0067 참조).

따라서,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그 위촉할 통장의 임기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로 한정하는 것은, 진주시조례 제5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하는 경우에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으로서(법제처 2017. 4. 1. 해석례 17-0144 참조),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1. 12. 의견제시 17-0009 참조).

진주시조례 제5조제3항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통장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번만 더 통장 직위에 연속하여 위촉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통장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이상 통장 직위에 연속하여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이고, 이는 동일한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서의 통장 직위를 전제로 연이은 위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는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행정동을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동을 신설한 경우에 통합 전 행정동의 하부 조직은 그 행정동과 함께 통합한 행정동의 설치로 인해 모두 없어지고, 통합한 행정동의 하부 조직은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아직 그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합 전 통장의 지위는 통합한 행정동의 설치와 동시에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은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과 동일한 동의 하부조직이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진주시조례 및 진주시규칙에서 통합 전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장과 통합한 행정동의 하부 조직인 통장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행정동의 통합과 함께 통합 전 행정동의 하부 조직인 통장의 직위는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1회 연임 중이던 통장이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의 직위에 위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에서 1회 연임 중이던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한 경우,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통장은 진주시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임기가 만료된 후 1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8 조례 개정 시행일 이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설치·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 경과조치 적용대상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20일 전에 허가는 받았으나 설치·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가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12. 20. 진주시조례 제1368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인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8.4.26.)

1. 의견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20일 전에 허가는 받았으나 설치·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는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12. 20. 진주시조례 제1368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2.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본문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12. 20. 조례 제1368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진주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진주시장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경과조치"로서 같은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같은 조례 제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20일 전에 허가를 받았으나 설치·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가 진주시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경과조치의 규정의 취지는 통상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법제

처 2018. 3. 6. 의견제시 18-0020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진주시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조례의 시행일인 2017년 12월 20일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것뿐만 아니라 설치·운영 중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점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만 받고 설치·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경우까지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20일 전에 허가를 받았으나 설치·운영은 하지 않은 경우는 진주시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칙에 대해서도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입법자의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부칙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9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은 식품비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통영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5.6.30)

○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통영시 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에 "통영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 위 규정이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여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영시 조례안 제4조에서는 경비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비지원 시 그 실질적인 집행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통영시장에게 있는 것이어서, 통영시장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통영시 조례안 제4조가 통영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통영시 조례안 제4조에 통영시는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영시장에게 부여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0 일·숙직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6호에 따르면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과 같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당직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4.11.5)

○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기준경비의 유형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기준경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6호 및 별표 6에서는 일·숙직비의 기준경비에 관하여 기준액(일직비 : 1일당 50,000원 이내, 숙직비 : 1야당 50,000원 이내)을 규정하면서,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김천시조례"라 함) 제7조제4항에서는 당직근무자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김천시규칙"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당직(재택당직 포함)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조의2에서는 당직근무자의 수당지급 기준액은 일직의 경우 50,000원, 숙직의 경우 50,000원 및 재택당직의 경우 30,000원으로 하되 다만, 재택당직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계속하여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일·숙직비의 기준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김천시규칙 제6조의2를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계속하여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와 같이 일·숙직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김천시규칙 제6조의2를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숙직비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에서 일·숙직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바, 김천시규칙에서 당직수당에 관한 규정을 둘 때 반드시 그 구체적인 금액을 규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김천시규칙 제6조의2를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김천시규칙 제6조의2 개정안의 본문은 김천시조례 제7조제4항과 동일한 내용이고, “재택당직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계속하여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김천시규칙 제6조의2 개정안의 단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과 동일한 내용인바, 김천시규칙에서 김천시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할 실익은 적어 보이므로 김천시규칙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1 시민안전보험 가입 조례 제정 시 시민의 동의 절차 규정 여부 등

질 의 내 용

가. 김천시가 모든 김천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김천시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나.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민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5.2.13)

○ 질의 가에 대하여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이하 "안전보험조례안"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해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김천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제1조),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여(제3조), 김천시가 보험기관과 일괄계약을 체결하도록(제5조) 규정하고 있는데, 김천시가 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안전보험조례안에 피보험자인 김천시민의 개별적 동의를 얻는 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상법」 제639조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1조제1항에

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5조의3제1항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서면에 의한 김천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김천시가 안전보험조례안에 따라 김천시민의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735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서면에 의한 김천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보험조례안에 보험가입 동의를 얻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안전보험조례안 제5조에서는 김천시민이 아니라 김천시를 보험계약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천시민의 우발적 사고, 재해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김천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 보험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김천시민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이 김천시민에게 직접 행하여지는 공금 지출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김천시의 안전보험 보험료 지급 등의 비용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같은

조항 제2호 또는 제3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1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확인하는 규정만으로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례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민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고,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0. 19. 회신, 의견 12-0329 참조).

다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사고, 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김천시민의 인적피해를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하려는 바, 이러한 보험상품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원 목적이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보인다는 점, 김천시민 전체를 피보험자

로 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김천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점, 안전보험조례안 제4조에서는 보험료 지원 기준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보험료로 지급될 금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로 인해 김천시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입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2 이전하는 기관의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질 의 내 용

○ 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김천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할 경우 시장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5.6.9)

○ 「경북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하 "김천혁신도시 조례안"이라 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5조,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천혁신도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김천시의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

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5조제1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여야 이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혁신도시법 및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시·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것으로 보이는바, 김천혁신도시 조례안에서 혁신도시법 제5조 및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사

항을 규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사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치사무로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등을 살피건대 혁신도시법에서 시·도지사가 이전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까지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김천혁신도시 조례안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천혁신도시 조례안에서 혁신도시법 및 이 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3 3년 기간 이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내용과 위임에 따른 감면 사항을 같은 조례에 규정하면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질 의 내 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과 요건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감면률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신설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함께 조례에 규정하면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의 기간 범위 내(예: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부칙 규정의 제목 중 '유효기간'이란 용어가 '적용기한', '적용시한'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5.7.31)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과 요건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감면률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신설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함께 조례에 규정하면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의 기간 범위 내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칙 규정의 제목 중 '유효기간'이라는 용어는 '적용기한', '적용시한'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34 무화학비료 농산물 인증표시를 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 김천시장이 관내 농산물에 대해 무화학비료 농산물 인증을 하고, 이를 인증품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5.7.31)
○ 「김천시 농축산물 명품화 육성지원 및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서 김천시장이 관내 농산물에 대해 무화학비료 농산물 인증을 하고, 이를 인증품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5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관련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등

질 의 내 용

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관련된 의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6.6.24)

가.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모호하고 해석상 혼란을 줄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정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관련된 의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의미가 모호하고 해석상 혼란을 줄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6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 지원 조례' 제정할 수 있는지

질 의 내 용
○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 의치(틀니)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2016년 6월 30일자로 그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치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및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의치지원대상을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구강보건법」 관련)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7.2.21)
○ 「구강보건법」 제5조의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상자들에게 의치의 제작·장착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위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김천시의 재정현황, 보조금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7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가 단체장의 권한 침해 여부

질 의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7.9.15.)

○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 「지하수법」 제7조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제1항) 및 허가받은 사항 중 양수능력 증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제6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취수계획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377조에서는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9조제1항에서는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허가를 받은 자 중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제주도조례안"이라 함)에서는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용 지하수를 제외한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지하수의 신규허가 및 염지하수의 취수량 증량 등의 변경허가(이하 "지하수개발·이용허가등" 이라 함)를 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주도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어느 한쪽의 고유권한을 다른 쪽이 행사하게 하거나 사전적·적극적으로 그 권한에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제주특별법 제1조에서는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일반적인 법령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77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 자원이 도민 전체가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0조에서는 비록 지하수개발·이용허가등의 성질이 집행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379조의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3조에서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같은 법 제385조)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같은 법 제388조제4항) 등에 필요한 사항 등 같은 법 제377조부터 제392조까지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하수법」 및 「먹는물관리법」 관련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대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법 자체에서 도지사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등의 권한 행사에 관하여 도조례에 의한 제한을 이미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에서 도지사의 허가에 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도의회의 견제 권한으로서 정당한 범위 내로 보이고, 도지사의 허가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허가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여, 도지사로부터 허가 권한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추8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21 판결 참조)

- 따라서,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주도조례안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8 물놀이 관리지역에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조례로 제정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안전관리 조례안」에서 "물놀이 관리지역" 에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5.7.14.)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수상레저구역"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이하 "제주도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해수욕장 정의를 살펴보면, 해수욕장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조례안에서는 해수욕장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물놀이 관리지역에 해수욕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음으로, 물놀이구역의 정의를 살펴보면, 해수욕장법 제2조제4호에서 물놀이구역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같은 법 제 17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제주도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은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수욕장법에서의 물놀이구역과 제주도조례안에서의 물놀이 관리지역이 서로 다른 용어 정의를 사용하고 있고, 제주도조례안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정의가 해수욕장법에서 규정한 수상레저구역과 구분되어 운영하는 해수욕장 물놀이구역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물놀이 관리지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놀이 관리지역 정의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다음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수행체계 및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해

수욕장법 제13조에서는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도지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활동 전반에 안전관리지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법 및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 그리고,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6. 29. 회신 의견12-0179 참조).

○ 결론적으로, 해수욕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안전관리지침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무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제주도조례안에서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사무를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제주도조례안에서 안전관리요원 자격조건 등 규율하는 일부 내용이 법령에 모순되고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해수욕장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조례안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에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조례를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 록

지방자치단체 특색조례 모음

특색조례 목록

조례명(제정일)	주 요 내 용	비 고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2017. 5. 18.)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시정 및 의정 참여와 서울특별시의 책무 및 행정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자치의 기본원칙, 자치사무 및 국가 위임 사무 처리,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등을 규정함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자치권을 재확인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2018. 4. 12.)	○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목적 및 주최 ○ 문학상 시상 시기 및 수상자의 요건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수상자의 결정 ○ 실비보상 및 이중시상의 금지	故이호철 작가의 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도시 은평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함.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 11. 2.)	○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국 최초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16.10.30)	○ 청소년 문화카드 발급 대상자 및 시기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만 13세의 청소년) 대상, 발급시기 등 ○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한도 - 청소년 문화카드에 일반 청소년은 10만원을 지원하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청소년은 5만원을 지원 ○ 청소년 문화카드의 사용 - 시장이 지정하는 전국의 온·오프라인의 영화, 공연, 연극 등 문화활동 및 직업체험을 위하여 사용, 사용기한은 발급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

조례명(제정일)	주 요 내 용	비 고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17.12.29)	○ 입장료·관람료의 징수기준, 재조정 주기 및 적용에 대하여 규정 ○ 입장료·관람료의 면제·할인 대상에 대하여 규정	시설운영 원가 계산을 통해 산출된 정보를 활용, 입장료·관람료의 객관성 확보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1.8.)	○ 시민안전지킴이의 활동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함. ○ 시민안전지킴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시민안전지킴이와 연합대의 원활한 시민안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전문화 확산 및 시민의 자율적 참여활동 촉진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1.6.)	○ 용인학의 정의 규정 ○ 시장의 책무 규정 ○ 용인학 지원 근거 규정 ○ 용인학 운영 및 운영협의회 구성 근거 규정 ○ 지방보조금 보조에 관한 준용 근거 규정	용인시의 역사·문화 등 자원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6.10.12.)	○ 지방자치 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지방자치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 지방자치 시민학교의 운영 및 업무 위탁 등 ○ 지방자치 시민교육 위원회의 설치·운영	지방자치 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 전반의 지식을 공유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6.12.12.)	○ 태교도시 사업추진 범위 및 지원근거 ○ 태교도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지원단 구성 및 기능 ○ 태교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태교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용인시의 고유 문화유산인 「태교신기」의 가치를 살려 태교를 시 브랜드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성숙한 시민을 양성

조례명(제정일)	주 요 내 용	비 고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15.10.30).	잊혀질 권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강원도 나눔 · 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18. 2. 2)	나눔·감사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과 캠페인, 홍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	다양한 형태의 나눔·감사의 문화가 등장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반영한 강원도 차원의 정책을 뒷받침할 기본 조례가 필요하여서 제정함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15. 7.31)	○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자문, 슬로시티 관련 교육 등 군의 책무를 규정 ○ 김삿갓면 슬로시티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	김삿갓면이 강원도 최초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슬로시티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슬로시티를 효율적으로 운영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16. 7. 8.)	○ 자발적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에 대하여 일정액의 실비 지급기준 등을 정해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생산적 인력난을 해소하여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15.10. 8.)	○ "직지"의 창조적 얼과 선조들의 빛나는 인쇄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 청주시민 모두가 자신만의 소중한 책을 펴낼 수 있도록 지원	

조례명(제정일)	주 요 내 용	비 고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17.12.29.)	○ 시유재산찾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	
나주시 전라도 정명(定名)천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17. 7.20)	2018년은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로 명명한지 1,000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에 대한 근거를 주 내용으로 함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위상 제고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7. 6.30)	○ 청년의 종합적 지원과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목적 명시 - 적립목표액 : 100억 · 재원 : 군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 기금의 용도 : 청년 고용촉진과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청년문화·예술 활성화와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청년 생활 안정과 복지·권익증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의 설치·운영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18. 1. 2.)	○ 해양쓰레기 억제를 위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 ○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계획 및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 ○ 청정바다지킴이 위촉과 지원	해양쓰레기를 억제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을 보전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18. 3. 2.)	○ 안동포 및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포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18. 5. 9.)	선비도시 기반 조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선비정신 실천 활동을 추진·지원	선비의 도시 영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선비정신의 확산 및 계승 발전

조례명(제정일)	주 요 내 용	비 고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17.11.15.)	○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나눔 정신을 계승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고령군 고천원제 지원에 관한 조례('15. 9. 9.)	고천원제 행사시기, 보조금 지원 등	고천원 제례행사를 지원하여 널리 알리기 위함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 4. 2.)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지원 ○ 군수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지원	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큰 호평을 받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7. 6. 2.)	○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기본계획 수립 ○ 고령 해녀 수당 및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 지급 ○ 해녀 양성교육, 어촌계 정착지원 등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 및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7.12.29.)	○ 오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 ○ 오름 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 주민지원 사업 ○ 오름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제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보전에 이바지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8.18.)	○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제주메밀 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 ○ 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 및 연구 ○ 제주메밀 홍보대사 위촉 등	제주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이용한 제주메밀 산업화 육성·지원을 통해 도민이익 창출 도모

조례명(제정일)	주 요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18. 3.22.)	○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 ○ 지방공휴일 지정 홍보 및 도민·기관·단체 참여 권고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추념함으로써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제소 조례 모음집(Ⅷ)

발 행 일 : 2019년 1월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기획편집 : 민 순 기
전　　화 : 02-2100-4116
팩　　스 : 02-2100-4127